



통권 제34호 Jus-Gentium@MOFA.go.kr

2014 Vol.13, No.3 통권 제34호

국제법 동향과 실무



Jus-Gentium@MOFA.go.kr

2014 Vol.13, No.3 통권 제34호
Quarterly Journal

국제법 동향과 실무



Jus-Gentium@MOFA.go.kr



www.mofa.go.kr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25474124467

448841489972

0183426781

35247125

6148486525565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Jus-Gentium@MOFA.go.kr

2014 Vol.13, No.3 통권 제34호

Quarterly Journal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tents

▶ 특집: 2014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 강의와 활동 및 감상평 -

- 2014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지원아 5
- 2014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을 다녀와서 이영주 15

▶ 조약체결 및 국제회의 동향

- 2014년도 2/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27
- 2014년도 2/4분기 신규 가입 다자협약 개관 32
-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김민철 34
- 제8차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작업반 서영민 43
- 제20차 국제해저기구 회의 김준혁 49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난민법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와 관련한 최근 논의 이재강 53
- ARA Libertad 사건과 군함의 면제 최지현 63
- 민간군사보안기업의 인권책임과 국제적 통제기제의 역할과 과제 김병준 69

▶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1) UN 문서

- 총회 82
 - 아브하즈 자치공화국, 그루지야, 츠힌발리 지역/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야 출신의 국내유민과 난민의 지위 결의
 - 유엔 범세계대테러전략 검토 결의
 - 평화유지활동의 모든 측면의 전반적 문제에 관한 종합 검토 결의
- 안전보장이사회 84
 - 말리 관련 결의
 - 유엔 평화유지활동 결의
 - 키프로스 관련 결의
 - 이라크 관련 결의
 - 테러행위에 의해 야기된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 결의
- 인권이사회 87
 - 인권과 관련한 다국적기업과 기타 기업에 대한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문건의 작성 결의
 - 인터넷상 인권의 증진, 보호 및 향유 결의
 - 이주노동자의 인권 결의
 -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

- 사무총장 보고서 89
 - 집단적 책임 완수에 관한 보고서
 - 유엔 라이베리아 임무단에 관한 사무총장의 제28차 진행보고서

- (2) EU 문서
- EU 기관 91
 - EU Hercule III 2014년 작업계획 채택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를 위한 신EU지침 채택
 - EU 카르텔 안전지대규정(De Minimis Notice) 개정

- (3)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 ICJ 94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인도) 사건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답 기한 확정
 - 태평양 접근에 대한 교섭 의무 (볼리비아 v. 칠레) 사건에서 칠레가 제기한 관할권에 관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볼리비아의 서면절차 시한 확정
- ITLOS 100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활동에 관한 지역수산기구의 권고적 의견 요청
- ICC 105
 - 검사 v. Laurent Gbagbo 사건: 제1전심재판부 Laurent Gbagbo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
 - 검사 v. Germain Katanga 사건: 제2재판부 판결에 대한 항소 중단
 - 검사 v. Bemba, Kilolo et al. 사건: 항소재판부 Kilolo, Babala 및 Mangenda의 항소 기각
 - 검사 v. Al-Senussi 사건: 항소재판부 재판적격성 부인

- (4)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 EU사법재판소(CJEU) 114
 - Ålands Vindkraft AB v Energimyndigheten 사건(Case C-573/12)의 판결: 상품의 자유이동 원칙과 예외
 - Maurice Leone, Blandine Leone v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Caisse nationale de retraite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 사건(Case C-173/13)의 판결: 성별을 근거로 한 간접차별
- 유럽인권재판소(ECHR) 121
 -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사건의 판결: 고용계약의 적법성과 비례성
 - Svinarenko and Slyadnev v. Russia 사건의 판결: 미결구금 중 굴욕적인 대우

- ▶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 국제법 관련 국내법 136
 - 국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국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 관련 판례 - 난민 신청 외국인 변호인접견 허가 가처분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 미국 파트너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 -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상 처분 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 편의치적선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부산가정법원 판결 	141
--	-----

▶ 국제법 관련 새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소식 모음 •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168 208 210 212
---	--------------------------

2014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지 원 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생)



I. 시작하는 말

2013년에 시행된 제13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에서 대학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외교부로부터 2014년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수강 지원을 받게 된 나는 2014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났다. 이하에서는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와 3주간의 강의를 수료한 국제공법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강의들과 이를 통해 내가 배운 것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1.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와 Summer Course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는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의 재

정적 후원을 받아 1923년에 설립된 고등 교육 기관으로,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에 대해 교육하고 그 연구를 지원한다. 네덜란드의 행정 수도인 헤이그(The Hague)에 있는 평화궁(Peace Palace)에 위치해 있으면서 매년 여름 3주간의 국제공법과정과 3주간의 국제사법과정으로 이루어진 Summer Course를 제공한다.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상설중재재판소(PCA),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등 국제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헤이그를 소재지로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에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법 관련 주제에 관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 중 하나이다.

강의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진행되는데, 매 강의마다 프랑스어는 영어로, 영어는 프랑스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강의를 수강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기본 강의(General Course와 Special Course)에 모두 참여하여야 하고, 의무는 아니나 관련 주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역시 진행된다. 세미나는 각 교수 별로 1회씩 진행되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교수 외에 국제법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명한 인사들의 특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강의와는 달리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색이다. 강의와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각 과정 시작 전 미리 제공되어 학생들이 사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eneral Course와 Special Course 외에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Directed Studies 역시 3주간 진행된다. Directed Studies는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의 Diploma를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으로, 보통 통상적인 강의와 세미나를 마친 후 진행된다. Diploma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Directed Studies에 참여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Summer Course 수료 즈음에 시행되는 논술시험과 구술시험을 통해 국제법에 대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2014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공법과정에서는 Diploma를 취득한 학생이 단 한명에 그쳤다.

2. 평화 도서관(Peace Library)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는 Summer Course 교육 과정동안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평화 도서관(Peace Library) 이용을 지원하는데, 도서관 내에 국제법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관심 주제에 관한 필요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구비 자료들은 자료 보관 형태에 따라 인쇄물, 책자,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고, 대체로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간행물 역시 구비해 놓아 관심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다.

III. Public International Law Course

1. General Course

(1) 개요

General Course는 해당 분야의 저명한 교수 한 분이 3주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강의를

하는 과정이다. 이번 2014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에서는 University of Teheran의 교수인 Djamchid Momtaz 교수가 국제법질서의 서열(Ranking of International Legal Order)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Special Course와는 달리 한 가지 주제에 대해 3주간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주제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General Course의 장점이다.



(2) La hierarchisation de l'ordre juridique

international(Ranking of International Legal Order) – Djamchid Momtaz 교수

Momtaz 교수는 국제법질서의 서열(Ranking of International Legal Order)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Momtaz 교수는 특히 강행규범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을 명확히 하는 것에 강의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Momtaz 교수는 국제법질서의 서열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국제법에 존재하는 우월한 가치들은 국제법의 법원 간의 서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과거 개발도상국이 특정한 서열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후에 밝혀진 바로는 사실 그것이 ‘문명국’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Momtaz 교수가 학생들에게 특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강행규범에 대한 것인 만큼 강행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강의기간 동안 다루어졌다.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도 그 중 하나였다. 새로운 강행규범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항들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와 제64조였다. 제53조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것으로 “조약은 그 체결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다”라고 서술하고, 제64조는 일반 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의 출현에 관한 것으로 “일반국제법의 새 절대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을 들며 Momtaz 교수는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을 설명하였다. 가령, Momtaz 교수에 의하면 프랑스는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에 다소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인도적인 상황이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Momtaz 교수는 여러 부분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새로운 강행규범의 등장’ 역시 그러한 부분들 중 하나였다.

Momtaz 교수의 강의 내용 중 흥미로웠던 부분은 ‘강행규범과 불법적인 분리독립(illegal secession)’에 대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Momtaz 교수는 불법적인 분리독립 불승인 의무에 대해 심도 있게 강의하였는데, 본격적으로 분리독립 불승인 의무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 배경이 되는 민족자결권(right of people to self-determination)과 구제적 독립(remedial secession)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관련 사안인 Kosovo 독립선언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 역시 제시하며, ‘국제법·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분리독립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구제 방편으로써 그러한 분리독립에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Russia와 Croatia 사태 역시 구제적 독립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매우 흥미로웠다. Momtaz 교수는 기존의 분리독립과 구제적 독립을 분리하는 것은 더욱 극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에 대해 마무리 지었다.

Momtaz 교수의 강의 주제인 '국제법질서의 서열'은 국제법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주제인 동시에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였다. 가령, '강행규범(peremptory norms)와 erga omnes의 구분'과 '강행규범을 결정하는 기준들', '강행규범의 규범적 토대(normative foundation)' 등의 내용을 배울 때에는 강행규범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Momtaz 교수에 의하면 강행규범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학부 강의시간에 잠깐 동안 배우고 지나갔던 강행규범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얼마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2. Special Course

(1) 개요

Special Course는 General Course와는 달리 3주 동안 총 6명의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General Course를 맡고 있는 Momtaz 교수를 제외하고 각 주마다 두 명의 교수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2014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의 1주차에서는 Olivier Corten 교수가 'La revellion et le droit international(Rebellion and International Law)'라는 주제로, Christine Gray 교수가 'Limits on the Use of Force'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2주차에서는 Emmanuelle Tourme-Jouannet 교수가 'Droit International du Developpement et de l'homme(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and Human Rights)'라는 주제로, Bakhtiyar Tuzmukhamedov 교수가 'Legal Dimensions of Arms Control Agreements'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마지막 3주차에서는 Brooks W. Daly 교수가 'The Renaissance of Inter-State Arbitration'이라는 주제로, Maurizio Ragazzi 교수가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Bank(IBRD)'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Special Course는 General Course와는 달리 1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교수로부터 다양한 주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하에서는 개인적으로 특히 인상 깊었던 강의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1주차] Limits on the Use of Force - Christine Gray 교수

Gray 교수는 무력사용에 대한 제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는 서양의 관점과 동양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 무력충돌과 이에 관련하여 자연스레 대두된 '테러리즘'을 화두로 시작하였다. 강의 초반부에 들어 Gray 교수는 'targeted killing'과 'rule of intervention', 그리고 '평화유지 의무(peace-keeping mandate)' 등 무력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관련 원칙들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이 중 특히 Gray 교수가 중점을 두고 며칠에 걸쳐 설명했던 것은 바로 'targeted killing'이었다. 강의 중 Gray 교수가 학생들에게 던진 "targeted killing이 self-defence로써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혹은 "targeted killing은 효과적인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가?" 등의 질문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시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Gray 교수조차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나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었다. Targeted killing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미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self-defence와 관련하여 targeted killing 정책을 사용해 온 미국은 targeted killing이 ‘법률 규범(rule of law)에 적합한 개입이다’, ‘한 개인에 대한 처벌(punishment)이 아니다’, ‘아직도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imminent attack)이 존재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Gray 교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무력사용의 근거를 들에 있어 12년 전에 일어난 9.11 테러사건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입장을 보였고, self-defence는 좀 더 엄격하고 실용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강의 후반부에 접어들어서는 강의 주제가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 Gray 교수는 인도적 간섭은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 중 ‘실패한 선택’을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도적 간섭에 대해서 역시 얼마나 많은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인도적 간섭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보호책임) 역시 강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여러 사건에서의 인도적 간섭은 대체로 지나치게 그 개입의 정도가 크거나 혹은 지나치게 적은 양상을 띠어 왔으며, 무력 사용을 포장하는 한 방편이 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섭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오히려 충돌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그 한계가 된다고 설명하며, 만약 인도적 간섭이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그 개입은 비합법적인 개입이라고 말을 맺었다.

이 강의도 좋았지만 정규 강의 외에 열린 Gray 교수의 세미나 역시 굉장히 흥미로웠다. 세미나는 강의와는 달리 학생들과 교수 간의 그리고 학생들 서로 간의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와는 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가령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주제 중 하나는 ‘self-defence의 개념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확장하여야 하는가’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적절한 조건 없이 사용되는 경우 반드시 비합법적인 것으로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측과 그것을 가능한 한 확장하는 것이 self-defence의 의의에 합당하다는 측으로 나뉘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국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3) [2주차] Droit International du Developpement et de l’homme(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and Human Rights) – Emmanuelle Tourme-Jouannet 교수

Jouannet 교수의 강의는 ① Human Rights, ② Chang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③ Global Social Justice through International Law?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권은 세계대전이 끝난 뒤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전쟁, 즉 냉전(Cold War) 이래로 자유주의(Liberalism)와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인권의 선전으로 인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인권은 발전과정을 거치며 국제법의 초국가적 개념(transnational norm)이 되었고, 권리의 새로운 주체가 되었다. 이로 인해 현대에 이르러 인간(human being)은 국제법의 완전한 주체가 되기에 이르렀고 인권 역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이라는 권리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 그 한계라고 Jouannet 교수는 설명하였다. 인권이라는 권리가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고전국제법(classical international law)은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의 고전적인 법이 국제법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인권의 개념 역시 포함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Jouannet 교수는 또한 후에 인권법이 국제개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law)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강의하

였다. 이러한 영향은 국제개발법에 있어 국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순한 경제적 개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람·국가·단체들 모두의 혜택,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이익의 총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발법(sustainable development law)을 등장하게 하였고,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역시 단순한 경제적 번영이 아닌 인류의 행복(happiness of mankind)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것은 개발에 있어 경제적 개발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역시 가능케 하였다.

인권과 관련하여 Jouannet 교수가 말한 두 가지 권리 역시 흥미로웠다. 이 두 가지 권리는 환경에 대한 권리(right to environment)와 개발에 대한 권리(right to development)로, 그 특징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에 대한 권리	개발에 대한 권리
설명	건강에 관한 권리	주관적 권리
성격	새롭게 등장한 권리(new right)	
관련법	환경법(environmental law)	개발법(development law)
인권과의 관계	인권의 근본을 이룸	인권 발전에 있어 선제조건
대두 배경	깨끗한 환경의 부족(insufficiency)	1996년 이래로 중대한 변화를 맞음
예시	깨끗한 식수·음식·주거 등	Good governance(가령, 효율적인 국제 경제 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 등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Jouannet 교수는 또한 극심한 빈곤(extreme poverty)과 개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극빈 속에서 살지 않을 권리 또한 개발 정책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는 Jouannet 교수의 설명은 극빈을 해결하는 것(combating extreme poverty)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World Bank는 이미 빈곤을 줄이는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UNDP 역시 그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빈곤 퇴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Jouannet 교수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빈곤 퇴치는 국가 그 자체를 원조하는 것이 아니고 극빈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원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배운 국가가 아닌 인간에 초점을 맞춘 개발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더욱 잘 이해되었다.

강의 후반에 이르러서는 개발 모델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multi-dimensional model)에 있어 가장 반영되어야 할 근본적인 관점은 ‘환경적 관점(environmental dimension)’, ‘인간적 관점(human dimension)’ 그리고 ‘경제적 관점(economic dimension)’이라고 Jouannet 교수는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이 불균형 없이 고루 반영될 때 인권과 관련된 진정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두 번째 장에 접어들어서는 국제개발법의 변천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이 장에서 Jouannet 교수는 국제개발법의 변천을 크게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 그리고 탈냉전시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부분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며 등장하게 된 인권은 엄밀히 말하여 서양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양의 관점만을 반영한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권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국가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Jouannet 교수는 문화가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인권이라는 개념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양한 문화가 인권의 개념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에게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은 국제법을 통한 국제적 사회정의에 대해 다루었다. Jouannet 교수는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개발의 불균형성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좀 더 나은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법이 고전적인 개발법과 국가와 사람간의 평등을 근거로 한 새로운 형식의 개발법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발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문화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Jouannet 교수는 국제적인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법적 장치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말을 하며 강의를 마쳤다.

(4) [3주차] The Renaissance of Inter-State Arbitration – Brooks W. Daly 교수

Daly 교수의 강의는 국가 간 중재의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Daly 교수는 강의 시작에 앞서 중재란 분쟁에 대처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의 대안이라고 정의하였다. Daly 교수의 강의는 그 어느 교수의 강의에서보다 많은 실제 사례들로 구성되었고 이 덕분에 국가 간 중재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면모들을 볼 수 있었다. Daly 교수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6년 이래로 국가 간 중재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다만 ‘Mauritius v. UK’, ‘Philippines v. China’, ‘Denmark v. European Union’, ‘The Netherlands v. Russia(Artic Sunrise Arbitration)’ 등의 사례들이 모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국가 간의 중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가령, ‘Ecuador v. USA(2011)’, ‘ECT Member State v. ECT Member State(2001)’, ‘Confidential Case(ICC, 2005)’ 등의 사례들을 통해 투자·무역·상업에 대한 분쟁에서 중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중재는 시간의 소모가 적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었다.

국가 간의 중재가 등장한 이래로 한 때 그 이용수가 급격히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국가 간의 중재가 1996년 이래로 다시 증가세에 들어선 이유는 그만큼 중재가 제 역할을 잘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Daly 교수에 의하면 실제로 중재는 그 단점을 보완하고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중재재판소와 국제재판소들은 서로를 따르며 그들의 판결 간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있다. 87%의 중재재판소는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나 다른 국제재판소의 판사를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P. Sands 교수의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비용절감 역시 중재의 한 장점이 된다고 한다.

Daly 교수는 물론 중재의 이용에 있어 급격한 증가는 아직 없지만, 중재의 이용이 감소세에 있었던 1930년대에 비해 더 많은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의 르네상스’가 새로이 열렸다고 말하였다. 또한 Daly 교수는 중재의 르네상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국가들이 분쟁을 다루는 선구적인 방법으로써 중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Daly 교수의 강의를 통해 중재의 실제 사례들을 접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중재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상당히 좋았지만,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탓에 다소 깊이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 많은 사례들을 다양하게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사례의 수를 조금 줄이고 좀 더 깊이 있게 소수의 사례들을 다루었다면 국가 간의 중재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IV. Peace Palace Model United Nations

1. 개요

(1) 모의 유엔(Model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Netherlands(NVVN)와 Association of Attendees and Alumni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AAA)가 주관한 Peace Palace Model United Nations(이하 MUN)는 이번에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MUN은 학생들에게 직접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인지하고 실제 회의와 흡사한 절차에 따라 안전 상정과 결의안 작성 및 표결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MUN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국제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국제 외교에 대해 통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제1회 Peace Palace MUN은 2014년 7월 19일에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다.

(2) MUN 주제 및 절차

이번에 진행된 제1회 MUN의 주제는 ‘Drones and International Law’로 1주차 강의에서 다루어진 무력 사용(use of force)과 관련이 있는 주제였다. MUN은 의사진행 질의(point of parliamentary inquiry), 비공식 로비(motion for an unmoderated caucus), 공식 로비(motion for a moderated caucus), 개정안 제기(motion to introduce an amendment), 개정안 표결(motion to move into voting procedures)의 절차로 진행된다.

2. 내가 경험한 MUN

MUN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참여 학생들의 관심사는 자신이 어느 국가의 대표가 될 것인가이다. 누가 어느 국가의 대표가 될 것인지는 AAA에 의해 통보되는데, 내가 맡은 국가는 룩셈부르크(Luxemburg)였다. 보통 한 국가의 대표단은 5~6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내가 속한 룩셈부르크 대표단은 나를 포함하여 총 6명의 대표로 이루어졌다. 자신이 대표로 속한 국가와 함께 MUN의 주제가 통보되고 나면 각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대표단에 속한 학생들과 연락을 하여 MUN 시작 전 사전모임을 갖고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된다. 이번 MUN 주제인 ‘Drones and International Law’는 Christine Gray 교수가 1주차에 다룬 ‘Limits on the Use of Force’와 관련된 내용이라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며 이해하기에 큰 무리는 없었다. 우리 팀이 대표하게 될 룩셈부르크는 다른 몇몇 국가와는 달리 drones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덕분에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어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룩셈부르크 대표단에게 주어진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법적 관점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있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국제적 골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약과 협약을 찾아가며 관련 자료를 모으고, 룩셈부르크 대표를 맡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MUN이 실제로 진행되는 날에는 일정이 굉장히 빠듯했다. 오전에는 ‘Drone warfare: killing by remote



control’과 ‘Drones and international law’, ‘Negotiating UN-style’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고, 오후에 짧은 준비 시간을 가진 뒤에는 본격적인 MUN이 시작되었다. MUN 시작 전 각 대표단들은 각자의 팀 안에서 회의 절차 동안 발언을 담당할 speakers와 로비를 담당할 lobbyists, 결의안을 작성할 writers로 역할을 분담한다. MUN을 처음 해보는 나는 이번 MUN을 통해 실제 결의안이 상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로비가 이루어지는지를 겪고 크게 놀랐다. 우리가 결의안에 꼭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과시킴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했는지 보다는 MUN 절차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대표들 간의 로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의 대표단들은 그들의 lobbyists를 통해 그들이 결의안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안들을 계속 로비하였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대표단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자신들이 타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MUN 절차 후반부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수정된 개정 결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된다. 개정 결의안에는 새롭게 추가된 사항들부터 기존 결의안에서 삭제된 사항들, 미묘한 어감으로 인해 수정된 단어들까지 갖가지 수정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MUN을 진행하는 의장은 이러한 수정 결의안의 각 사항들을 모든 국가 대표단의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지 통과시키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거부권(veto)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직접 경험한 것이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정안이 나올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수정 사안이 최종 결의안에 결코 반영될 수 없도록 힘썼다. 이번 MUN에서 특히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국가는 내 예상과는 달리 미국이 아닌 러시아였다. 아무리 많은 국가들이 특정 수정 사안에 찬성을 하여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해당 수정 사안은 도리없이 삭제되었다. 실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가 아니라 그런지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수정 사안이 거부권에 의해 삭제될 때마다 많은 대표단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는데, 이는 절망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표단을 흥미롭게 하는 부분이었다. 결국 여러 대표단이 서로 로비를 통해 만들어 낸 수정 결의안 중 그

어떤 부분도 이번 MUN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모든 사안이 정족수에 미달하거나 거부권이 행사됨으로 인해 삭제된 것이다.

비록 그 어떤 수정 사안도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이번 MUN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MUN에 참여해 본 적 없었던 나로서는 이번 MUN에 처음 참여해봄으로써 실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며, ‘drones’라는 까다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층 깊이 공부해 볼 수도 있었다. 특히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준비과정 동안 룩셈부르크 대표단과 함께 토론하면서 느낀 참여 학생들의 열정 역시 나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

V. 마치는 말

이번 2014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에 참가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비단 국제법의 원칙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면을 통해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도 참 많았다. ‘국제법’, ‘세계평화’,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그 중 하나이다. 헤이그에서 국제공법을 배우는 동안 다양한 국가 수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나의 편협한 생각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 국제법 관련 기관을 방문한 것,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던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다.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는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에게 국제법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간의 소통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아직은 다수의 참가자들이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두가 ‘평화’라는 한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평화’라는 멀게만 느껴졌던 인류의 목표가 사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경험한 헤이그 아카데미 연수는 이처럼 소중한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해 준 감사한 기회였고, 앞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4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을 다녀와서

이 영 주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I. 시작하며

2013년 제13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특전으로,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이하 ‘헤이그 아카데미’로 약칭)에서 주최하는 하계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출국하기 전 네덜란드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풍차, 튜립, 대마초, 히딩크 감독이 전부였고, 헤이그에 대해서는 이 준 열사가 순국하신 곳으로 우리나라의 아픔이 있는 ‘역사의 도시’라는 점 정도에 불과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역사의 도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개막식 기조연설을 한 것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순국하신 이 준 열사가 보시면 정말 뿌듯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대한제국이 주권국가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임을 인정받기를 바랐던 고종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상상해 보았고, 을사조약 이후 헤이그로 파견 보낸 이준 열사가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순국하셨을 때 고종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도 상상해 보기도 하면서 헤이그에 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고작 그것이 준비의 전부였다.

국제법을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이 헤이그 하계과정을 참여하기에 앞서 더욱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특히 앞으로 헤이그 아카데미를 방문할 예정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주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맞지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많이 얻게 된다는 말도 꼭 하고 싶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관한 자신의 시각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II. 헤이그 아카데미에 대한 정보

네덜란드는 일명 홀란드(Holland)로 알려져 있으며, 서부 유럽의 나라로 벨기에와 독일에 접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자국을 네덜란드 보다는 홀란드로 많이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도시는 수도인 암스테르담이며, 그 다음으로 세계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이 큰 도시이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헤이그이다.

헤이그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다.¹⁾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암스테르담과는 다르게 헤이그는 한적한 중소도시이다. 헤이그는 네덜란드의 행정수도로써 네덜란드 의회와 왕궁이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ICJ) 이외에도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²⁾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³⁾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⁴⁾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⁵⁾ 등 많은 국제법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제법의 수도라 불리는 곳이다. 헤이그는 뉴욕, 제네바, 비엔나와 함께 유엔의 4번째 주요 유엔도시이기도 하다.

헤이그에 위치한 헤이그 아카데미는 매년 여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행사를 주최하는 데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헤이그 아카데미 하계과정이다. 헤이그 아카데미는 카네기재단의 후원으로 192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사용하고 있는 헤이그 평화궁(Peace Palace)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의 주요 기구 중에 국제사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평화궁 도서관(The Peace Palace Library),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등이 들어 있다. 이 건물은 미국의 카네기재단의 지원으로 1913년 8월 28일에 개관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8월 28일 100년을 맞이해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리기도 하였다.



1) <http://denhaag.com/en>.

2) www.pca-cpa.org.

3) www.icc-cpi.int.

4) www.opcw.org.

5) www.icty.org.

III. 한국에서 헤이그에 도착하기까지

1. 헤이그 아카데미 지원 절차

헤이그 아카데미의 하계과정 참가신청은 보통 헤이그 아카데미가 열리기 7~8개월 전, 즉 참가하고자 하는 그 이전 연도 11~12월에 시작하는데, 이 때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법과정은 참가자 수가 미달하여 추가접수를 받는 편인데 반해, 국제공법과정은 항상 마감의 압박이 빠른 편이라고 한다. 지원서에는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만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시 자신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국제법 관련 강의를 몇 학점이나 들었는지, 어떠한 과목을 수강하였는지를 상세히 기재하여 자신이 국제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는 어느 정도 국제법에 관한 배경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헤이그 아카데미의 방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원제한에 관한 특별한 설명은 없으나 대략 300명 정도의 참가인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참가신청은 이르면 이룰수록 좋을 것이므로, 떠날 생각이 있다면 빨리 결정해서 신청부터 할 것을 권한다.

2. 합격통보 이후의 절차

4월경 합격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데, 헤이그 아카데미의 송금번호를 함께 알려주므로 은행에 가서 그 번호로 해외 송금을 한다. 그러면 약 1~2주 후 최종적으로 확인(confirmation) 이메일을 받게 된다. 그 다음으로 헤이그 아카데미는 헤이그에서 묵게 될 숙소의 주소와 주인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이때부터는 주인과 이메일을 교환해야 한다. 집 주소와 집을 찾는 방법을 안내 받고 가능하다면 미리 전화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스키폴공항에서 헤이그까지는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헤이그 중앙역에서 숙소까지 픽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문의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며, 만약 특정한 방식의 숙소를 선호한다면 헤이그 아카데미 측에 그렇게 의견을 전하면 된다.

3. 헤이그로 갈 준비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헤이그의 7월 평균 기온은 17~19도 근처라고 한다. 숫자로만 보면 정확하게 감이 잡히지 않는다. 네덜란드에 다녀온 후배가 번덕스러운 날씨라고 귀뜸을 해주었는데도 그래도 여름이겠지니 생각하고 여름옷들과 함께 가디건 하나만을 챙겨갔다가 낭패를 보았다. 도착해서 첫 일주일엔 계속 비가 내렸고 감기까지 걸려 가을 재킷과 점퍼를 사야했다. 짐이 불어나서 부담스럽다고 해도 꼭 따뜻한 외투를 가져가기를 바란다. 부피가 걱정된다면 비행기에서 10시간 넘게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짐으로 싸지 않고 기내에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또 준비할 옷은 정장 한 두벌이다. 첫 주에 헤이그 시청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이 있는데, 중요한 행사는 아니지만 모두 정장을 입고 샴페인을 마시는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평화관에서 트램을 타고 10분만 가면 쉐비닝겐 해변가가 있으므로 해수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영복을 챙겨도 좋을 것이다. 그 밖에 한국의 기념품을 가져가는 것도 추천한다. 3주의 과정을 마치고 작별인사를 할 때 일부 친구들은 자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을 주면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한다. 한국에 대해 궁금해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인생에 한 번 뿐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4. 헤이그에 도착

헤이그의 숙소에 도착하면 첫날 숙소 주인에게 총 금액(하루 20유로*20일=400유로)을 현금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제공되는 더블룸의 경우 룸메이트를 만나게 되며, 싱글룸을 얻은 학생이라도 플랫폼메이트와 함께 하계과정의 전체 일정을 함께 하게 된다.

사실 헤이그 하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룸메이트를 만나는 날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3주 동안 기상해서, 평화궁으로 걷고, 함께 수업을 듣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여행을 다니는 모든 일상을 룸메이트와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룸메이트를 만나기 전에 집 주인이 ‘여기서 만나는 룸메이트와는 평생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속으로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냐’ 말하며 비웃었는데 신기하게도 3주 후 ‘평생을 연락해야 한다’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였다. 싱글룸을 얻지 못해 불편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더블룸에서 룸메이트와 밀착형 생활을 해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논문 준비를 하거나 조용한 연구 환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독방이 필요할 것이다.

숙소에서 평화궁까지 가는 길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자전거를 좋아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대여료가 만만치 않다. 중고 자전거를 사는 학생도 종종 있다. 그러나 값싸고 튼튼한 자전거를 구하려면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 헤이그 시내를 돌아다녀야 한다. 게다가 헤이그를 떠날 때 다시 되팔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V. 헤이그 아카데미 하계과정의 국제공법수업

1. 첫 날

첫날 오전에는 출입 카드 발급과 등록 등으로 수업이 없으며, 오후 수업으로 진행된다. 9시 정각이 아니라



조금 늦게 가도 긴 줄을 피할 수 없으니 첫날부터 조금하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아카데미에서 온 입학허가 편지, 여권, 건강보험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으로 50유로를 주고 구매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하므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을 권한다. 간단한 보안검사를 마치고 건물 내로 들어가면 여권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ID카드를 만든다. 헤이그 아카데미 출입문을 열면 바로 ID카드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ID카드로 출석체크를 한다. 결석은 2번만이 참작된다.

2. 수업

(1) 수업의 구성

3주간 매일 진행되는 General Course 강의는 교수님 한 분께서 강의해 주시고, 1주에 2개씩 국제법의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Special Course 강의를 총 6개 진행된다.⁶⁾ General Course와 Special Course는 모두 참가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강의로서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 3개가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강의는 50분간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열심히 필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조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진지하고 엄숙하다.

오전의 의무강의 이외에 흥미롭게 참석할 수 있는 강의도 있다. 오후에 열리는 토론식 세미나 강의가 그것이다. 오전의 General Course와 Special Course 강의에서 시간관계상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질문과 답변, 토론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세미나는 강의별로 1회, 회당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각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되는데,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의 질문을 듣는 것 또한 공부였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 졸릴 겨를이 없다. 하지만 자기가 관심이 있는 주제가 아니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 오히려 더 심심하고 지치는 강의를 될 수도 있다. 이 밖에 ICTY에 근무하는 검사국의 검사, 재판연구관 등을 헤이그 아카데미로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는 형식의 특별 강의도 흥미로웠다. “국제법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국제기관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일할 때 이런 고충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접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국제법의 이론과 현실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고 느꼈다.

(2) General Course

General Course는 3주 동안 매일 있는 수업이며 해당 연도의 주제를 이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하계과정의 일반과정은 University of Teheran의 Djamchid MOMTAZ 교수가 Rank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교수님이 불어로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영어 통역사가 필요했는데, 교수님은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통역사는 그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등 가장 집중이 어려운 강의였다. 매번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커피를 마시는 휴식시간에 다른 많은 학생들도 통역에 대해 불평을 하여 안타까웠던 기억이 난다. 강의 내용은 Chapter 1. 국제법규범의 서열화와 강행규범의 소개 Chapter 2.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의 구분 Chapter 3. 강행규범을 위반하여 창설된 상황의 불승인 의무 Chapter 4. 대세적 의무와 국가책임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강행규범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법실증주의에 따라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조약 또는 관습으로 구체화되는

6) <https://www.hagueacademy.nl/summer-programme/public-international-law/>.

국가들의 의사(will of states)로부터만 나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설명한 후, 이와 대비하여 강행규범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던 간에 국제법의 규칙에도 서열(hierarchy)이 있어야 한다든지, 혹은 국가들이 합의를 통해서도 이탈할 수 없는 일정 국제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는 관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는 역사를 설명하였다. 특히 자연법론자들은 국가들의 의사(will of states)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또 그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보았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국제법에 서열이 생기게 된 과정에 대해 1960년대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은 계쟁사건에서 개별의견 및 반대의견을 통하여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적 규범의 강행규범적 성질을 확인하였으며, 지역 인권재판소와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국제인도법에 관한 임시 국제법정들이 국제법의 상위규범을 묘사하기 위하여 ‘강행규범’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1969년의 “비엔나조약법협약”에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peremptory norms - *jus cogens* - of general international law)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이 획기적인 변화였다며 동 조문을 기초로 설명하였다.

강행규범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에 대한 설명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두 개념은 본질적으로 국제공동체가 수평적 구조로부터 점차 가치 추구적인(value-pursuing) 수직적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점이 유사하나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강행규범은 조약법협약 제53조의 정의와 같이 규범의 중요성에 비추어 임의규범에 비해 우위성을 내포하는 개념인데 반해, 대세적 의무는 국제법의 적용범위 및 그 절차적 범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강행규범은 모두 대세적 효력을 가지지만,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나 의무가 필연적으로 강행규범인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에는 이러한 이론과 함께 ICJ의 Barcelona Traction 사건과 East Timor 사건도 함께 다루어졌다. 그리고 EU 국가들의 국내사례에 대한 소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강의를 마무리 하며 Momtaz 교수는 국제공동체가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강행규범의 역할은 앞으로도 확대되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3) Special Course

Special Course는 교수님 한 분당 총 5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올해 6개의 Special Course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PCA에 관한 강의였다.

PCA에 대해서는 PCA의 Brooks W. DALY께서 “The Renaissance of Inter-State Arbitration”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셨다. 우선 PCA는 상설중재재판소로 국제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중재재판 의뢰가 있을 시 상시 보유하고 있는 “중재재판관 국별 명부”에 등재된 중재재판관들 중 4인을 선출하여 중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재판소로 불리는 ICJ의 명성에 가려져 있었으나 Daly 교수님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침체되었던 PCA가 1996년 이후 제2의 르네상스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조사해 보니 2000년 2월 21일에 PCA에 가입하였다.

특히 PCA의 많은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87조에서는 재판절차의 하나로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건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논의한 사례들은 Australia and New Zealand v. Japan, Ireland v. UK(MOX Plant), Malaysia v.

Singapore(Land reclamation), Barbudos v. Trinidad & Tobago, Guyana v. Suriname, Bangladesh v. India, Mauritius v. UK, Argentina v. Ghana, Philippines v. China, Denmark v. European Union, The Netherlands v. Russia, Malta v. Sao Tome and Principe 등의 사례들이었다.

이렇게 많은 해양법 관련 사건들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 제3차 해양법회의의 입안과정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ICJ의 Nuclear Test 사건(New Zealand v. France, Australia v. France, 9 May 1973)에서 ICJ에게 실망한 프랑스는 중재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UNCLOS에서도 국가들이 재판절차의 선택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중재재판을 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중재도 증가하고 있음을 다음 사례들을 통해 보여주었다. Italy v. Costa Rica(1997), Mexico v. USA(2000), Italy v. Cuba(2003), USA v. India(2004), USA v. Canada(Softwood Lumber I)(2007), USA v. Canada(Softwood Lumber II)(2008), Ecuador v. USA(2011) 등의 사건들이 ICJ나 그 밖의 재판이 아닌 PCA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비밀문서, 특정 법의 적용,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와 빠른 해결을 꼽았다. 아무래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주제였으면 그 주제의 강의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 같다. 예전에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에 관해 “한국이 ICJ의 제소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PCA로 갈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PCA에 관심을 가진 바 있었으므로 매우 흥미로운 강의였다.

이 밖에 다른 Special Course로 Christine GRAY 교수님은 “Limits on the Use of Force”라는 제목으로 자위권의 요건, 특히 비례성에 대해 다양한 예를 검토하며 설명하셨고, Olivier CORTEN 교수님은 “Rebellion and International Law”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일부 사람에게서는 영웅이 일부 사람에게서는 반란자가 될 수 있다는 질문으로 국제법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해 주셨다. Bakhtiyar TUZMUKHAMEDOV 교수님은 “Legal Demensions of Arms Control Agreements”이라는 제목으로 NPT 제6조와 무기통제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Emmanuelle TOURME-JOUANNET 교수님은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and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시면서 국제법에서 승인(recognition)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다. Maurizio RAGAZZI 교수님은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Bank(IBRD)”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로 World Bank에는 기관 고유의 독립성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한 좋은 일”이라는 대의 아래서 UN과의 접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셨다.

3. Diploma 과정

헤이그 아카데미 Diploma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Directed Studies라는 심화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후시간에 담당 교수님과 함께 진행된다. Diploma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없는 참가자라 하더라도 Directed Studies에 참가할 수 있다. Diploma 취득을 위해서는 이 과정에 참석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수에게 자신이 국제법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⁷⁾ 하계 과정이 종료되기 전날 학생들은 1차로 논술시험을 보게 되며, 이를 통과한 극히 소수의 참가자들에게만 구술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 한 해에 Diploma를 취득하는 학생은 국제공법과 사법을 통틀어 한 명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4. 마지막 날

올해에는 미국 출신 Elinathan OHIOMOBA양이 Diploma를 받았고, 마지막 날 강단에 올라가서 상을 수여 받고 모든 학생들은 기립 박수를 쳤다.⁸⁾ 그리고 출석을 완료한 모든 학생들은 수료증(Certificate)을 받을 수 있다.



7) <https://www.hagueacademy.nl/summer-programme/diploma/directed-studies/>.

8) <https://www.hagueacademy.nl/ms-elinathan-ohiomoba-has-been-awarded-the-diploma-of-the-hague-academy/>.

V. 수업 외 활동

1. 평화궁 도서관

개인적으로 수업 보다 더욱 설렜던 시간은 평화궁 도서관에서의 시간이다. 평화궁 도서관(Peace Palace Library)은 헤이그 아카데미 건물 내부의 2층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서관은 국제법과 관련된 서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한다.⁹⁾ The Carnegie Foundation의 카네기¹⁰⁾는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것, 둘째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법 도서를 비치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이 도서관을 기증하였다고 한다. 하계과정 참가자들은 하계과정 3주 동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 종료 후에 더 이용하고 싶은 경우 1년에 10유로의 회원비만 내면 그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말 많은 책과 저널들이 비치되어 있다. 일부 학생들은 석, 박사 논문에 참고하기 위해 열심히 도서관을 이용하였는데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책을 신청하면 직원이 찾아준다. 복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복사카드를 구매해서 직접 복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데스크 직원에게 복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자가 더 저렴하다. 복사카드는 10유로짜리 또는 20유로짜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1장에 10센트이니 우리나라의 2배 정도 가까이 된다. 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책을 대출해서 아카데미 바깥에 있는 복사 가게에 가서 셀프 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할 수 없던 책을 스캔하거나 카메라도 찍어가는 학생도 있었다. 국제법 연구에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이니만큼 하계과정에 방문할 예정인 학생이라면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적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미리 인터넷 검색(www.ppl.nl)을 통해 필요한 자료 목록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자료를 구할 수도 있다. 최신자료 메일링 신청도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헤이그를 방문하지 않을 학생이라도 한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신청해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2. AAA 활동과 ICJ 방문

강의와 세미나 같은 학술적 활동 외에, AAA(The Association of Attenders and Alumni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라는 헤이그 아카데미 산하 조직에서 참가자들을 위해 기획하는 다양한 Social Event가 열리기도 한다. AAA 활동 중 의미 있었던 활동은 ICJ 투어였다. ICJ 건물 정문 앞에는 조그마한 햇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대한 인류의 반성과 세계 평화에 대한 ICJ 설립자들의 희망과 염원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건물 내부는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 각국이 기증한 미술품 또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우리 정부도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예술가가 제작한 예술품을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 평화궁을 벗어난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AAA 활동을 통해 갈 수도 있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끼리 자유롭게 다녀올 수도 있다. 과거에는 하계과정의 참가자들에게 무료 교통카드가 주어졌다고 하나 이제는 개인의 부담이다. 첫 날 참가자들은 30유로짜리 헤이그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카드를 구매한다. 그런데 이 카드는 3주 동안만 그리고 ‘헤이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9) <http://www.peacepalacelibrary.nl/>.

10) <http://www.haguejusticeportal.net/index.php?id=1975>.



등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에는 별도로 버스표나 기차표를 구매해야 한다. 델프트에 방문하면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한 국제법의 아버지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동상과 무덤을 볼 수도 있다.

3. 헤이그 주재 한국인과의 만남

헤이그에서의 수업을 듣고 있던 중 ICJ에서 근무하시는 한국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올해 헤이그 하계과정에 참석하고 있었던 세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점심을 하였다. 또한 헤이그 주재 대사님과 오찬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지에 온 한국학생들을 직접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였다. 대사관과의 식사를 마련해주는 국가들은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이 있었으나 그리 많지 않았다. 나의 룸메이트는 한국 학생들의 이런 활동이 매우 부럽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ICJ나 ICC는 7월에 휴가 기간이므로 사전 예약을 조건으로 건물 내부를 관람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재판에 참관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대신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재판을 하고 있었으므로 ICTY의 재판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닿았다.

ICTY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발생한 종족 분쟁과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로 인한 조직적 학살, 고문, 강간 등 반인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국제재판소(ad hoc tribunal)이다. ICJ 앞에서 트램을 타고 세 정거장만 가서 WORLD FORUM이라는 이름의 정류장에서 내리면 많은 국기들이 일렬을 지어 늘어선 도로가 나오는데 바로 도로가에 위치해 있다. ICTY는 겸손한 현대식 빌딩처럼 생겨서 외관에서는 재판소의 위엄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ICJ보다 엄격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제 현장임이

느껴졌다.¹¹⁾

현재 20세기 말 최악의 반인륜 범죄로 불리는 보스니아 내전 책임자 마지막 남은 특급 수배자인 두 명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Courtroom 1에서는 즉 보스니아 내전(1992~95) 당시 이슬람교도 8000여 명을 학살하는 등 인종청소¹²⁾의 주범인 라트코 므라디치(Ratko Mladic)¹³⁾와 Courtroom 2에서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계 지도자 고란 하지치¹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보스니아 내전 3대 전범으로 유명한 므라디치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Courtroom 1로 향하였다. 중앙에는 빨간 법복을 입고 있는 3명의 재판관들이 계시고 좌측에는 므라디치가 앉아 있고, 맞은편 우측에는 소추관들이 앉아 있고, 그 중간에는 증인이 앉아 서로 질문과 답변을 교환하고 있었다.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전쟁범죄를 묻는 엄숙한 자리라 생각했던 나의 예상과 달랐던 점은 첫째 므라디치는 준수하게 생기신 평범한 아저씨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고 둘째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16년을 도주하다 체포되었으니 순순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을 증명해보 이듯 시종일관 답변을 부정하고, 비꼬고, 답변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굉장히 당황했었다. ‘전범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법에 의한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파괴한 자는 반드시 국제사회에 의해 처벌받는다라는 점이 보다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과 국제사회에 정의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견고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며 재판장을 나왔다.

재판을 마치고 바로 권오곤 재판관님을 만나 뵈었다. 한국 학생들 3명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ICTY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 명씩 질문도 받아주셨다. 국제법을 공부할 때 국내법원에 대해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ICC와 달리, 유엔안보리에 의해 보다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기관으로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ICTY는 나에게 국제인도법의 수호자라는 가장 국제법스러운 멋진 기관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재판을 직접관람하고 권오곤 재판관님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뻐다.

VI. 마치며

헤이그 도시 전체는 조용하고 아담하여 파리, 런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온 학생들은 금세 심심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헤이그는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보다는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곳이었으며, 동시에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곳이었다.

헤이그에서의 생활을 적어 내려가면서 헤이그에 대한 여운이 없어지려면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법 하계과정은 세계 최고의 국제법 하계과정이라는 명성만으로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가장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고 다른 점을 가진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국적,

11) <http://www.icty.org/sections/TheCases/CourtSchedule>.

12) http://www.icty.org/x/cases/mladic/cis/en/cis_mladic_en.pdf.

13) <http://www.icty.org/cases/party/704/4>.

14) <http://www.icty.org/cases/party/694/4>.

나이, 종교 등 여러 장벽을 뛰어 넘어 국제법을 공부하는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이 들려주는 강의를 듣고, 여행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3주간의 생활은 헤이그 아카데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법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2014년도 2/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I. 2014년도 2/4 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 2014년도 4-6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의 수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 의정서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남풀라-나메틸 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마푸토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행자이송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11월 25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4월 2일(조약 제2178호)
- 관보게재일: 2014년 3월 17일

● 주요내용

- 당사자는 공동 프로젝트 시행, 과학자 및 전문가 교류, 정보와 자료의 교환,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함.
-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 활동을 조정·촉진하기 위하여 양측 이행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2.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02년 3월 30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4월 3일(조약 제2181호)
- 관보게재일: 2014년 4월 17일

● 주요내용

- 상대국에서의 범죄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자국내 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증거·진술의 제공, 압수·수색요청의 집행, 증거제출을 위한 상대국으로의 관계인 이송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 제공
-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에 관련된 경우 등에는 공조제공 거절 가능

3.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의 수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 의정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2년 12월 4일 아스타나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4월 9일(조약 제2182호)
- 관보게재일: 2014년 4월 24일

● 주요내용

- IGA에 의해 사업권을 받은 발하쉬 사업자도 카자흐 전력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용량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카자흐 개정 전력법에 명시된 문구로 변경
 - ※ 장기 용량구매 협약(또는 장기 전력구매 협약)
 - 신규발전설비의 가용전기용량 유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장기합의

4.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2년 5월 13일 북경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5월 17일(조약 제2183호)
- 관보게재일: 2014년 5월 7일

● 주요내용

- 3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용하고, 공정·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3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국유화 및 수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공정·신속·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함.

- 계약당사자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 및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일정 기간 내에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5.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6월 5일(조약 제2188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13일

● 주요내용

- 우리나라가 키르기스공화국에서 무상원조사업을 실시
-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사업을 위해 우리나라가 파견한 전문가, 봉사단, 그리고 한국 국제협력단 사무소와 그 직원 등에 대해 특권·면제·혜택을 부여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5월 28일 홍콩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6월 13일(조약 제2185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2일

● 주요내용

- 수형자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송당사자의 관할권에서 수용당사자의 관할권으로 이송될 수 있음.
- 수형자가 이송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형선고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수용당

- 사자의 법 하에서도 형사범죄를 구성할 것
- 우리나라가 수용당사자인 경우 수형자가 우리 국민이고 홍콩이 수용당사자인 경우 수형자가 홍콩 영주권자일 것
- 수형자에게 선고된 형이 이송 요청 시점에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자유형일 것
- 판결이 확정적이고, 그 범죄 또는 그 밖의 모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당사자 내에서 진행 중이 아닐 것
- 이송당사자·수용당사자·수형자 본인이 이송에 동의할 것

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2월 2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6월 18일(조약 제2190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25일

● 주요내용

- 2014년도 총액은 9,200억원, 유효기간은 5년(2014년~2018년)으로 합의하였으며, 2015~2018년간 매년 분담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4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

8.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2월 26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6월 18일(조약 제2191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25일

● **주요내용**

- 2009년 한미가 합의한 「군사건설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상의諸원칙을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
 - 미합중국은 우리나라와 협의 후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우리나라는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을 시행
 - 미 합중국이 설계를 담당
 -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퍼센트를 차지하며 현금으로 지급
 -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의하고 현금 제공을 포함하여, 적절히 조치

9.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2월 26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6월 18일(조약 제2192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25일

●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분담 항목별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함.
-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매년 대한민국 지원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합동협조단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지원 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방식 및 절차 개선,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정보 공유 증진 등을 규정함.

10.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07년 5월 3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6월 20일(조약 제2186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11일

● **주요내용**

- 인도대상범죄는 양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 인도 청구와 범죄인인도 및 재산인도 등에 필요한 서류·절차 및 요건 등을 각각 정함.

11.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07년 5월 3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6월 20일(조약 제2187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11일

● **주요내용**

- 양국은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또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증언·증거물의 제공, 서류의 송달 등 공조를 상호 제공함.
-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와 관련되거나 피요청국의 주권·안전보장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하도록 함.

III. 고시류 조약

1.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4월 11일 바쿠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4월 11일(고시 제828호)
- 관보게재일: 2014년 4월 18일

2.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4월 29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4월 29일(고시 제830호)
- 관보게재일: 2014년 5월 8일

3.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5월 11일(고시 제829호)
- 관보게재일: 2014년 5월 7일

4.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남플라-나메틸 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5월 23일 마푸투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5월 23일(고시 제831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2일

5.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마푸토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5월 23일 마푸투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5월 23일(고시 제832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2일

6.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6월 2일 프놈펜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6월 2일(고시 제833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12일

7.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6월 17일 타슈켄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6월 17일(고시 제834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26일

8.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6월 17일 타슈켄트에서 서명
- 발효일: 2014년 6월 17일(고시 제835호)
- 관보게재일: 2014년 6월 26일

2014년도 2/4분기 신규 가입 다자협약 개관

I. 2014년도 2/4분기 신규 가입협약 목록

- 2014년도 2/4분기 대한민국 정부가 신규로 가입한 다자협약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II. 협약 개관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발효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ther Part)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0년 5월 10일(브뤼셀)
- 발효일 : 2014년 6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4년 5월 23일

● 주요내용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은 민주주의 원칙,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법의 지배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자관계를 강화된 협력관계로 격상시키며, 협력 분야를 양자적, 지역적, 범세계적 수준에서 발전시키기로 함.
- 정기적인 정치 대화를 구축하고, 대량파괴무기

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대한 대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등 정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함.

- 무역과 투자의 지속가능한 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 및 투자, 경제정책 대화, 경쟁정책, 과학 및 기술, 에너지, 해운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
- 보건, 고용 및 사회문제, 환경 및 천연자원, 기후변화, 농업, 농촌 개발 및 임업, 해양 및 수산업, 개발원조 등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
- 문화, 정보, 통신, 미디어 등 및 교육 분야와 사법협력, 불법 마약·조직범죄·부패 등에 대한 대응 등 사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
-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고 당사자 간 포괄적 관계 발전을 점검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정의 적용과 해석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의 및 중재 절차 등을 마련함.

2.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발효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05년 4월 13일(뉴욕)
- 발효일 : 2007년 7월 7일
- 기탁처 : 국제연합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4년 5월 29일

- 발효일 : 2014년 6월 28일
- 관보게재일 : 2014년 6월 18일

● 주요내용

-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로 방사성물질 소유·사용하거나 원자력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협약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국내법상 형사범죄로 처벌하도록 함.
-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협약에 따라 핵테러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다른 당사국 등으로부터 비밀로 접수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
- 당사국은 이 협약상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한 방사성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를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함.
- 이 협약상의 범죄가 발생한 후에 해당 방사성물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러한 물질 등이 무해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따라 보관되도록 함.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The 24th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김민철 (외교부 국제법규과 외무사무관)

I. 들어가며

유엔해양법협약¹⁾ 제319조 제2항 제e호는 “(유엔) 사무총장은 [...]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당사국회의를 소집(convene necessary meetings of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협약이 발효된 직후인 1994년 11월 21-22일간 뉴욕에서 제1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된 이래 동 회의는 그간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기관들의 연례활동 및 기타 해양법 관련 실행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당사국들의 평가 등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 왔다.

금년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6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한충희 주유엔대표부 차석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금번 회의의 주요안건은 (1)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 활동보고 및 예산문제 검토, (2)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이하 ‘ISA’) 활동보고, (3) 대륙붕한계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이하 ‘CLCS’) 활동보고 및 CLCS 위원회의 근무조건 검토 (4)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해양법협약 보고서 및 관련 토의 등이었다.

그리고 금번 회의를 계기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7명의 ITLOS 재판관에 대한 선거 및 2014년 2월 사임한 Rajan(인도) CLCS 위원회 후임위원회에 대한 보궐선거도 이루어졌는데,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위 ITLOS 재판관 선거에서는 우리 백진현 재판관이 재선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요 안건들을 중심으로 금번 회의의 결과에 대하여 서술한다.²⁾

1) 정식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82.12.10.자메이카 몬테고 베이에서 서명, 1994.11.16. 발효)로, 외교부의 국문번역에 따르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라고 하며(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조약과 국제법’ - ‘조약정보’ 란 및 외교부 국제법물국,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일조각(2013), 1432면 참조), 이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또는 ‘협약’으로 약칭한다.

2) 금번회의결과를 정리한 공식보고서(SPLOS/277)는 유엔 해양법국(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 DOALOS) 홈페이지(www.un.org/Depts/los/meeting_states_parties/meeting_states_parties.htm)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동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동 출장기는 회의의 시간 순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며, 주요 사안별로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II. 주요의제별 논의

1.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관련 사항

가. 활동보고

6월 9일(월) 오전 의장선출³⁾, 의제채택 등 5일간의 회의진행을 위한 각종 행정사항들에 대한 논의 및 결정들을 마치고, 곧이어 오전 세션의 마지막 시간은 Yanai Shunji 재판소장이 ITLOS 재판 진행 동향, 인턴십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2013년 ITLOS 활동 상황을 보고하였다.

우선, Yanai Shunji 재판소장은 2013년에 (i) M/V Louisa 사건(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v. 스페인)⁴⁾, (ii) M/V Virginia G 사건(파나마 v. 기니비사우)⁵⁾, (iii) Arctic Sunrise호 사건(네덜란드 v. 러시아)⁶⁾, (iv)

3) 금번 당사국회의의 의장으로는 아프리카 그룹의 Kingsley Mamabolo(남아공)가, 부의장으로는 아태그룹의 Melivia Demetriou(사이프러스), 동유럽 그룹의 Aleksas Dambrauskas(리투아니아), 중남미그룹의 Patricio Troya(에콰도르), 서유럽그룹의 Anniken Enersen(노르웨이)가 각 선출되었다.

4) 2010년 11월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스페인측 EEZ에서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선박 및 선원 억류조치에 대하여 스페인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ITLOS 사건번호 제18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스페인측 EEZ 내에서 스페인측의 허가를 득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도중 스페인측으로부터 유엔해양법협약 위반혐의를 받음)으로, 재판소는 2010년 12월 23일 잠정조치명령을 내린 후 2년여에 걸친 심리를 거쳐 2013년 5월 28일 최종적으로 동 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고 하며 관련된 불성립 판결을 내렸다.

5) 2011년 7월 파나마가 기니비사우측 EEZ에서의 파나마 선박에 대한 나포조치에 대하여 기니비사우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ITLOS 사건번호 제19번)으로, 재판소는 2013년 9월 2일부터 6일 간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 4월 14일 기니비사우측의 △파나마와 해당 선박간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 부족, △국내규제완료 원칙 미충족 등의 선결적 항변을 배척하고, 기니비사우측에 협약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금전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6) 2013년 10월 네덜란드가 자국선박 및 선원 억류조치에 대하여 러시아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ITLOS 사건번호 제22번, 러시아의 북극해 개발 반대 시위를 벌이던 그린피스 회원과 이들이 탄 네덜란드 선적 선박을 러시아가 억류하자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가 ITLOS에 제소한 사건)으로, 재판소는 러시아의 재판불용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진행하여, 2013년 11월 22일 네덜란드측의 재정보충(360만유로)을 조건으로 동 선박 및 선원을 즉시 석방토록 잠정조치결정을 내렸다.



사진 1. ITLOS 재판관 선거 직후 회의장 전경

IUU 어업 관련 권고적 의견 요청 사건(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⁷⁾ 등 네 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사건들을 통해 ITLOS의 해양법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ITLOS의 사법결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Yanai 소장은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n Maritime Institute), 중국국제학연구원(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지원을 통해 ITLOS 개최 인턴십에 다수 참가자들이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Nippo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은 분쟁해결 관련 훈련 프로그램과 International Foundation의 지원을 받은 Summer Academy가 개최되었음을 추가로 설명하며, 지원 국가들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2014년에도 케냐와 우간다에서 유사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임을 부연하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가들은 ITLOS의 사건 수 증대, 심리의 신속화 현상 등을 통해 ITLOS를 통한

7) 2013년 3월 재판소에 접수된 IUU 어업 관련 권고적 의견 요청 사건(ITLOS 사건번호 제21번)으로, 재판소는 2013년 5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당사국과 각종 기구들로부터 서면의견을 접수받았으며, 2014년 3월 14일까지 상기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접수를 받았고, 2014년 9월경 공개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점차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우리 대표단 역시 ITLOS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법기관으로서 ITLOS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 등을 통해 향후 해양법 분쟁에 있어 최고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인턴십, 지역별 워크숍, 각종 아카데미 등 ITLOS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나. 예산문제 검토

6월 10일(화) 오후 세션에 진행된 ITLOS 예산 관련 보고에서, Philippe Gautier ITLOS 사무처장은 2015-2016년도 예산안 보고서(SPLOS/2014/WP1), 2011-2012 및 2013-2014년도 예산 검토서(SPLOS/268)에 관하여, 아래 요지로 보고하였다.

우선, 2015-2016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동 회계연도 예산은 예상재판 업무량, 재판소 행정업무, 재판소 설비운영비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013-2014년도의 예산규모를 유지하는 zero-growth 방식⁸⁾을 채택하였음을 설명하며, 2015-2016년도 예산은 최소 1건의 본안사건(제21번 IUU 어업 관련 권고적 의견 사건)과 동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Urgent Proceedings 3건(긴급석방 및 잠정조치)을 감안하여 20,045,300유로로 책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2011-2012년도 결산 결과, 동 회계연도의 전체 잉여현금은 총 879,051유로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Working Capital Fund에 일부 예산을 이전하여 1건의 Urgent Proceeding 처리 소요예산(753,000유로)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26,051유로를 기여당사국에 다시 반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의 문제 제기 및 질의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11일(수)부터 6월 12일(목)까지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는

바, EU는 6월 12일(목) 오전, zero-nominal 방식⁹⁾에 입각하여 (i) 2015-2016년도 예산의 경우, ITLOS 제출안에서 300,000유로 삭감, (ii) 2011-2012년도 잉여현금 879,051유로 중 350,000유로를 Working Capital Fund로 이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당사국들에 회람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도 일부 중남미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예산안 관련 논의는 난항을 겪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국가들간 비공식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늦게 의장은 (i) 2015-2016년도 예산의 경우 ITLOS 제출안에서 1,159,100유로를 삭감한 18,886,200유로(2013-2014년도 예산 대비 2,352,200유로 삭감), (ii) 2011-2012년도 잉여현금 879,051유로 중 350,000유로를 Working Capital Fund로 이전하고 나머지 529,051유로는 기여당사국들에게 반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의장의 안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보였으며, 6월 13일(금) 오전 당사국들은 관련 논의를 속개하여 상기 의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 영국측 ITLOS 예산 관련 신규메커니즘 제안 검토

영국은 지난 2013년 제23차 당사국회의 당시 ITLOS 예산안 구성 및 사후결산심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심도 있고 객관적인 정밀조사(scrutiny) 메커니즘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던바, 동 제안은 당시 컨센서스의 부재로 인하여 금번 제24차 회의에서도 재차 논의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영국측은 상기 제안의 배경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였는데, 현행과 같이 당사국회의의 Open-ended Working Group에서 예산안을 검토하는 방식은 재판소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시, 참여국가의 규모 및 전문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며, 별도로 보다 작은 규모의 비

8)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그 외 상승분은 동결하여 전체적으로 전 회계연도의 예산규모를 유지하는 안.

9)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명목상 금액 자체를 전 회계연도 예산규모에 맞추는 안.

공식 포럼을 구성하여 동 포럼에서 ITLOS 사무처장과의 구체적인 질의·응답 및 토론 후, Open-ended Working Group에 ITLOS의 예산안 관련 건의 사항을 제안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⁰⁾

영국 측의 상기 설명이 있는 6월 10일(화) 직후 곧바로 비공식협의를 통한 국가들간 입장조율이 있었으나, 동 제안에 대하여 지지 그룹과 반대 그룹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적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대 그룹(코스타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알제리, 니카라과 등)은 예산안의 투명성 확보, 기존 절차와의 중복성(Open-ended Working Group과의 duplicity), 예산안 심사관련 책임소재 등의 문제를 들어 영국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지지 그룹(과테말라,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예산 심사의 효율성 제고, 예산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해 제고 등을 들어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 그룹은 설령 상기 두 그룹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상호간 협의의 시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동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의장은 동 건을 내년 회의 의제로 남겨두고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하는 한편, 영국 측은 역시 당사국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추후에도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국제심해저기구(ISA) 관련 사항

6월 10일(화) 오전, Nii Allotey Odunton ISA 사무총장은 금년 7월 14일부터 25일 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제20차 ISA 총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동 회의에서는 7건의 심해저 독점탐사광구 신청 심사, 동물상 분류 표준 개발 관련 사항 검토, 개발규칙 제정추진 문제 논의, 이사국 선거 실시 및 예산안 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보고하였다.¹¹⁾

특히, (i) 동 제20차 총회에서 논의될 총 7건의 탐사신청 건 중, 러시아, 영국, 인도, 싱가포르의 신청은 이미 2014년 2월 ISA 법률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금번 제20차 총회에서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독일, 쿡아일랜드, 브라질의 신청은 향후 법률기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20차 총회에서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ii) 동물상분류 표준 개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ISA가 2013년 계약자들을 위한 탐사 지역 내 동물상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태평양 Clarion-Clipperton 해역에서 망간단괴 매장량 관련 동물군 전자지도 책을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덧붙여, (iii) 개발규칙 제정 추진을 위하여 법률기술위원회가 2014년 2월부터 관련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사무국 역시 당사국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인바, 제20차 총회에서 그 결과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부연하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가들은 최근 탐사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ISA의 활동 및 심해저 탐사·개발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평가하며,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문제 관련 협력, 기여금 납부 등 재정적 지원 등 향후 ISA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지지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일부 대표단(호주, 말레이시아, 자메이카 등)은 심해저 탐사·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국제사회 전체의 권익 보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현재 광물자원 중심으로 형성된 심해저 활동은 향후 심해저 해양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10) 다만,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ITLOS 사무처장이 유엔을 방문하게 되는 당사국회의 기간 동안 동 포럼을 개최하고, 유엔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각 당사국 대표부에서 순환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첫 회의는 영국 측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덧붙였다.

11) 상기 관련 제20차 ISA 총회 결과에 대하여는 금번 국제법 동향과 실무(통권 제34호)에 수록된 국제법규과 김준혁 경감의 출장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3.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관련 사항¹²⁾ : 활동 보고 및 근무조건 논의

가. 활동 보고

ISA 활동 보고 직후 이어진 CLCS 활동 보고에서, Lawrence Awosika CLCS 의장은 지난 제32차(2013년 7월 15일 - 8월 30일), 제33차(2013년 10월 7일 - 11월 22일), 제34차(2014년 1월 27일 - 3월 14일) CLCS 회의의 주요내용 및 CLCS 위원들의 업무부담(workload)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우선, Awosika 의장은 지난 제2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이후 CLCS가 위와 같이 3차례(제32차-제34차) 전체회의(plenary)를 개최하여, (i) 6건의 제출정보에 대하여 소위원회(subcommission)를 구성하였고, (ii) 10건의 발표(presentation)를 청취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여부를 결정하였으며, (iii) 2건의 제출정보에 대하여 권고 채택하는 한편, (iv) 2건의 제출정보에 대하여 심사 개시를 하였음¹³⁾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제31차 회의부터 회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¹⁴⁾ CLCS 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근무조건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며, 당사국회의 Open-ended Working Group¹⁵⁾에 근무조건 개선 문제와 관련한

모든 지원(all necessary resources)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하였다.

또한 개도국 출신 CLCS 위원의 회의 참석을 지원하기 위한 Trust Fund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 국가들은 CLCS의 업무부담 가중 문제에 공감을 표하면서, (i)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ii) Open-ended Working Group 내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iii) 자발적 기여금(Trust Funds)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방안 확대 등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고, 우리 대표단 역시 CLCS 위원들에 대한 근무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업무효율성 향상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 러시아 대표단은 최근 CLCS에 의한 오호츠크해 지역의 수정 정보 권고 채택을 언급하며, 동 정보 심사와 관련한 CLCS 위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나. CLCS 위원들의 근무조건 검토를 위한 Working Group Decision 검토

6월 13일(금) 오전, CLCS 위원의 근무조건 검토를 위하여 2013년 제23차 당사국회의에서 구성된 Open-ended Working Group의 그간 논의 및 결정사항을 정리한 Draft Decision(SPLOS/L.74)에 대한 당사국간 협의가 있었다.

부국가들이 CLCS의 업무일정 및 근무여건 변화로 인해 개도국 위원의 CLCS 회의 참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CLCS 위원들의 근무조건 및 업무부담 논의를 위한 회기간 워킹 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이 설립되었다. 동 WG은 James Waweru 주유엔케냐대표와 Tomas Heider 아이슬란드 외교부 법률자문을 공동의장으로 하여 CLCS 위원들의 △사무공간 부족, 뉴욕체제기간 연장에 따른 수입손실 및 비용증가, 가족방문 등 근무여건 관련사항 논의, △의료·치과보험 관련 사항, △신탁기금의 활용가능성 및 별도 기금 창설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12) 유엔 홈페이지 SPLOS/270 및 CLCS 의장서명(CLCS/80, CLCS/81, CLCS/83) 참조.

13) ① 파키스탄,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공동제출), 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공동제출), 모리셔스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 결정, ② 러시아, 파키스탄, 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공동제출), 프랑스, 투발루-프랑스-뉴질랜드(공동제출), 중국, 키리바시, 한국, 니카라과, 마이크로네시아 제출정보에 대한 발표(presentation) 청취, ③ 오호츠크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부분제출 수정안(partial revised submission) 및 Faroe Islands 북쪽 지역에 대한 덴마크의 부분제출(partial submission)에 대해 권고 채택, ④ 아이슬란드의 Egir Basin 지역 등에 대한 부분제출 및 가나의 제출 정보에 대한 권고 개시(상기 두 정보에 대하여는 차기 제35차 CLCS 회의에서 추가 논의 예정이다) 등이 그것이다.

14) 그간 연간 2차례 총 8주 내지 11주에 걸쳐 개최되었던 CLCS 회의는 제31차 회의부터 연간 3차례 총 21주(각 7주)로 그 기간이 늘어났다.

15) 2013년 제23차 당사국회의에서 아르헨티나, 세네갈 등 일

이와 관련, 상기 Draft Decision의 초안자로 참가하였던 아이슬란드 대표단의 Tomas Heider¹⁶⁾는 동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¹⁷⁾하였는바, 대다수 국가들은 동 초안자들의 노고를 평가하며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각 스페인어 번역본 및 프랑스어 번역본에 일부 표현을 수정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을 제외하고, 실제 측면에서 동 Draft Decision에 대한 수정 요구나 기타 의견은 별도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상기 Draft Decision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4. ITLOS 재판관 선거 및 CLCS 위원 보궐선거

가. ITLOS 재판관 선거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금번 당사국회의에서는 ITLOS 재판관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4년 11월 16일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5년 8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ITLOS는 총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동 재판관들은 3년마다 7명씩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각 9년 임기(보궐선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연임 또한 가능하다.

금번 당사국회의에서는 전체 당사국 166개국 중 15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6월 11일(수) 오전에 선거

가 개최되었는바, 총 7명의 재판관 자리를 두고 10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2석에 대하여는 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는바, 우리 백진현 재판관이 159개국 중 총 130개국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치열한 경합을 뚫고 재선에 성공하였다.¹⁸⁾ 그 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후보가,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후보가, 서구 그룹에서는 아이슬란드 후보가, 동구 그룹에서는 폴란드 후보가 각 재판관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백진현 재판관은 1996년 ITLOS 출범 당시부터 초대재판관으로 재임해 온故 박춘호 재판관의 뒤를 이어 2009년 3월 보궐선거에 출마·당선된 이래, 금번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하시어 2023년까지 향후 9년간 재판관직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나. CLCS 위원 보궐선거

또한, 금번 당사국회의에서는 CLCS 위원직 1석에 대한 보궐선거도 진행되었다. 6월 12일(목) 오전, Rajan Sivaramakrishnan(인도) CLCS 위원의 2014년 2월 23일자 사임에 따른 공석 발생으로 동 위원의 잔여 임기(2016년말)까지 활동할 후임 위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동 선거에서는 Rajan 위원과 동일 국적(인도)의 Rasik Ravindra 후보가 단독 입후보하여 총 투표수 119표 중 총 11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¹⁹⁾

참고로, 금번 선거에서 CLCS 위원으로 당선된 Rasik Ravindra 위원은 인도 Jammu and Kashmir 대학 졸업 후, 인도 Sagar 대학, 네덜란드 Maastricht 연구소 등을 거쳐 최근 인도 국립남극해양연구센터장(Director of National Centre for Antarctic and Ocean Research(NCAOR))을 역임한 지리전문가로

16) 동인은 금번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신임 재판관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17) 동 초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CLCS 위원 배출국은 해당 위원을 위하여 의료비용(medical coverage)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며, 소위원회 미팅을 비롯한 CLCS의 활동에 동 위원이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고, ② 개도국 CLCS 위원들에 대한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 coverage) 제공을 채택한 총회결의 68/70 제78항의 요청을 주목하고, ③ 제69차 유엔총회에서 CLCS 위원들의 업무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도록(take any necessary measures) 촉구하고, ④ 당사국들에 대하여 개도국 출신 위원들의 CLCS 회기 참석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 납부를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⑤ 제23차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Open ended Working Group 내에서 CLCS 위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결정하고, ⑥ 제25차 당사국회의에서 위원들의 근무조건 관련 문제에 관하여 계속 재검토할 것을 결정한다.

18) 아시아 지역의 할당된 다른 한 석은 기존 ITLOS 재판소장으로 재임하였던 Yanai Shunji가 차지하였다.

19) CLCS 위원은 협약 당사국이 지명한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문학 분야 전문가 중 지리적 대표성을 고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참석 당사국 2/3 이상 득표시 당선된다.

서, 2009년 5월 인도의 대륙붕한계 정보 제출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5.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보고

회의 마지막 날인 6월 13일(금) 오후, 금번 회의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협약 제319조에 따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해양법관련 보고(A/68/71/Add.1)²⁰⁾ 및 이에 관한 당사국들의 논의가 있었다.

동 보고에는 2012년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개방 30주년 후 금년 협약 발효 20주년²¹⁾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2013년 8월 7일 니제르의 협약 비준으로 현재 동 협약의 당사국은 총 166개국으로 증가하였다는 언급과 같이 협약의 외형적인 발전사항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 국제해운관련 발전, 해적행위, 해양안보, 해양과학기술, 기후변화와 해양 등 해양 분야 전반에 걸친 최근 동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동 보고에서 협약 채택 후 30년이 지난 현재, 협약은 해양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기초가 되는 보편성(universality)을 확보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은 향후 협약 및 기타 관련 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과 조정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 국가들은 사무총장의 보고서 제출에 사의를 표하면서,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기관인 ITLOS, CLCS의 선거가 있었음을 평가하며, 협약 발효 20주년을 맞아 향후에도 협약을 토대로 한 더욱 공고한 법적 레짐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의견 청취 후 의장은 기존 관행에 따라 컨센서스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가별 의견 중 특기할 사항으로, 일부 대표단은 일국이 제출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하여 다른 국가

가 CLCS 절차규칙 제1부속서 제5조 제a항²²⁾을 인용하여 심사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당해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한 CLCS의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였으며, 차기 제25차 회의에서 동 조항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지 기준 설정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일부 대표단들은 최근 고조되었던 남중국해 사태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는바, 남중국해 행동선언(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등에 근거하여 해당 수역에서 관련 국가들의 권리와 이해가 존중되고,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길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남중국해 분쟁과 같은 양자 문제를 다루는 데 적절한 포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²³⁾

6.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제20주년 및 제6회 세계바다의 날 행사

금년은 앞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리고 동시에 금번 당사국회의 개최기간은 제6회 바다의 날(2014년 6월 8일)²⁴⁾과 바로 이어지

20) 유엔 사무총장은 협약 제319조 및 총회결의 67/78의 제272항에 따라 매년 해양문제 관련 쟁점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 및 당사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1) 동 협약은 1994년 11월 16일 발효하였다.

22) In cases where a land or maritime dispute exists, the Commission shall not consider and qualify a submission made by any of the States concerned in the dispute. However, the Commission may consider one or more submissions in the areas under dispute with prior consent given by all States that are parties to such a dispute.

23) 2014년 5월경부터 동 당사국회의 개최시까지 계속 고조되어 온 남중국해 분쟁은 최근 일단락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베트남 ‘영유권 분쟁’ 해결 합의”, 2014년 8월 28일 등 참고).

24) 2008년 유엔총회는 결의 63/111을 통해 ‘세계바다의 날’(World Oceans Day : WOD)을 제정하였는바, 동 결의를 근거로 2009년 이후 매년 6월 인류가 직면한 여러 해양관련 도전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금년도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유엔 바다의 날 홈페이지(www.un.org/Depts/los/wod/index.html)를 참고 바란다.



사진 2. 우리 대표단의 발언 모습(화면: 제동환 당시 영토 해양과장)

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에 동 회의가 개최된 첫날인 6월 9일(월) 오후 세션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각국 대표단의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에 대한 기념발언 세션이 진행되었다.²⁵⁾

동 행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20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문서(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visionary instrument)이자 오랜 세월의 시험을 이겨낸(stood the test of time) 다자조약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해양의 평화적 이용, 형평한 해양자원의 사용, 해양자원의 보존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는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등과 같은 심각한 위협을 극복하고 시대사적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결정적 행동의 시점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바다의 헌법(the Constitution for the seas)인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금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들은 유엔해양

법협약이 그간 해양 분야의 안정과 질서 형성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며, 특히 ITLOS, ISA, CLCS 등 협약상 기구들이 해양법과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여 온 점에 대하여 치하하였다. 특히, 우리 대표단 역시 유엔해양법협약이 그간 국제해양법 질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으며, 국제사회가 해양자원을 균형 있게 이용하면서 보존할 수 있었던 규범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고 평가하며, 협약에 기초한 해양레짐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의 지속적인 ITLOS 재판관 배출 및 ITLOS, ISA, CLCS에 대한 기여도를 알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금년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ITLOS와 연계하여 개최할 아프리카 지역 워크숍에 대한 당사국들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²⁶⁾

III. 마치며

금번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상 기구인 ITLOS, ISA, CLCS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살피고,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동 협약이 해양 분야에 미친 기여에 대하여 다시금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ITLOS는 사건 수의 증대, 심리의 신속화 등을 통해 그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점차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ISA의 경우 심해저 탐사신청 건수의 증대 등으로 그 기능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CLCS의 경우에도 위원들의 업무부담 및 근무조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나, Open-ended Working Group

25) 동 행사는 UN Webcast(<http://webtv.un.org>)를 통해 실시간 방송이 되었는바, 동 사이트에서 2014년 6월 9일자 “Ban Ki-moon, Commemoration of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World Oceans Day”, “(Part 1) Commemoration of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Observance of World Oceans Day”를 검색하면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의 축사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대표단들의 기념발언을 시청할 수 있다(2014년 9월 1일 검색·확인).

26) 동 워크숍은 지난 8월 7일-8일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바다뉴스,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해양법 공동세미나 성황리에 폐막”, 2013년 8월 13일)(<http://news.badasea.com/detail.php?number=5260&thread=33>(2014년 9월 1일 검색·확인).



사진 3. 회의기간 내 회의장을 함께 지킨 대표단 일원들
(좌: 김주형 KMI 연구원/중: 신경식 해수부 사무관/우: 필자)

및 당사국들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해 본다.

더욱이, ITLOS, ISA, CLCS 기타 DOALOS 관계자들의 거듭된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리나라는 상기 기관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신탁기금 공여, 재판관·위원 등의 배출 등을 통해 이제 국제적인 해양법 기여국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날을 거듭할수록 공고해져 가는 유엔해양법협약 체제²⁷⁾ 하에서 이러한 지원의 지속·강화 및 해양법체제로의 적극적인 동참의 필요성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²⁸⁾ 이와 관련하여, 대내적으로는 앞으로도 우리의 해양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지속·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협약상 기관 및 당사국들과의 다각적인 교류 기타 홍보

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의 해양법 역량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및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작은 소회를 덧붙이며 마무리한다. 백진현 재판관의 ITLOS 재판관 재선의 가슴 벅찬 현장은 국제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나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었다. 더욱이, 우리가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 축하를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배출한 해양법 전문가가 세계 유수의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재판관으로 당선되는 장면은 우리의 외교 역량과 해양법 역량의 발전을 대변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²⁹⁾

오늘날 과거에 비하여 많은 한국 출신 인사들의 국제기구 및 국제재판소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발판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제2의 반기문, 제2의 박근혜, 백진현의 탄생을 이어나가는 것 역시 우리가 가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금번 백진현 재판관 당선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한 외교부 및 재외공관 기타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7) 일부 대표단에 의한 CLCS 절차규칙 관련 문제제기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공론화 언급들은 현재 해양법체제의 문제 상황이라기보다 오히려 유엔해양법협약 및 동 규범의 이행과 관련한 당사국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현실주의적 논리를 넘어서 규범에 대한 호소를 통한 이상주의적 접근이 그만큼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반증한다.

28) 특히, 우리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중국, 일본은 ITLOS, ISA, CLCS 활동 지원 등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느낌이다.

29) Philippe Gautier 사무처장과 더불어 ITLOS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김두영 ITLOS 사무차장 역시 동 회의기간 내내 ITLOS 관련 논의를 지켜보며 회의장을 지켰다.

제8차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작업반

서 영 민 (외교부 국제법규과 외무행정관)

I. 회의 개요

지난 2002년 지구환경정상회의의 계기에 각국 정상들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4년 유엔총회는 결의(를 하나 채택하게 된다. 이 결의로 인하여 설치된 작업반이 바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작업반’(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BBNJ WG, 이하 ‘BBNJ WG’ 혹은 ‘WG’)이다. 지난 2006년 제1차 WG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8번의 WG가 개최되었다.²⁾ 특히, 지난 제7차 WG를 포함하여 금번 제8차 및 2015년 1월에 개최될 WG는 유엔총회에 BBNJ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 문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개최되는 WG로서 이전 WG들과 구별된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즉, 2012년 ‘Rio+20 결의’에 기초하여 유엔총회는 결의를

채택한바,³⁾ 총회는 WG에게 제69차 유엔총회에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내 국제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의 범위(Scope), 기준(parameters),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16일부터 6월 19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WG 회의⁴⁾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두 번째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⁵⁾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이하 UNCLOS)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협약에는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라는 제목으로 공해어업권을 규정한 제116조부터 해양포유동물에 관한 제120조를 두고 있을 따름이다. 이

3) A/RES/66/288.

4) 동 회의는 공동의장인 Palitha T.B Kohona 스리랑카 주유엔 대표부대사와 Liesbeth Lijnzaad 네덜란드 외교부 법률자문관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 등 약 70여개 유엔회원국, CBD, ISA 등 10여개 정부간기구 및 IUCN, WWF, GREEN PEACE 등 10여개 NGO가 참석하였다.

5) 흔히 ‘ABNJ’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을 말하며, ‘BBNJ’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을 약칭한다.

1) A/RES/59/24(2004).

2) 동 WG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며, 유엔 해양법국(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DOALOS)이 동 WG 운용을 위한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제1차 WG가 개최된 이후 2008년 제2차, 2010년 제3차, 2011년 제4차, 2012년 제5차, 2013년 제6차, 2014년 제7차 및 제8차 WG가 개최되었다.

또한 대부분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조치를 개별 당사국에게 일임하고 있다.⁶⁾ 물론 협약이 채택된 후 심해저에서의 광물자원 개발 및 이익공유, 몇몇 어종에 대한 공해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두 개의 UNCLOS 이행협정이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바로 BBNJ 논의를 촉발시켰던 핵심적인 문제인 심해저에서 발견된 광물자원이 아닌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MGR)의 처리 문제는 규율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개발도상국들은 해양유전자원의 처리(접근/개발 등)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고,⁷⁾ BBNJ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어느덧 국가들간의 논의는 해양유전자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ABNJ에서의 어업,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환경영향평가, 기술 이전 등을 포괄하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광범위한 규범체계 정립을 목적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게 된 형국이다.

이하에서는 금번 제8차 BBNJ WG의 주요 논의의 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을 위주로 회의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II. 주요 논의 내용

1. BBNJ 자체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

BBNJ 자체를 바라보는 국가들간의 입장은 말 그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어떤 국가들은 현재의 규

범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용납할 수 없고, 일부 선진국들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는 상황을 부정직한 것이라는 이미지로 규정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내년 1월 WG에서는 새로운 이행협정을 개발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 있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위협에 처한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협력의무가 당사국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우리가 채택해야 하는 이행협정은 UNCLOS상의 의무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995년 채택한 협약의 이행협정인 ‘공해어업협정’ 및 현재 심해저지구(ISA) 등과 같이 현존하는 여러 체제 및 제도들은 지역적이고(regional), 구역적인(sectoral) 보존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에 바로 흠결(gap)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행협정을 통해 산발적인(fragmentation) 체제가 통합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어업, 광물의 개발, 선박의 통항 등이 관할되게 될 것으로 이행협정을 통한 BBNJ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은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행협정’은 UNCLOS 체제 내에서 채택되어야 하며, 동 협약 발효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해양법 분야에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이 이행협정의 마련은 매우 긴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G77+중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으로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보전 및 이용되어야 하는바, 현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고, MGR을 위한 국가들간 협력의 필요성은 유엔해양법협약 뿐만 아니라 총회결의 제2749호 등에서도 잘 반영되어져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이행협정이 매우 긴요하고 동 협정 개발을 통해서 현존하는 관련 법적 체제의 흠결(gaps)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⁸⁾ 한편, 원칙적으로는 G77

6) Article 117 (Duty of States to adopt with respect to their nationals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All States have the duty to take, or to co-operate with other States in taking, such measures for their respective national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7) 현재는 어느 국가라도 심해저 유전자원을 자유롭게 개발 가능하다. 물론 개발도상국들이 심해저 유전자원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도 소수의 과학기술 선진국들만이 해양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채취 및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8)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카리브해 국가연합을 대신하여 G77의

과 유사한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이행협정 체결에 찬성하는 국가들간에도 다소 상이한 입장이 있다고 하면서 이행협정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scope, parameters, feasibility에 대해서는 반드시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⁹⁾

WG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주장은 바로 BBNJ를 위한 이행협정 체결에 유보적인 국가들의 기본입장이다. 앞에서 소개한 EU, G77 등의 주장은 그 대의명분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BBNJ를 달성하기 위해서 EU와 G77이 주장하고 있는 방식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실제 이행에 있어서도 기존 제도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가 혼란을 초래한다면 무조건 빨리만 처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 BBNJ를 위한 이행협정 체결에 유보적인 국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미국은 BBNJ의 보존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이를 강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¹⁰⁾ 이행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입장에 여러 의문점을 표명하였다. 즉, 새로운 BBNJ 문서¹¹⁾가 공해어업, 광물자원의 개발 등에 대해서 어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인도, 남아공,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스리랑카, 멕시코 등이 별도 발언을 신청하여 재차 지지입장을 표명하였다.

9) 아울러, 중국은 ISA나 IMO 등 기존의 규범체제를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새로 구성되는 협약 및 기구 등이 기존의 체제와 중복되거나 상호 충돌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공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및 항행의 자유도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하였다.

10) 미국 대표는 이번 회의가 개최되고 있던 기간이 공교롭게도 존 케리 국무장관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해양(Our Ocean)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기간이라고 하면서(미국이 주최), 동 회의에는 시민사회는 물론 여러 기관들이 참석하여 해양오염, 해양산성화,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바, 이를 통해서도 BBNJ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정치적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11)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알 수 있겠지만, EU 및 G77은 BBNJ를 위한 문서(동 WG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는 UNCLOS 이행협정이라고 단언하기에 모든 발언에서 당연

하게 규율할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로 성안될 수 있을지, 동일한 내용을 관할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BBNJ를 달성할 수 있을지, MGR에 대한 이익 공유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EU 및 G77국가들이 이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다소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다.¹²⁾

캐나다는 새로운 국제문서는 현존하는 레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할 것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 전제하고, MPA를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누가 MPA를 설정하고, 어떻게 이를 운용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신규 협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구역에 따라 BBNJ를 보존할 상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행협정의 체결이라는 단일한 접근법(single approach)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만약 새로운 협정이 체결된다면 MGR에 대한 연구를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르웨이는 기존 레짐이 ABNJ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어떤 흠결(gaps)이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새 문서가 기존 체제와 중복(duplication)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적절한 레짐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결의라는 형태를 통해 ‘저층어업’

히 ‘이행협정’이라는 용어를 기정사실처럼 사용하는 것에 반해,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이행협정’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다.

12) 미국은 지난 제7차 WG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이행협정을 찬성하는 국가들에게 던진 바 있다. 다시 말해, BBNJ 보존방안에 대한 논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의문점을 제기하면서 EU 등 BBNJ를 위한 이행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국가들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답변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 제8차 WG에서도 계속 미국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아, 미국은 간간히 제공되는 EU와 G77의 답변에 그리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을 충분히 문제없이 규제하고 있는 선례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행협정이 없이도 BBNJ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는 이행협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업적, 비상업적 이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이행협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BBNJ를 위해 개발되는 국제문서와 국제관습법과의 관계, 기존 여러 관련 협정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익공유라는 이름으로 공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행협정의 체결을 주장하는 측(EU, G77+중국)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인류공동의 유산’의 개념을 MGR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이슬란드는 ABNJ는 심해저, 공해, 대륙붕 이원지역이 포함되는 방대한 문제로서 ABNJ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국제문서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기존 협정들의 문제점 및 관계를 논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국제문서를 개발한다면 관련 국제레짐과의 격차와 개념정의에 대해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¹³⁾

참고로 우리정부의 발언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에서의 생물다양성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다만 WG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WG가 다루고 있는 몇몇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국제문서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물론, 나중에 마련될 문서와 기존에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법적 체제 및 제도 그리고 각 지역수산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들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고 하고, BBNJ를 위한 국제문서는 기존 국제레짐과 양립하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BBNJ가 달성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 정치한 법적 기반과 국제사회의 깊은 의견교환을 기초로 한 합의를 이뤄가지 못한다면 결국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형성에 적지 않은 흠결 혹은 법적 구조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 국제문서의 범위, 구성내용(parameters), 실현가능성

제7차 WG부터 WG의 구체화된 임무는 바로 BBNJ를 위해 개발되어야 할 국제문서의 범위, 구성내용, 실현가능성을 유엔총회에 권고하는 것이다. 그 때 따라 이번 WG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열띤 국가간 입장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보았듯이 대략 EU와 G77+중국의 입장이 유사하며, 몇몇 선진국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국의 입장을 가능한 한 선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우선 E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협정은 실현 가능하며,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많은 국제협정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왔고, 이는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로운 국제문서의 법적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 이행협정은 UNCLOS 체제하에서 ‘완전한 패키지’(whole package) 형태로 논의되어야 하며, 다른 협정 및 기구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기반관리수단’인 MPA는 ABNJ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ABNJ의 인간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부분별, 지역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

13) 아이슬란드는 그러한 예로 심해저 자원 중 이익공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수산자원도 이익공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이슬란드는 수산자원도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지는 않으며, 이익공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급을 한 것 같다.

문서에 이것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행협정에서는 협력의 의무, 환경영향평가 의무 등 UNCLOS 상 일반적인 의무는 물론 사전예방주의 원칙, 생태계기반관리 원칙 등이 포함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어업, 광물자원 개발 및 항행 등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지역적 문서 및 기구들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¹⁴⁾

G77+중국은 UNCLOS는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세부적인 법적체제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기구들이 ABNJ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충분하지 않은 바, UNCLOS의 이행협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행협정은 기존 체제와의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BBNJ 문서는 구속력 있는 문서로 체결되어야지 soft law의 형식에는 반대하며 이행협정은 UNCLOS 제14부(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를 이행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새로운 BBNJ를 위한 기구(body)가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진 기구로 구성된다면 여타 현존하는 기구들의 권한(mandate)에서 어떻게 중복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¹⁵⁾ 만약 동 기구를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기구로 만든다면, 현존하는 체제에 어떤 부가가치(value added)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MPA와 관련해서도 MPA 설정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에 이행협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행협정도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인바, 어떤 국가가 MPA

설정에 반대한다면 신규 문서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MGR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어떤 법적 흠결(legal gap)이 있다는 몇몇 국가들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MGR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⁶⁾

이외에도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등은 미국과 큰 입장은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 왜 이행협정의 체결을 통한 BBNJ 확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강변하였다. 이들 중 몇몇을 소개하면, UNCLOS가 선박의 통항, 해저관선의 부설, 해양과학조사 등에 대한 법적체제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바, 신규 이행협정을 통해서 규율하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당사국이 80개국에 불과한 95년 공해어업협정을 고려할 때, 긴급성이 결여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MGR이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대부분 유사하였고, 어업이 이행협정에 포함되는 것에도 전체적으로 반대하면서 어업의 문제는 이행의 흠결(gaps of implementation)의 문제로서 정치적인 의지 부족 문제라고 하였다. 공해에 설정하는 MPA도 공해에는 전통국제법상 ‘기국주의’와 ‘공해자유원칙’이 있는바, MPA를 이행하는 절차(메커니즘)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체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현재 BBNJ와 관련하여 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바로 MGR이 그러한 분야가 될 수 있는바, 이행협정으로 해결한다면 어업이 아니라 MGR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언급들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행협정 체결에 유보적인 국가들도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약간씩 입장이 상이한 측면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4)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미국은 이러한 EU의 설명이 미국 등 이행협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가들의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평을 하였다.

15) 미국은 그 예로 선박에 의한 오염은 MARPOL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신 기구가 어떻게 규제하고 강제할 것인지 등이 매우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16) 미국의 문제제기는 상당히 귀를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MGR 부분과 같이 다소 정책적인 문제로서 무조건 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법적인 미국의 문제제기는 대부분 반드시 어떤 문서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III. 결어

금번 회의에서는 BBNJ를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의 범위 등에 대해 그간 입장차와 마찬가지로 EU 및 G77+중국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 간의 입장차이가 선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EU나 G77과 같이 무조건 이행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MGR이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자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큰 틀에서는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들간 매우 초보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견이 확실하게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유엔총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작성해야 하는 다음 제9차 WG¹⁷⁾에서 scope, parameters, feasibility가 포함된 동 권고안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총회에 제출할 권고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WG에서는 공해어업, MPA, MGR 등 그간 BBNJ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으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심도 깊게 논의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볼 때, 현 UNCLOS가 아무런 명문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 및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즉, 있어야 할 법(*lex ferenda*)을 현존하는 실정법(*lex lata*)과 혼동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수사로서 MGR이 ‘인류공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이미 현 국제법 체제에서 MGR이 ‘인류공동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말이다. 다시 말해, ‘이행협정’은 상위법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UNCLOS의 최소한의 언급 및 수권이 있는 분야를 상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체결될 수 있는 것이지, WG의 논의 대상이 되는 MGR, 공해어로행위와 같이 모법에서 침묵하고 있거나 원칙적으로 금지의 대

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금에 와서 단순한 필요성에 의존하여 무조건 ‘이행’ 협정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국가관할권 이원수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달성하여야 하는 확실한 목표를 두고 어떤 수단으로 이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WG에서의 논의가 중요하고 긴요한 것일 것이다. 내년 1월 WG를 비롯하여 BBNJ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17) 2015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20차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회의

김 준 혁 (외교부 국제법규과 경감)

I. 서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 불리는 심해저는 국가관 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의 해저로서 UN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에 의해 개발과 관리가 규율되고 있다. 이를 책임지는 국제기구는 자메이카 킹스톤에 위치한 국제해저기구(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로 총회·이사회·법률기술위원회·재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심해저 활동에 관련된 각종 규칙·규정 및 절차의 채택, 등록신청투자가의 의무이행 감독, 탐사사업계획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심사·승인, 심해저 활동의 감사·감독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¹⁾)에 1996년 E그룹에 진출, 2008년 B그룹이 된 이후 현재까지 동 그룹을 유지 중이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법률기술위원회에 우리나라 위원을 배출하였다. 또한, 1994년 태평양 C-C(Clarion-Clipperton)해역 망간단괴 독점 탐사광구를 확보하여 2001년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인도양 공해상에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하여 금년 6월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심해저 개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국제해저기구(ISA)의 제20차 정례회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UN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기모 주자메이카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외교부 국제법규과 김준혁 경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형기성 책임연구원, 박성욱 책임연구원, 박원 연구원을 정부대표단으로 구성하여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탐사계약 및 개발규칙 제정 논의, 신규 탐사신청에 대한 심사, 이사국 선거 등이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금번 회의 관련 주요 쟁점별 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다.

II.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

1. 신규 탐사신청(7건) 승인

이사회에서는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신규 탐사신청 승인 건과 관련하여 총 7건의 심해저 광구 탐사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신규 탐사신청 중 망간단괴 광구는 영국 UK Seabed Resources Ltd.·싱가

1) ISA 이사국(5개 그룹)

- A그룹 : 심해저광물 대량소비국 및 수입국(4석)
- B그룹 : 8대 투자국(4석)
- C그룹 : 심해저광물 주요 수출국(4석)
- D그룹 : 개도국 특별이익 그룹(6석)
- E그룹 : 지역안배(16석).



사진 1. ISA 회의장 전경(자메이카 킹스턴)

포르 Ocean Mineral Singapore Pte. Ltd.·쿡제도 Cook Islands Investment Corporation에서, 해저열수 광상 광구는 인도 정부·독일 Federal Institute for Geoscience and Natural Resources에서, 망간각 광구는 러시아 정부·브라질 Companhia de Pesquisa de Recursos Meniralsd에서 신청하였다.

이 7건의 탐사신청 승인에 대해 각 이사국들의 발언이 있었다. 나이지리아는 이미 탐사계약을 진행 중인 독일·러시아 등의 탐사주체의 탐사계약에 대한 성과의 수준과 능력에 대해 ISA의 평가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음 것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아르헨티나는 UK Seabed 사의 탐사신청 건에 대하여 법률기술위원회 보고서상에 신청주체와 관리업무를 담당할 계열 회사명(Lockheed Martin사 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보가 신청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독일은 탐사신청 시 신청지역이 인도와 중복되어 탐사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탐사신청자들이 타 신청자들의 신청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법률기술위원회 심의시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사회가 진행되기 전에는 UK Seabed사의 1주체 2광구 신청으로 인한 독점문제, 싱가포르의 개발도상국 기준적용의 합리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독점문제

에 관한 일반적 논의만 있었을 뿐 개별 탐사신청 자체에 대한 이견은 제시되지 않으면서 7건의 탐사신청이 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승인되었다.

2. 탐사계약 연장 관련

탐사계약 연장 건과 관련하여 2016~2017년 기간 중 총 7건의 탐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탐사계약 연장 및 개발규칙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개도국 대표들은 계약국들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자동적인 계약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계약연장 검토 과정에서 탐사계약 표준조항의 조건을 근거로 계약국들로부터 충분한 정보 등을 제공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기 계약자들은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 연구를 지속하여 왔음에도 경제상황에 따라 현재 개발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사회는 탐사 연장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된다는 법률기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기술위원회로 하여금 최우선적으로 탐사계약 연장신청 관련 절차 및 기준안을 마련하여 다음 2015년 7월 제21차 회기시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브라질은 망간단괴 탐사계약 연장과 관련된 규정 이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내용은 탐사신청을 위한 신청 절차상에 탐사연장 이유와 연장기간, 개발단계 추진계획, 계약조건 변경사항, 보증국의 보증연장 확인, 연간 탐사감독·관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개발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시점에 계약주체가 개발의사를 보유하고 있고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법률기술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최대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잠정연장을 신청하도록 시도한 것으로 다른 이사국들의 이견이 다수 제기되며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탐사계약의 감독과 관리를 위한 비용과 관

련하여 탐사계약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내년부터는 각 탐사계약자들이 ISA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때 관리 및 감독비용으로 매년 47,000US\$(고정금액)를 납부하게 되었다.

3.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 개정 관련

심해저 탐사에 있어 고정수수료에 관한 망간단과·망간각 탐사규칙과의 형평성 제고 및 ISA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해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 제21조 개정안 심의가 이사회에서 진행되었는데, 기존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ISA 고정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청서 제출시 500,000US\$를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50,000US\$를 지불하고 이후 매년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탐사신청서 제출시 50만US\$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초과수수료 발생시 최대 5만US\$(고정수수료의 10%)까지만 추가로 내도록 제한하는 지불방식을 내용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각국의 특별한 이견 없이 개정안대로 심의를 완료하였다.

4. 이사국 선거

금번 제20차 정례회의에서는 총 36개 이사국 중 금년 말 임기가 만료되는 17개 이사국(A그룹-2석, B그룹-3석, C그룹-2석, D그룹-3석, E그룹-7석)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보통 이사국 선거는 각 그룹별 자격요건(1994년 이행협정에 규정)과 지역대표성(1996년 이사회 결정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국가간 사전 협의·조정 후 총회에서 선출이 되는 절차를 갖는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B그룹에서 금년 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국가는 독일·프랑스·우리나라로 세 나라 모두 연임을 위해 입후보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사국 B그룹 기준 해당국이 참석한 사전 조정회의

에 참석하여 연임의사를 보여주고, 독일·프랑스 외에 다른 국가의 이사국 진출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도 참석하여 아태 그룹 내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B그룹 연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선거활동 후, 7. 24(목) 개최된 총회에서 진행된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B그룹 연임에 성공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기 동안 이사국 B그룹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A그룹에서는 이탈리아·러시아, B그룹에서는 독일·프랑스, C그룹에서는 호주·칠레, D그룹에서는 자메이카·레소토·피지, E그룹에서는 카메룬·가나·인도네시아·멕시코·나이지리아·싱가포르·통가 등이 해당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III. ISA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올해 2014년은 ISA 설립 20주년으로써 회의 기간 내에 특별세션으로 ISA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관련 인사 및 지역그룹 대표들의 축하발언 등이 있었는데, Portia Simpson Miller 자메이카 총리는 심해저 광물자원의 관리 및 분배, 어업분야의 지속가능성,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광업기술의 개발 등 ISA가 향후 다루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법률담당 사무차장보의 대독을 통해 20주년을 축하하며 심해저지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희망하는 국가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Nii Allotey Odunton ISA 사무총장은 ISA의 향후 발전을 위해 해양광물자원 및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각국과 계약주체에게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각 지역그룹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하여 나이지리아는 개발규칙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칙 제정을 위해 계약주체들은 제공 가능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사무국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다음으로 아시아 그룹 대표로는 피지가 ISA의 심해저 광물자원개발활동은 해저광물자원개발과 해양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서구지역 그룹 대표로는 독일이 UN해양법협약을 통해 국제사회가 해양을 위한 보편적 법률체계를 만들게 된 의의에 대하여 높게 평가한다고 발언하였다.

IV.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회의에서는 심해저에 대한 탐사계약 연장 및 개발규칙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려 7건의 탐사신청이 승인됨에 따라(이전까지 승인 총 건수는 19건), 향후 개발단계 진입 이전에 광구확보를 위해 각국이 탐사신청을 적극 추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망간각 광구신청을 준비 중인 우리나라 또한 탐사신청 추진을 조속히 검토하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수년간 UK Seabed Resources Ltd., G-tec 등 민간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바, 심해저에 대한 탐사단계에서 점진적으로 개발단계로의 진입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에 상업화 단계에서의 전략을 연구·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개발규칙 제정 등 ISA 활동이 본격화 될 경우 재정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위원회에도 우리나라 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금번 회의시 참석국들은 이슈별로 국익에 따라 각



사진 2. 회의장 내 ISA 휘장 앞에 선 필자

자의 입장을 주장하였으나, 여타 다른 국제회의와는 다르게 침예하게 대답하거나 의견 조정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이는 아직 심해저가 탐사 단계에 있으며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만약 심해저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향후 국제해저기구 회의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난민법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와 관련한 최근 논의*

이 재 강 (공익법무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I. 들어가며

1. 논의 배경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지위정서’라 한다)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출입국 행정과 관련한 국내법인(출입국관리법)¹⁾에 난민에 관한 조항을 두고 본격적으로 난민제도를 운영한 것이 이 무렵의 일이다. 그러나 2001년 첫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던 이후, 2012년까지 총 1,143명이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그 중 60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한 수치²⁾를 통

하여 파악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난민행정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공포된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았다.³⁾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난민법을 제정하여 인권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 대체로 환영하면서도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신청 등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는 미흡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논란 속에 난민법이 2013. 7. 1.부터 시행된 지도 어느새 1년 남짓 흘렀다. 그동안 다양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었지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이 단연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그와 같이 난민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소위 ‘송환대기실’ 유치

* 이 논문은 필자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문제에 대한 검토”, 『연세법학연구』, 제24권 제1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 297-341면의 논의를 국내법원의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하여 발전시킨 것임.

1) 법률 제4592호로 1994. 7. 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 동의정서에 가입함(1992. 12. 3)에 따른 난민지위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고, 법 제2조 제2호의2에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은 자”를 난민으로 정의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 법률에 의하여 난민임시상륙허가제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제도 등의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법무부,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 보도자료(2013년 6월 18일자), 9면 참조.

3) 법무부, 위의 보도자료, 1면에 따르면, 정부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고, 2013. 5.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난민고등판무관 역시 난민법 제정에 큰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4) 안승훈,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공포된 ‘난민법’의 몇 가지 쟁점”, 행정재판실무연구, 재판자료 제125집, 2013. 2. 18, 701-702면.

5)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2호(통권 제125호), 2012, 106-107면.

(留置) 문제를 두고 위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라 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적으로는 인신보호법에 기초한 구제청구, 헌법소원 및 관련 가처분 사건, 불회부결정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등 다양한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어 이에 대한 종국판단이 나왔거나 현재 계속 중이다.

2. 쟁점

제정된 난민법은 외국인인 공항 또는 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난민인정심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항 입국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판단을 거치도록 설계되었다.⁶⁾ 이와 같은 난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

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은 신청서 제출시부터 심사 회부 여부 결정시까지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⁷⁾

로 정한다.

7) 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4호)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④ 항 생략)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6) 난민법(법률 제12421호)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문제는 현행 난민법 및 동법 시행령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불복수단 및 그 기간 중 체류할 장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이다. 우리 출입국 당국은 현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즉시 출국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사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주장하며 출국편 교통수단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만의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단순히 환송구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송환대기실’이라는 곳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다.⁸⁾ 그런데 이와 같은 송환대기실은 그 존재와 외국인에 대한 유치 모두 법적 근거가 미약할뿐더러, 그 곳에서의 유치가 사실상 체포 또는 감금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있어 앞서 언급한 조약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본 후, 이러한 절차에 구제를 호소하는 동안 당해 외국인을 송환대기실에 유치하는 것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외국인이 조약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의 국가고발제도는 국내구제수단을 완료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⁹⁾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검토한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8) 실제 세계 각국의 공항, 항만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1988년부터 2006년까지 프랑스 파리의 관문 Charles De Gaulle 공항에 머물렀던 이란 국적의 Mehran Karimi Nasseri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The New York Times(1999. 9. 27.), “Roissy Journal; 11 Years Caged in an Airport; Now He Feels to Fly” 기사 참조 : <http://www.nytimes.com/1999/09/27/world/roissy-journal-11-years-caged-in-an-airport-now-he-feels-to-fly.html>.

II.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불복 수단

1.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원인과 경과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난민법이 새롭게 규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보류한 채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중국적인 판단을 하는 제도가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단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 후 신청인을 국내에 체류하게 한 상태에서 난민인정심사를 하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위 시행령 조항의 배제사유들은 대체로 난민인정심사로 이행할 만한 실익이 없는 것들로서, 빠른 시간 내에 출입국 당국 공무원에 의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즉, 독일 난민절차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등에 의하여 규정된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를 참조하면,¹⁰⁾ 독일의 경우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3일 안에 그 인정여부에 대한 중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일종의 예비적 심사와 같은 규정을 두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입국하여 정식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우리 제도와 다르다.¹¹⁾

이와 같은 우리 제도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두 가지에 집중되고 있다. 하나는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¹²⁾ 다른 하나는 시행령에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2조, 제5조 제2항 (a) 참조.
 10) 안성경·윤이숙,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제13호), 2013. 6., 142-143면 참조.
 11) 오승진, 앞의 글, 106-107면.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이 단시간 내에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제도 특성상, 일반적인 국내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비하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12) 김병주, “난민법 시행령 등 공청회 토론문”,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13. 3., 20면;

규정된 사유에 대한 판단이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이므로, 반드시 정당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 등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¹³⁾ 특히 입국 거부처분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결국 그 공항·항만 등에 머무르면서 그 불복수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인데, 동법 시행령이 출입국항에 별도의 대기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시까지, 즉 7일의 기간 내 이용만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¹⁴⁾

현재 실무상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 의사를 밝히면 여하한 목적의 사증이 있는 경우에도¹⁵⁾ 대한민국 입국 목적이 소지한 비자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단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 4항에 따라 입국거부 처분¹⁶⁾을 하고 있다. 이

원소영, “난민신청자 구금사례를 통해 본 구금의 문제점”, 『난민신청자 구금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등, 2013. 7., 16면.

13) 김병주, 앞의 글, 28면.

14) 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4호) 제4조(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출입국항에 대기실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제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15) 사증 자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운수업자가 출항지에서부터 탑승을 거부하기 때문에, 통상 단기상용 목적의 사증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게 된다.

16)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2421호) 제12조(입국심사)

(①, ②항 생략)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⑥항 생략)

때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¹⁷⁾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이 탑승하였던 비행기의 운수업자에게 외국인을 국외로 송환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 때 별개로 진행되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심사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면 당해 외국인의 입국여부, 난민인정심사 절차 등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불복수단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연 이러한 불회부결정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었다. 최근 이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룬 국내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사건에서, 피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입국불허’ 결정의 전제인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고권적 재량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¹⁸⁾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17)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2421호) 제76조(송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이하 각 호 생략)

18) 인천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의 판결서 제2면 참조. 필자 역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문제에 대한 검토”, 『연세법학연구』, 제24권 제1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 317-319면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검토한 바 있다. 다만, 대한민국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당사국이고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난민임을 주장하여 비호를 구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입국불허 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입국을 불허하는 결정으로서 그 내용 및 법률효과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입국불허 결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덧붙여 법원은 “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을 할 경우에는 원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입국이 허가될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난민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및 자료 등의 열람·복사권(제16조) 등의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되는 점, ②원고가 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내지는 교육의 보장 등의 법률상 권리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⁹⁾

법원이 이 판결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자체를 다룰 수 있다고 본 것만큼 주목할 만한 것은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을 할 경우에는 원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입국이 허가된다고 본 점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칙적으로 심사 불회부결정은 당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심

사 불회부결정을 다투어 그가 승소하더라도 그를 당연히 입국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바, 실무상 혼란이 예상된다.²⁰⁾

만약 위 법원의 판단처럼 불회부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외국인이 이에 따라 곧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난민인정심사로 자동적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그 심사 기간 동안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등 권리 보장의 면에서도 충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회부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유용한 불복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덧붙여, 법원은 심사 불회부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에 관해서도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 7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이라고 판단하여,²¹⁾ 불회부 사유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출입국 당국의 재량의 범위가 난민협약의 취지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²²⁾

III. 난민인정 신청자의 송환대기실 유치와 관련한 쟁점 검토

1.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상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 의사를 밝히면 일단 출입국 당국

하는 외국인은 통상의 외국인과 법률상 이익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당국의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그 재량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는 후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불회부결정을 처분으로 보아 다룰 경우 당해 외국인이 승소하더라도 입국 거부처분은 유효하게 남게 되어 결국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하여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될 여지가 있는 등 그러한 신청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고려한 논의이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2041 판결에 따르면,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국내 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입국거부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바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판단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9) 인천지방법원, 앞의 판결서, 제3·4면 참조.

20) 이 사건은 현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014누52093 사건으로 계속 중인데,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1) 인천지방법원, 앞의 판결서, 제5면.

22) 다만, 당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신청인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본국으로부터 곧바로 대한민국 공항으로 온 것이 아니라 중국 등지를 경유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 출입국 당국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하여 항공사에 그의 국외 송환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이 말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에 해당하지는 의문이다.

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입국거부 처분을 하고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이 탑승하였던 비행기의 운수업자에게 외국인을 국외로 송환할 것을 지시하며, 별도로 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그가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이를 다투면서 출발지 국가로 돌아가는 운송수단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 때, 그가 머무르게 되는 소위 공항 또는 항만 내 ‘환승구역’은 규범적으로 ‘입국’의 전 단계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항·항만의 내부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국 당국의 통제 권한이 미치게 된다. 현재 각 국제공항·항만에는 이와 같은 통제를 위하여 소위 ‘송환대기실’이 운영되고 있다.²³⁾ 문제는 이러한 송환대기실의 설치 주체 및 근거가 모호하고 운영 및 통제방식을 살펴보면, 이곳에의 유치·실질상 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유치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9조 등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한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²⁴⁾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

23) 다만, 이러한 ‘송환대기실’과 출입국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운영 중인 ‘외국인 보호실’은 구별하여야 한다. 즉, 동법 제56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한 외국인을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 내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보호실 유치는 최대 96시간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외국인 보호실’에의 유치는 법률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로 이해되는데, 송환대기실과는 운영주체, 현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이 문제된 실제 사례의 경우에도, 당해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실’에 유치하지는 않았다.

24) Article 31 (Refugees unlawfully in the country of refuge)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impose penalties, on account of their illegal entry or presence, on refugees who, coming directly from a territory where their life or freedom was threatened in the sense of article 1, enter or are present in their territory without authorization, provided they present themselves without delay to the authorities and show good

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송환대기실의 현황과 근거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입국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88조²⁵⁾에 따라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숙식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적인 출입국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항공사들이 공동으로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Airline Operators Committe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송환대기실은 직접적으로 이 단체가 각 항공사들이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 송환대기실의 운영주체는 위 협의회이며 출입국 당국과는 별개로 보인다. 그러나 난민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어디에도 이러한 송환대기실의 존재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출입국 관련 법령에는 위와 같은 운수업자 등의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송환대기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직접적 근거는 없다.

3. 송환대기실 유치의 적법여부와 구제수단

송환대기실은 공항 내에 폐쇄적으로 마련된 일정한 공간으로서 위 협의회가 고용한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롭지 않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가치분 결

cause for their illegal entry or presence.”

2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788호) 제88조(송환의 의무)

(①, ②항 생략)

③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요구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교통비·숙식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

정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사도 이 공간에 유치된 사람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을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폐쇄적 수용 공간인 송환대기실에 유치되도록 하는 것이 ‘자의적 구금’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다.²⁶⁾ 그러나 다른 한편, 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출발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곧바로 송환대기실에서 빠져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구금’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송환대기실은 어디까지나 표면상 항공사들의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므로 이를 ‘국가에 의한’ 구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요한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인라4인신보호 결정 사건²⁷⁾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 절차²⁸⁾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²⁹⁾

동법에 의한 구제청구 절차는 ‘사인’에 의한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당부 및 송환대기실 운영의 적법성을 직접 문제 삼지 않고 단지 당해 외국인에 대한 ‘유치 또는 수용의 계속’의 당부만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원심인 같은 법원 2014. 2. 20. 선고 2013인39 인신보호 사건에서는 구제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제청구자가 머무르고 있는 송환대기실은 구제청구자의 출국 의사에 따라 즉시 벗어날 수 있는 곳인 점” 및 “구제청구자와 같은 사안에서 인신보호 청구를 받아들여 그 결과 입국이 되는 경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당부 판단 없이 바로 난민법 제5조에 따라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적격 내지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을 각하하였다.³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심인 위 2014인라4 사건의 재판부가 원심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 모두에게 당해 외국인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하도록 명한 것이다.

항고심은 당해 외국인이 인신보호법 제2조가 말하는 ‘피수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그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단념하고 출국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곧바로 대기실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입국불허 외국인에 대한 보호 및 공항 질서 유지를 위한 송환대기실이 과연 ‘수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감금에 있

26) 이로 인하여 송환대기실의 운영이 인권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한겨레신문(2007. 8. 19.자), “인천공항 ‘입국거절 대기실’ 인권 사각지대” 기사 참조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229972.html>.

27) 청구인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 항공사 운영협의회(Airline Operators Committee)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였다.

28)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6항(“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의 적부심사청구권에 기초한 제도로 이해된다.

29) 인신보호법 (법률 제1100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

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30) 인천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인39 인신보호 사건 결정문 제2면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이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서 할 필요도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³¹⁾을 인용하면서, ‘출국의 의사표시’라는 ‘한정된 하나의 조건 하’에서만 신체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점,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가치 및 난민법 등 현행법의 실질적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리고 국내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등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규정하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청구인의 출신지인 수단(Sudan)으로의 출국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수용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³²⁾

다른 한편, 항고심은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회가 송환대기실을 직접 운영하며 관리 직원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인신보호법상 ‘수용자’로 보면서, 또한 송환대기실의 실질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 대해서도 ‘수용자’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즉, 재판부는 “[양자의] 협의에 의해 이 사건 송환대기실의 관리·운영체계가 공동결정되게 된 점” 및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가 이 사건 송환대기실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 “송환지시서상…… 기재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송환대기실 수용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 의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 입실에 대한 통제권한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 있음을 추인케 하는 점”,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이 사건 송환대기실이 일정한 행정 목적상 필요에 의해 설치·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출입국사무소가 ‘수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³³⁾ 재판부의 이러한 결론에 비추어 보면, 당해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상 개인고발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동 송환대기실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겠다.

아무튼 동 사건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송환대기실 유치가 ‘위법한 수용’이라고 보고, 그러한 유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수용이 해제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상 국내로 입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수용을 해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되찾도록 하는 이 제도 목적상 당연한 결론이지만, 향후 청구인이 어떻게든 환송구역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면서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볼 때, 그가 안정적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대목이기도 하다.³⁴⁾

사실 이와 같은 송환대기실의 유치는 공항·항만 환송구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분명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 송환대기실은 폐쇄된 공간으로, 외부, 심지어는 변호사와의 접견조차 철저하게 통제되었으며, 치킨버거와 콜라 등 제한된 음식만이 제공되고 생존에 필요한 여하한 집기·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다루는 등의 경우 수개월에 걸쳐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유치가 오로지 출입국 당국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애당초 자의적 구금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향후에는 난민법 시행령 제4조의 난민인정

3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32) 인천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인라4 결정의 결정서 제12-14면 참조. 재판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규정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만 판시하여 다소 애매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정면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동 원칙이 국경에서의 입국거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점은 사실이지만(Report of the 68th Conferenc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1998), p.408), 이 사건에서 출입국 당국은 청구인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그의 출신국이 아닌 중간경유지로 송환하라고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재판부는 청구인이 외국인이지만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결정서 제6-11면).

33) 인천지방법원, 앞의 결정서, 제16-17면 참조.

34) 이 사건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4인마5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심사 대기실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여기에 신청인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또한 그곳에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분 절차 등을 명문으로 확립하여 자의적 구금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4. 변호사³⁵⁾의 접견 거부

유치된 사람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다투거나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나 실무상 송환대기실에 유치된 상태에서는 그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출입국 당국에 의한 접견신청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데,³⁶⁾ 이와 관련하여 위 거부행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시까지 정지시키는 가치분 신청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³⁷⁾ 즉,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그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닐 것,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가치분신청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가치분신청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클 것과 같은 가치분 인용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소는 “신청인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난민법 제12조),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및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된다(인신보호법 제12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피의자와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를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접견을 불허한 것이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다투거나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하는 외국인에게 변호사에 의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는 향후 본안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송구역 질서유지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외국인 입국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출입국 당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국내 법체계 및 재판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송환대기실 또는 환송구역 체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⁸⁾

5.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개인고발제도의 이용 가능성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수락한 당사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개인(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은 당사국의 동 규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규약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진정서(written communication)’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진정서를 전달받은 문제의 당사국은 위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 및 동 위원회

35) 인신보호청구의 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와 관련해서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정확한 명칭이겠으나, 여기서는 자격 개념으로서의 ‘변호사’로 통칭하기로 한다.

36) 헌법재판소 2014헌마346 사건으로 심리 중이다.

37) 헌법재판소 2014. 6. 5. 선고 2014헌사5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

38) 다만, 이러한 권리의 보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보장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검토를 요한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바, 문언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를 형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에 국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송환대기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유치 당하게’ 된 외국인은 변호사에 의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환송구역에서 머무르면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검토를 요한다. 한편, 이와 같은 기본권은 그 성질상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제97조 등 규정에 의하여 인권위원회에 이에 관한 해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심리의 적격성(admissibility)을 다투고자 할 때는 위 절차규칙 제97조 제3항³⁹⁾의 제한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만약 송환대기실에 유치된 당해 외국인이 이 제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자신이 당사국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열거되어 있는 특정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여야 하고,⁴⁰⁾ 또한 가능한 국내구제수단의 이용을 완료하여야 한다.⁴¹⁾ 따라서 송환대기실 유치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유치가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은 동 규약 제9조⁴²⁾ 등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 규약 제9조 위반의 자의적인 체포·억류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인 인신보호법에 의한 절차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소위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대법원의 입장⁴³⁾에 기초한다면 이러한 행정소송의 길도 열려 있으며,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국내구제절차의 이용을 완료한 경우에만 개인고발제도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송환대기실 유치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법원이 최근 들어 난민인정신청 제도 및 이를 신청한 외국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내리고 있는 몇 가지 판결·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제 출입국 당국으로서는 국경 및 환송구역 질서 유지·관리,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판단의 적정성 확보 등 산적인 과제를 동시에 처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를 도입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제도 및 규정의 미흡함과 운영경험의 미숙으로 오히려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불회부결정 사유 구체화, 결정을 다투는 외국인의 체류장소,⁴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권리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문제는 신청인의 인권보장 및 난민에 대한 구제 필요성과 국가의 적정한 국경관리 필요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양자 사이에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국 당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함께 요구되는 시점이다.

39) Rule 97. “3. A State party that has received a request for a written reply under paragraph 1 both on admissibility and on the merits of the communication may apply in writing, within two months, for the communication to be rejected as inadmissible, setting out the grounds for such inadmissibility.”

40)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조.

41)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조.

42) Article 9. “1.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4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98 판결 참조.

44) 현재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회부부결정을 받았거나 국내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일단 난민인정심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의 자격으로 난민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난민지원시설(인천 영종도 소재)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910호)을 참조.

ARA Libertad 사건과 군함의 면제

최 지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I. 서론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의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제297조, 제298조) 일방이 제소할 경우 해당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된다. 따라서 타방은 소제기에 응할 응소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등 그 규범력 및 집행력을 높인 유엔해양법협약은 기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일정부분 해당 수역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군함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절대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못하는 성격의 권한으로 보았다. 하지만 군함의 면제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위하여 아예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의 태도가 오히려 군함의 면제의 보호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 군함의 면제에 관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군함의 면제에 관한 법리가 각국의 국내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즉 군함을 나포한 연안국의 국내법원이 일종의 사법적 자제를 실현하여 이에 관한 법리를 발달시켜 온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유럽

할 것은 이러한 관할권에 대한 자제는 군함의 면제로부터 자국 군함에 대한 타국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를 보장받기 위한 해양 선진국, 즉 서구 국가들의 상호이익 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군함의 면제에 관한 민감성이 떨어져 언제든 타국 군함에 대하여 관할권 행사를 감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ARA Libertad 사건이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바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11년 전 1천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채무 구조조정에 나서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채권단과 합의를 이뤘다. 이 중 채권단의 92%가량이 달러 당 25~29센트 수준에 채무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손실상각에 합의했으나, 미국 내 2개 헤지펀드는 100% 상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미국 1심 법원은 2011년 2월 펀드에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아르헨티나는 항소하였지만 항소법원은 2012년 10월 아르헨티나의 항소를 기각하였다.¹⁾

미국의 헤지펀드는 자신의 판결의 집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 특히 영국과 가나 등지에서 이에 관한 소송을 개시한다. 특히 2012년 10월에는 가나의 지방 법원으로부터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석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

1) NML Capital Ltd et al v. Argentina, 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 No. 12-105.

을 받았다.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와 이 채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군함의 면제권한은 유보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가나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5월 21일 아르헨티나는 가나에 대해서 자국 군함 ARA Libertad호가 같은 해 1일부터 4일까지 가나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가나는 외교 구상서를 통하여 6월 4일에 이를 승인한다고 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 당국이 가나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ARA Libertad호를 억류하였던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가나 지방법원은 아르헨티나 군함 승선 선장과 선원들을 강제로 하선시켰고, ARA Libertad가 정박하고 있던 Accra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군함을 Accra항으로부터 강제로 이송시켰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가나의 ARA Libertad호에 대한 압류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중재재판을 제기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라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한다.

II. 군함의 면제와 유엔해양법협약

ITLOS의 잠정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기 이전에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더불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대상에 군함의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특히 영해에서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의 해석이 문제된다.

1. ‘군함’

군함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ITLOS, The “ARA Libertad” Case (Argentina v. Ghana), Provisional Measures, Case No. 20, para. 38.

유엔해양법협약 제29조 <군함의 정의>

이 협약에서 “군함”이라 함은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구별할 수 있는 외부 표지가 있으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부나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있으며 정규군 규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i) 한 국가의 군에 속하며, ii) 군함으로서의 성격과 국적을 표시할 수 있는 외부적 표식을 표시하고, iii) 적법하게 임명되고 그 이름이 국가의 적절한 군적 또는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있으며, iv) 정규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³⁾ 이 규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호는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충분히 포섭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군함의 ‘면제’(주권면제)

1) 개론

군함의 면제와 관련하여 군함이 떠다니는 기국의 영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은 이미 배척된 지 오래이다.⁴⁾ 군함의 면제는 군함 기국의 주권면제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절대적 면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관련 행위가 사법(私法)상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군함에 대해서는 군함의 면제가 적용되며, 해당 국가는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또한 군함이 일국의 수역에 있든지 아니면 국제 수역에 있든지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 국내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부여된다.

3)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Warships” in Rüdiger Wolfrum (ed.)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4) *Chung Chi Cheung v R.*, *Opinion of the Judicial Committee*, [1939] AC 160, (1938) 4 All ER 786, (1938) 62 Lloyd’s Rep 151, 2nd December 1938, Privy Council.

2) 유엔해양법협약 상 군함의 면제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에 따르면 군함은 공해에서 면제를 향유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 <공해상 군함의 면제>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이 조문은 “공해”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간적 영역을 공해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는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면제에 대해서는 공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상의 ‘공해’는 배타적 경제수역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더라도 연안국이 군함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0조는 연안국 법령 위반시 연안국이 타국 군함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⁵⁾ 제31조는 연안국 법령위반 혹은 국제법 위반 시 군함 기국의 국가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⁶⁾ 이어서 제32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제30조 및 제31조의 연안국의 영해에서의 법령집행권에도 불구하고 군함의 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

제1관,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 범위

군함의 면제를 타국의 내수 및 영해에서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된 사실이다.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도 내수와 영해에서 군함의 면제를 인정하였다. 문제는 영해에서의 군함의 면제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 사항인지 여부이다. 영해에서의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의 문언이 공해에서의 군함의 면제에 관한 제95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95조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공해에서의 군함의 면제 향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32조는 연안국의 군함의 ‘면제’에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othing in this Convention affects the immunities)고 규정하고 있어, 군함이 법령집행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해석에 따라서는 군함의 면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은 내수에서의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III.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1. 군함의 면제와 관련된 사안의 논점

관할권의 존재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어야 한다. 아르헨티나가 적용을 주장한 유엔해양법협약 조항은 제18조 제1항(b),⁷⁾ 제87조 제1항(a),⁸⁾ 제90조,⁹⁾ 제32조였다.¹⁰⁾ 가나에 정박해 있던 ARA Libertad호

5) 제30조 <군함의 연안국 법령위반>

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군함에 대한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31조 <군함이나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의한 손해에 대한 기국의 책임>

기국은 군함이나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또는 이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법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안국에게 입힌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국제책임을 진다.

에 대한 가나의 억류 행위가 무해통항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가나의 항구를 떠날 권리(제18조 제1항(b)),¹¹⁾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제87조 제1항(a), 제90조)¹²⁾ 및 군함에 대한 면제의 항유(제32조)를¹³⁾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¹⁴⁾ 이 중에서 협약 제32조 위반 주장이 군함의 면제 항유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지적한 바대로 제32조가 군함의 면제를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인지 아니면 연안국의 법집행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ARA Libertad호는 항구에 정박해 있던 중 압류되었기 때문에 영해가 아니라 내수에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영해에 관한 제32조가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더 불분명하였다.

2. 제32조에 관한 해석

아르헨티나는 제32조의 의미는 연안국의 법집행권으로부터 군함이 면제를 향유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제32조는 영해 뿐만 아니라 내수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아르헨티나는 협약 제32조는 군함의 면제에 관한 일반국제법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군함의 면제는 완전한 면제라고 주장하였다. 제32조는 ‘제2부(part)의 어떠한 규정이라도’라고 하지 않고 ‘(유엔해양법)협약의 어떠한 규정이라도’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⁵⁾ 따라서 제32조는 영해에 한정된 규정이 아니며, 유엔해양법협약 전반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내수까지 포괄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입장인 것이다.¹⁶⁾ 반면 가나는 제32조의 성격을 다르게 이해한다. 제32조는 면제조항(saving clause)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¹⁷⁾ 즉 협약상의 규정, 연안국이 기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부과에 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그 취지라는 것이다. 제32조에 따르면 협약의 적용 자체가 배제된 것이므로 영해에서 군함의 면제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협약 제32조는 ‘영해’에서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내수’에서의 군함에 면제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구에 정박해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연안국의 입법, 사법, 행정 관할권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¹⁸⁾

3. 재판소의 판단

내수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압류 및 나포한 행동에 대해서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에 관한 협약 제18조 제1항(b), 항행의 자유에 관한 제87조와 제90조, 군함의 면제에 관한 제32조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내수에서 정박해 있는 선박을 압류 및 나포하여도 영해에서 무해통항권 및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권 판단에 있어서 핵심은 군함의 면제에 관한 제32조로 넘겨지게 되었다.

우선 ITLOS는 제2부가 장소적으로 영해에 관한

7) 제18조 제1항(b) <통항의 의미>

1. 통항이라 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영해를 지나서 항행함을 말한다.

(a) ...

(b) 내수를 향하여 또는 내수로부터 항진하거나 또는 이러한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하는 것

8) 제87조 제1항(a) <공해의 자유>

1.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연안국과 내륙국이 향유하는 공해의 자유는 특히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

(a) 항행의 자유

9) 제90조 <항행의 권리>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10) 제32조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

제1관,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ITLOS, 앞의 주 2의 판례, para. 42.

12) *Ibid.*, para. 43.

13) *Ibid.*, para. 44.

14) *Ibid.*, paras. 40, 42, 43, 44 참조.

15) *Ibid.*, para. 44.

16) *Ibid.*, paras. 44-46.

17) *Ibid.*, para. 47.

18) *Ibid.*, para. 56.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2부의 규정들이 영해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영해에 관한 협약 제2부에는 군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제29조와 같이 영해 이외의 모든 해양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즉 영해라는 장소적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렇다면 내수에서의 군함 압류에 대해서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인가? 이에 대해서 ITLOS는 판단을 유보한다. 다만 협약 제32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 즉, 내수에 있는 - 외국 선박에 적용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두 당사국의 의견이 불일치하므로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다고 보았다.²⁰⁾

IV. 잠정조치 명령 이후

1.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

ITLOS는 제32조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와 가나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잠정조치에 관한 관할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타 잠정조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2012년 12월 15일 ARA Libertad호에 급유를 하고 석방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지시하였다. 가나는 이러한 잠정조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같은 해 12월 19일 ARA Libertad호는 정박해 있던 가나의 Tema항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잠정조치 사건에서 ITLOS는 군함의 면제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군함의 면제가 절대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었고, 그 결과 ARA Libertad호에 대한 석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잠정조치 명령으로 아르헨티나가 원하는 군함의 석방 및 군함의 면제는 실현되었지만, 본안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19) ITLOS, 앞의 주 2의 판례, para. 64.

20) *Ibid.*, para. 65.

아르헨티나는 본래의 소송으로 군함의 석방 및 면제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국가책임까지 추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기 때문이다. 군함의 석방에 관한 본안 청구는 잠정조치 청구로 인하여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지만 군함의 면제 침해로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중재재판의 본안 대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2. 가나 국내법원의 군함의 면제 판결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른 ITLOS의 잠정조치 절차는 종료되었지만, 제7부속서 중재재판 절차는 아직 계속 중이었다. 따라서 잠정조치 명령 이후 중재재판소에서는 이와 별개로 중재재판 본안 절차가 진행되었다. 양 당사국은 중재재판을 진행할 중재재판소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를 지정하였다. 또한 제7부속서 제3조에 의하여 5명의 중재재판관이 선임되었으며, 심리를 위한 시간표 및 재판규칙이 확정되었다.²¹⁾ 이렇게 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6월 20일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호에 대한 압류를 허용했던 가나의 국내재판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다. 가나 대법원은 외국 군대의 군함에 대해서 외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하거나 나포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압류를 허용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뒤 가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국 대법원 판결문을 유엔 및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ITLOS를 비롯하여 기타 여러 국제기구에 배포하였다.

3. 소송 종결 합의 및 소송 종료 명령

아르헨티나는 가나 대법원 판결의 내용 및 이를 적극적으로 배포한 가나의 노력을 평가하여 이러한 가나의 행위가 ARA Libertad호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여

21) PCA PRESS RELEASE, ARBITRATION BETWEEN THE ARGENTINE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GHANA, THE ARA LIBERTAD ARBITRATION (ARGENTINA V GHANA) 8 August 2013.

발생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만족(Satisfaction)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양국은 2013년 9월 27일 합의의 통하여 이 사건 중재재판 절차를 종결시킨다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중재재판소에 통보하였으며 사건 종결 명령(Termination Order)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는 2013년 11월 11일 각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재판절차 종결 요청에 근거하여 재판절차 종결 명령을 내렸다.²²⁾

V. 결론

1. 군함의 면제가 일반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는 점은 ITLOS의 잠정조치 명령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었다. 하지만 ITLOS는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32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단계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아르헨티나와 가나 사이에서 다툼이 있으므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관할권 판단에서 인정한 뒤에 잠정조치 요건 판단에 있어서는 가나의 ARA Libertad 나포 및 억류 행위는 일반국제법상의 군함의 면제를 침해한다는 점과 이러한 군함의 면제는 일국의 내수에서도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32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기관의 확정 판결은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제32조가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가나는 제32조는 협약상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면제조항이라는 입장이었다. ITLOS는 잠정조치 단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관할권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중재재판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 중재재판을 종결지은 이상, 이에 대한 판

단을 이번 사건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32조의 해석 및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즉 영해 및 내수에서 군함의 나포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을 받는 행위인지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건이 국제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3. 군함의 면제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다는 점은 일단 국제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상황이므로 향후 군함의 면제에 관한 추후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LOS의 경우도 군함의 면제에 관한 자신의 선례를 심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는 자신의 관할대상 분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향후 폭넓은 판단 여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여론으로 이 사건 이후에도 미국 국내법원은 헤지펀드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서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 번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가 2014년 7월 30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과의 채무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 푸어사에 의하여 선택적 부도(selective default) 상태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자국의 주권면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을 제소하였다. 미국 국내법원에서 피제소자의 위치에 있던 수세적 입장에서, 국가면제 위반을 근거로 한 국제재판을 제기하여 제소국이 됨으로써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미국이 니카라과 사건을 계기로 선택조항 수락선언을 철회한 이후로 양국 사이에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미국이 응소하여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이 성립되게 된다면, 이 문제는 다시 국제재판을 통해서 해결되게 될 것이다. ARA Libertad호 사건은 군함의 면제가 문제된 사건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주권면제에 관한 사항이 정면으로 논의되게 될 것이다.

22) TERMINATION ORDER, IN THE MATTER OF THE ARA LIBERTAD ARBITRATION case.

민간군사보안기업의 인권책임과 국제적 통제기제의 역할과 과제

김 병 준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강의전담교수)

I. 서론

오늘날 전통적 국제법의 주체였던 국가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국제사회의 주체들이 있음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비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활동 범위가 사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점차 공적 영역으로 확대됨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국제법의 주체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¹⁾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에 국제사회는 국제분쟁 지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민간군사보안기업(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이하 “PMSC”이라 함)²⁾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전쟁과 안보의 민영화로 나타난 PMSC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다르게, PMSC의 활동에 따른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침해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³⁾

아직까지 PMSC에 대한 합의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법과 현실 사이의 공백 속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네바에서 국제연합(이하 “유엔”이라 함) 인권이사회 개방형 정부 간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개최되었다. 2011년 5월과 2012년 8월 두 번의 회의를 거쳐 이어진 이번 세 번째 회기에 논의된 주제는 PMSC의 활동을 감시하고,

1) 과거 국제법 체제에서도 국가만이 국제사회의 주된 구성원이었던 적은 없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분야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 예컨대 가톨릭교회 같은 종교기관은 국가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Jeffrey L. Dunoff & Steven R. Ratner & David Wippman, *International Law Norms, Actors, Process A Problem-Oriented Approach* (New York: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0), p. 189).

2) PMSC는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과 민간보안기업(Private Security Company) 용어가 혼재된 개념이다. 무엇이 군사기업이고, 무엇이 보안기업인지 어떤 표준 정의가 주어지지 않다. 현실에서 많은 기업들이 전형적인 군사영역에서부터 전형적인 보안영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구분하여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붙여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괄적인 용어인 PMSC는 군사 그리고/또는 보안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ICRC Publications, *The Montreux Document on*

pertinent international obligation & good practices for States related to operations of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during armed conflict (Geneva: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09), p. 38).

3) 이는 PMSC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정부 간 실무그룹의 임무 기간 연장에 대한 각 국가들의 태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해당 결의안은 31개 국가의 찬성과, 11개 국가의 반대, 그리고 5개 국가의 기권표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들은 주로 PMSC가 활동하는 지역의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었고, 반대 또는 기권한 국가들은 PMSC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방국가들이었다(한국은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관련 자료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180&LangID=E> (2014. 07. 28. 최종방문).

감독하는 부분에서 통일된 국제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논의하는 작업이었다.⁴⁾ 이번 회기에서는 PMSC의 인권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의 국내법 강화와 PMSC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의 제공에 대한 검토 등 PMSC 규제의 정교화를 위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⁵⁾ 이러한 유엔의 늦은 행보와 달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제적 혹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PMSC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PMSC의 활동에 국제인도법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2008년 ‘무력분쟁 기간 중 민간 군사보안기업에 관한 국가의 적절한 국제적 의무와 모범 사례에 관한 몽트뢰 문서’(Montreux Document on pertinent international obligation & good practices for States related to operations of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during armed conflict)와 2010년 ‘민간보안용역 제공업체에 대한 국제행동강령’(Intrans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Provider) 등을 만들어 PMSC 활동에 대한 인권책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 PMSC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외군사원조법’(Regulation of Foreign Military Assistance Act, 1998)과 ‘보안산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 Act, 2001), 그리고 ‘용병활동금지 및 무력

분쟁지역에서의 특정 활동의 규제에 대한 법안’(Prohibition on Mercenary Activities and Prohibition and Regulation of Certain Activities in Areas of Armed Conflict Bill, 2005) 등을 통해 PMSC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⁶⁾

이와 같이 오늘날 국제적인 차원에서 PMSC에 관한 논의와 통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형성과정에 있으며, 특히 PMSC 관련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PMSC의 인권보호와 존중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위한 국제적 통제수단의 마련부터 PMSC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으로 민·형사 및 행정적 제재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마련, 나아가 일반 기업과는 별도의 PMSC의 인가 및 등록 규정에 대한 논의까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PMSC 규제에 관한 상이한 평가와 국제법적 시각차는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차는 결국은 PMSC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고는 PMSC에 의해 나타난 인권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오늘날 강화되고 있는 PMSC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감시 체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PMSC의 인권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적 통제기제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PMSC 관련 입법정책에 요구될 수 있는 문제들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4) 세 번째 회의는 2013년 12월 16일에서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실무그룹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4년 7월 21일에서 25일까지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5)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0년 10월 결의안 15/26에서 ‘용병 사용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mercenaries)이 제안한 PMSC 규제 협약안(Draft Convention on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에 대한 수용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개방형 정부 간 실무그룹 회의의 개최를 결정한다. United Nations Document,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laborating an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on the regulation, monitoring and oversight of the activities of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A/HRC/RES/15/26 (New York: United Nations, 2010).

II. PMSC의 등장과 인권문제

1. 전쟁과 안보의 민영화

과거 전쟁에 외국인인을 고용했던 기록은 쉽게 찾아

6)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각 법률에서 개인이나 법인(기업)에 상관없이 불법적인 용병의 활동과 모집은 형사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Regulation of Foreign Military Assistance Act(Article 8),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 Act(Article 15), Prohibition on Mercenary Activities and Prohibition and Regulation of Certain Activities in Areas of Armed Conflict Bill(Article 10).

볼 수 있다. 전쟁에 외국인 부대를 고용하는 것은 전쟁 자체만큼이나 오랜 관행이었다. 이런 민간인들은 통상적인 용어로 ‘용병’(mercenary)⁷⁾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며, 때로는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의 형태로 등장했다.⁸⁾ 용병 활동이 현대에 들어 맞이한 전성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식민지배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던 1950년대와 1960년대이다. 과거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 이해관계가 용병들에게 돈줄이 되어 주었고, 신생독립국의 자결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용병을 활용하게 되자 분쟁지역에서 사적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었다.⁹⁾ 이에 1977년 아프리카통일기구(OAU)는 ‘아프리카에서의 용병제도 철폐를 위한 OAU 협약(OAU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Mercenarism in Africa)’을 체결하여 용병의 활동을 금지하고, 용병의 거래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였다.¹⁰⁾ 이러한 신생 독립국가들의 용병 사용에 대한 금지 노력은 이들

국가가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층 더 강화되어 1968년부터 유엔은 용병의 사용을 범죄행위라고 인정하며, 용병의 모집과 파견을 금지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¹¹⁾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용병의 활동은 현재도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에 산발적으로 존재해 온 용병집단이 ‘기업화’(corporatization)¹²⁾라는 과정을 거쳐 거대 민간군사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군비감축과 함께 군 인력을 대폭적으로 퇴출시키며, 시장에 무기의 대량 방출을 야기하였다. 이에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분야의 전문 인력들까지 군사시장에 나오면서, 오히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발생한 내전의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¹³⁾ 내전은 주로 신생국가들에게서 나타났는데, 내전을 막기 위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던 이들 국가들은 월등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PMSC와 계약함으로써 그들의 안보를 PMSC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¹⁴⁾ 뿐만 아니라 PMSC의 등장은 국가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대중들은 직

7) 1977년 제네바 협약 제1추가개정서(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추가개정서 I) 제47조 제2항은 용병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
B. 실제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C. 근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한 자 및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충돌당사국을 위하여 그 당사국 군대의 유사한 지위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급된 것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 자
D.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 자
E.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
F.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동복의 군대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띠고 파견되지 아니한 자
관련 자료 <http://www.icrc.org/ihl/INTRO/470> (2014. 07. 28. 최종방문).

8) Peter W. Singer, *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Updated Editio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p. 19.

9) *Ibid.*, p. 17.

10) 협약은 1977년 7월 3일 가봉 리브르빌에서 체결되어 1985년 4월 22일에 발효되었다.
관련 자료 <http://www.icrc.org/ihl/INTRO/485?OpenDocument> (2014. 07. 28. 최종방문).

11) 1968년 결의안 2465(XXIII), 1969년 결의안 2548(XXIV), 1970년 결의안 2708(XXV), 1973년 결의안 3103(XXVIII), 1974년 결의안 3314(XXIX). UN Document, General Assembly, A/RES/37/43 (New York: United Nations, 1982). 관련 자료 <http://www.un.org/documents/ga/res/37/a37r043.htm> (2014. 07. 28. 최종방문).

12) PMSC는 공개적으로 거래하고 경쟁하는 등록된 사업체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상 이익을 동기로 활동하는 기업의 특징을 보인다. 법인이라는 형태는 PMSC의 대중적 홍보를 수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력 채용 방식에서도 과거와 달리 공개 채용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를 통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갖게 되었다(Peter W. Singer, *supra* note 8, pp. 45-47).

13)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1994)에서 냉전종식 후 지난 3년간 벌어진 82건의 무력분쟁 중 79건이 내전이었다는 점과, 특히 내전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UNDP Public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47).

14) 심우찬, “민간군사보안기업의 규제에 관한 소고: Draft UN Convention 중심”, 『인도법 논총』 제32호, 대한적십자사 (2012), p. 58.

접적인 국익이 달려있지 않은 곳에서의 군인들의 희생을 무조건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PMSC으로의 아웃소싱은 대중적 관심과 언론의 노출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정치적 부담 없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 주었다.¹⁵⁾ 또한 국제사회에서 UN이 재정적·구조적 문제로 평화유지군을 축소하면서 발생한 국제적 안보의 공백 발생 등도 PMSC가 성장하고 조직화되는 배경에 한 몫을 하였다.¹⁶⁾¹⁷⁾

오늘날 각국은 핵심안보분야를 제외한 국방분야에 대한 PMSC를 활용한 이른바 안보분야의 아웃소싱(민간위탁)을 통해 공공분야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화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 고유의 특징을 점차 쇠퇴시켜 전통적으로 전쟁과 안보가 국가의 영역이라는 기존의 틀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¹⁸⁾ 나아가 PMSC가 국가

또는 비국가 집단과의 계약을 통해 기업의 이윤창출 영역 안으로 전쟁과 안보의 영역을 편입하면서 나타난 인권침해의 문제를 과연 현재의 국제법 체제 안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2. PMSC의 인권문제

PMSC가 무력분쟁 지역이나 또는 분쟁 후 상황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나타난 일련의 인권유린 행위들과 무력에 관한 국제법 위반 문제들은 오늘날 PMSC의 활동에 대한 규범적인 검토와 논의를 이끌고 있다. 특히 군사와 안보 기능의 아웃소싱은 무력사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 상실이라는 내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PMSC의 활동이 전략적 군사역량의 기능뿐만 아니라,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정보수집부터 포로 심문 등의 역할수행까지 맡으면서 불법적인 범죄 또는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PMSC의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 수용소에서 발생한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 구타, 강간, 성적 학대 등 비인간적인 포로학대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고문은 주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미군 병사들 외에 PMSC 직원들도 함께 용의자로 지명되어 있었다.¹⁹⁾ 하지만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인권침해에 연루된 PMSC 직원들은 당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고,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²⁰⁾²¹⁾ 2007년 이라크의 수

- 15) 조한승, “민간군사기업의 전쟁 외주(外注)가 전쟁 양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제55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2012년), p. 41.
- 16) 유엔이 분쟁 해결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첫째, 회원국들이 유엔의 운영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와 둘째, 분쟁지역을 감독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셋째, 각 국가들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소집하고 배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오늘날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데 큰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Peter W. Singer, *supra* note 8, pp. 59-60).
- 17) 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투입되는 평화유지군에 대한 예산 규모를 계속 감축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유엔이 사용하는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화유지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을(2011년) 80억 달러에서(2012년) 70억 달러로 대폭 삭감하였다. 이는 분쟁지역에서 유엔의 활동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자료 <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20208/DEFREG02/302080013/U-N-Aims-Major-Cut-Peacekeeping-Bill?odyssey=tab|topnews|text|FRONTPAGE> (2014. 07. 28. 최종방문).
- 18) 영국은 1991년 정부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품질을 위한 경쟁’(Competing for Quality)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주요 내용은 모든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필요하다면 해당 업무를 아웃소싱(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비용절감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민간위탁의 비용을 비교한 후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아웃소싱을 의무화하는 ‘시장성 평

가’(Market-Testing)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약 60%에 달하는 분야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도입비율을 보면 국방부가 전체 업무의 32%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부 13%, 국세청 11%, 내무부 7% 순으로 나타난다. 국방 업무는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시장 원리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을 아웃소싱하고 있다(남기찬·KMAC, 『창조적 아웃소싱』(서울: 교보문고, 2007), pp. 187-188).

- 19) Major General Antonio M. Taguba, *Article 15-6 Investigation of The 800th Military Police Brigade* (USA Government, 2004), p. 17.
- 20) 지난 6월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도 바그다드(Baghdad)에서 일어난 미국 사설보안 업체인 Black Water(현 'Academi') 직원들이 이라크 민간인을 무차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은 PMSC의 민간인 유혈 사태 개입 우려를 현실화시킨 사건이었다(일명 '니스르 광장 학살사건'). 당시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들의 차량을 경호하던 블랙워터는 이들을 안전지대로 수송하는 작전 과정에서 이라크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해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 17명이 죽었다. 블랙워터는 총격을 받아 이에 따른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지 목격자 다수는 블랙워터가 교차로에서 차량 흐름을 차단하려고 일방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으로 블랙워터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사업면허를 취소당했으나, 이후에도 블랙워터는 미국 국무부와 계약에 따라 계속 이라크에서 활동을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²²⁾²³⁾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학대를 당했던 당시 이라크인 4명이 수용소 관리를 맡았던 민간계약업체인 CACI인터네셔널을 상대로 낸 소송(하급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해당 사건의 진행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4명의 이라크인은 2011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법원에 미국의 '불법행위에 따른 외국인의 청구권법'(Alien Tort Claims Act: ATCA)을 근거로 수용소에서의 고문과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ATCA를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문을 포함한 국제법의 위반행위들은 ATCA 관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소송제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관련 자료 <http://cjrjustice.org/ourcases/current-cases/al-shimari-v-caci-et-al> (2014. 07. 28. 최종방문).

- 21) 아부 그라이브 수감소 피해자들은 2008년 CACI인터네셔널과 L-3서비스(이전의 Titan Corp.)를 상대로 메릴랜드, 오하이오, 워싱턴 등의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L-3서비스는 이라크에서 미군에게 통역원을 제공하던 용역업체로, 아부 그라이브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에 L-3서비스 직원들이 관여한 사실과 이 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이 밝혀져 피해자들에게 제소 당하였다. 이후 2012년 11월 L-3서비스가 아부 그라이브 수감자 70여명에게 528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재판은 종료되었다.
관련 자료 <http://www.cbsnews.com/news/us-contractor-to-pay-528-million-to-abu-ghraib-prisoners> (2014. 07. 28. 최종방문).
- 22) UN Documen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반면, PMSC에 소속된 직원들 역시 인권침해의 피해자일 수 있다.²⁴⁾ 그들은 PMSC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권리 중에는 그들과 계약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2004년 3월 이라크 팔루자(Fallujah)에서 4명의 미국인들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사건이 찍힌 영상은 전 세계 뉴스에 방영이 되었는데, 팔루자 주민들은 미국인들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 검게 탄 미국인 시신을 끌어내린 후 시신을 훼손하고, 사지가 떨어져 나간 시신을 다리의 난간에 매단 모습이 담겨 있었다. 팔루자에서 살해된 민간인은 모두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던 블랙워터의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미군기지에 보급되는 병참물자를 안전하게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당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장비의 지급 없이 위험한 지역에 투입되었다는 것이 이후 밝혀졌다.²⁵⁾²⁶⁾ 팔루자 사건에서 사망한 블랙워

A/HRC/15/25/Add.3 (New York: United Nations, 2010), p. 29.

- 23) 블랙워터 사건은 2008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미국 검찰의 기소가 있었지만, 2009년 공소가 기각되었으며, 2011년 다시 기소가 있었지만, 증거부족과 절차상 오류 등으로 공소는 다시 기각되었다. 2013년 10월 과실치사 공소시효의 만료 때문에 미국 검찰은 새로 기소를 청구하였고, 2014년 5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일급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였다. 현재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일급살인 혐의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자료 <http://www.wsws.org/en/articles/2014/06/28/blck-j28.html> (2014. 07. 28. 최종방문).
- 24) 용병 사용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의 호세 고메즈 델 프라도(José L. Gómez del Prado)는 PMSC가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협하고 취약한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PMSC의 직원들 역시 인권침해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José L. Gómez del Prado, *Why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Should be Regulated*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2010), p. 2).
- 25) 관련 자료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1/01/25/AR2011012507031.html> (2014. 07. 28. 최종방문).
- 26)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PMSC 소속 민간인 중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1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2007년 7월 기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57,000명의 미군 규모와 비슷한 130,000명에 가까운 PMSC의 직원들과 대략 300개 정도의 PMSC가 이라크

터 직원들의 가족들은 2005년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지방법원에 블랙워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블랙워터는 모든 소송을 금지하는 당시 블랙워터 직원들이 작성한 계약 조항의 위반을 주장하며 2006년 맞소송을 제기하였다.²⁷⁾

이와 같은 PMSC의 인권침해의 문제들은 단순히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불행한 사건들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PMSC라는 비국가 행위자를 통해 인권침해의 대상과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PMSC 활동을 현재의 어떠한 국제적 통제기제 아래에서 다루야 할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PMSC 관련 논쟁들이 이어지면서 공통된 인식으로 모아진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날 PMSC에 대한 감시와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III. 인권보호를 위한 PMSC 규제

1. 국제인도법을 통한 규제

국제인도법은 용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PMSC의 직원을 단순히 용병으로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늘날 PMSC가 제공하는 기능, 즉 PMSC가 수행하는 업무 분야는 다양하다. 전투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군사력 제공뿐만 아니라 병참지원, 기술지원, 부대시설 건설 등과 같은 비

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자료 <http://www.reuters.com/article/2007/07/03/us-usa-iraq-contractors-idUSN0318650320070703> (2014. 07. 28. 최종방문).

27) 2011년 1월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후 가족들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2년 1월 블랙워터의 합의 제안으로 제4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소송을 종결시켰다. 관련 자료 http://www.boston.com/news/nation/articles/2012/01/06/blackwater_suit_ends_7_years_after_fallujah_deaths (2014. 07. 28. 최종방문).

전투수행의 용역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MSC에 고용되어 활동하는 직원에 대한 법적 지위의 구별이 쉽지 않다.²⁸⁾ 결국 PMSC와 직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 국제인도법 협약과 PMSC의 특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에 따른 PMSC 규제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제네바 협약 제1추가협약의정서

제네바 협약 제1추가협약의정서(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추가협약의정서 I) 제47조 제1항은 용병에게 전투원 또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즉, 전투원으로서 무력충돌 시 합법적인 교전자의 자격이 주어지거나, 포로로서 보호될 수 있는 지위를 향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용병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용병은 불법적인 무력사용자로서 그들을 체포한 국가의 국내법상 반란죄의 범죄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²⁹⁾

제1추가협약의정서 제47조 제2항 A호는 용병의 자격 요건으로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49조 제1항은 “공격”이라 함은 공세나 수세를 불문하고 적대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추가협약의정서 제47조 제2항 C호는 “근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 자”라고 규정하며, D호와 E호에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며,

28) PMSC는 활동영역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인 전투력을 제공하여 전투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군사력 공급 기업’(Military Provider Firms), 군대 또는 경찰병력에 대한 훈련과 군사전략과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군사 자문 기업’(Military Consultant Firms), 병참 및 군수지원, 부대 시설 건설 등 필수 군사적 영역의 후방지원이나 보조적·기능적 용역을 제공하는 ‘군사 지원 기업’(Military Support Firms), 시설과 물자 호송 및 인물 경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보안용역 제공 기업’(Security Service Firm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심우찬, *supra* note 14, pp. 61-62).

29) 김희동, “국제법상 민간군사기업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회 (2009), p. 75.

분쟁당사국의 군대 구성원이 아닌 자를 용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1추가협정에 담긴 용병에 관한 규정은 오늘날 PMSC의 특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력분쟁 지역에서 직접적인 전투역량을 제공하고 있는 PMSC의 활동은 불법적인 무력사용자로서 국제인도법으로 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1추가협정 제47조 제2항 B호의 경우 “실제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자”로 적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추가협정에 관한 ICRC 해설서(Commentary on the Additional Protocols of 8 June 1977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는 ‘적대행위’에 대해 “그 성격과 목적상 군대(armed forces)의 인원과 장비에 실제로 위해(actual harm)를 야기할 것을 의도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⁰⁾ 이에 덧붙여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이란 “그 성격과 목적상 적군(enemy armed forces)의 인원과 장비에 실제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전투행위(acts of war)”라고 기술하고 있다³¹⁾ 결국 제1추가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병은 실제 전투지역에서 적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용병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덧붙여 ICRC 해설서는 “금전적인 이익이 동기가 되어 가담한 외국인 군사고문과 군사기술자는 제47조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전문가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전투원도 용병도 아닌 전투에 가담하지 않는 민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²⁾ PMSC의 활동이 직접적인 전투행위 참여 외에도 병참 및 군수지원, 부대 시설 건설 등의 비전투적 행위와 군사기술과 군사 전략 구성 등에 대한 기술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PMSC를 제1추가협정의 제4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적인 무력사용 주체인 용병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³³⁾

ICRC는 2009년 발행한 ‘직접적 적대행위 가담에 관한 국제인도법상 해석지침’(Interpretive guidance on the notion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이하 “적대행위 해석지침”이라 함)에서 ‘사설 기업체 및 민간고용원’(Private Contractors and Civilian Employees)이라는 주제로 국제인도법상 PMSC 지위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있다. 적대행위 해석지침은 PMSC의 직원에 대해 “이들 대다수는 국가 정규 군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무력충돌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은 이들을 민간인으로 정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³⁴⁾ 다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민간인 신분은 유지되지 적대행위에 가담하는 동안 직접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과 “정식적 절차를 통해 또는 사실상 지속적인 전투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무력충돌 당사자 군대에 완전히 편입된 PMSC와 그 직원은 더 이상 민간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점을 단서적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⁵⁾ 종합해 보면, 제1추가협정에 따른 PMSC와 직원에 대한 용병의 판단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그 지위를 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쟁 지역에서 PMSC의 활동영역을 그들이 제공하는 기

30) ICRC Publications, *Commentary on the Additional Protocols of 8 June 1977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Geneva: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87), p. 618.

31) *Ibid.*, p. 619.

32) *Ibid.*, p. 579.

33) ICRC는 제1추가협정 제47조의 용병에 대한 규정이 모든 PMSC의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PMSC의 직원이 정규군대에 편입되거나 충돌당사국에 속하는 무장그룹 또는 부대의 구성원으로 전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원칙적으로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자료 <https://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faq/pm-sc-faq-150908.htm> (2014. 07. 28. 최종방문).

34) ICRC Publications, *Interpretive Guidance on the Notion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eva: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09), p. 38.

35) *Ibid.*, p. 39.

능적인 역할들로 분리해서 각 사안별로 판단할 경우, 성격과 목적상 적대행위의 직접 가담으로 볼 수 있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PMSC와 직원에 대해서는 용병을 금지하고 있는 기존의 국제인도법을 통한 규제의 수단성도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상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2) 제네바 협약 제2추가의정서

제네바 협약 제2추가의정서(비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II) 제1조 제1항은 본 의정서의 적용 범위를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군대 및 책임 있는 지휘 하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치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본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토의 일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반란군대 또는 다른 조직된 무장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제2추가의정서에서 ‘군대’의 정의가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와 달리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정규군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CRC는 적대행위 해석지침에서 제2추가의정서 제1조 제1항의 체결당사국의 군대라는 개념을 경호대, 세관, 경찰처럼 사실상 군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장단체 혹은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지휘계통 하에 조직된 부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⁶⁾ 이는 PMSC가 군사시설과 물자를 경비하고 전투수행 지역에서 주요 정부 관리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PMSC와 계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비국가 무력충돌 당사자를 위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결국 PMSC 직원들은 제2추가의정서의 기본권의 보장 및 주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당사자로 그 규제의 가능성을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ICRC는 PMSC가 무력충돌 당사자로 적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는다면 국가 정규군의 구성원도 아니면서 무장단체의 구성원도 아닌 민간인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직접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⁷⁾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다는 개념이 제1, 제2추가의정서에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2추가의정서 역시 PMSC가 수행하는 기능적인 역할들로 분리해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PMSC 규제의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발적 규제

1) 몽트뢰 문서

국제인도법의 PMSC의 활동을 규제의 한계와 PMSC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법적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와 ICRC는 2008년 공동발의로 ‘무력분쟁 기간 중 민간군사보안기업에 관한 국가의 적절한 국제적 의무와 모범 사례에 관한 몽트뢰 문서’(Montreux Document on pertinent international obligation & good practices for States related to operations of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during armed conflict, 이하 “몽트뢰 문서”이라 함)를 채택하였다. 몽트뢰 문서는 PMSC에 대한 국제규범의 직접적인 규제의 불비 상태에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존중을 요구하도록 PMSC의 국제적 의무를 정리한 국제사회 최초의 문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³⁸⁾

몽트뢰 문서는 2개의 부분(Par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계약국가(PMSC와 계약을 체결한 국가), 영토국가(PMSC가 활동하는 지역의 국가), 국적국가(PMSC가 설립 등록되어 있는 국가), 기타 모든 국가(자국민이 PMSC에 고용된) 및 PMSC와 그 직원,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기

37) *Ibid.*, p. 40.

38) 관련 자료 <http://www.eda.admin.ch/eda/de/home/topics/intlaw/humlaw/pse/psechi.html> (2014. 07. 28. 최종방문).

36) *Ibid.*, p. 30.

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준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PMSC 규제에 대한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몽트뢰 문서는 계약국가, 영토국가, 국적국가 등에게 PMSC와 직원에 대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그리고 기타 국제법의 의무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각 국가는 그에 대한 행정적·사법적인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³⁹⁾ 특히 PMSC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국가에 대해서 PMSC와 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배상 및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책임을 언급하고 있으며,⁴⁰⁾ 나아가 PMSC와 직원에게 국제인도법과 인권법뿐만 아니라 형법, 노동법, 세법, 이민법 등과 같은 각 국가의 국내법 역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PMSC의 지위에 대해서는 PMSC 기능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국제인도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PMSC와 직원이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민간인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⁴¹⁾

몽트뢰 문서는 PMSC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국제문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문서의 목적이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PMSC의 국제적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제법을 정리한 문서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⁴²⁾ 결국 몽트뢰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서 PMSC 규제의 충분한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ICoC 국제행동강령

오늘날 PMSC는 분쟁지역에서 직·간접적인 군사

역량의 제공뿐만 아니라 군사시설과 주요 인원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는 보안 기능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⁴³⁾ 보안 용역을 제공하는 PMSC 역할이 국제무대에서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준수를 위해 2010년 스위스 정부와 민간보안업체,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민간보안용역 제공업체에 대한 국제행동강령’(Intra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Provider, 이하 “ICoC”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ICoC는 총 8개 조문, 7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에 기초한 자발적 행동원칙과 표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검증과 감독을 통해 민간보안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들로 규정되어 있다.⁴⁴⁾

ICoC는 PMSC가 제공하는 보안 용역(Security Service)에 대한 정의를 “무장 또는 비무장에 관계 없이 시설, 지정된 구역, 재산과 기타 장소 그리고 인원 등을 보호하거나 호송하는 활동과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기의 휴대 또는 운영이 필요한 모든 활동”이라고 서술하고 있다.⁴⁵⁾ 특히 ICoC는 PMSC 직원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력의 사용은 엄격하게 필요한 상황과 위협에 비례하게 이용해야 하며, 무력과 무기 사용에 관한 국내법과 파견국 법령 및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⁶⁾ 나아가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성적 착취 및 학대나 성폭력의 금지, 인

39) ICRC Publications, *The Montreux Document on pertinent international obligation & good practices for States related to operations of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during armed conflict* (Geneva: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08), pp. 11-13.

40) *Ibid.*, p. 12.

41) *Ibid.*, p. 14.

42) *Ibid.*, p. 5.

43) 분쟁지역에서 민간군사기업(PMC)과 민간보안기업(PSC)의 기능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PMSC가 담당하고 있는 군사시설, 인원 또는 장비에 대해 적이 공격을 가하여 적군과 교전행위를 하게 될 경우는 통상의 보안행위에 머물기 보다는 군사상의 방어 작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회동, *supra* note 29, p. 87).

44) 관련 자료 http://www.icoc-psp.org/About_ICoC.html (2014. 07. 28. 최종방문).

45) ICOC-PSP Publications,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Providers* (Swiss Government, 2010), p. 5.

46) *Ibid.*, p. 8.

신매매의 금지, 노예제 및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차별의 금지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ICoC는 관련 국제법 또는 국내법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문서라는 것과 ICoC 자체는 아무런 법적 의무와 법적 책임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⁴⁸⁾ 따라서 ICoC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형식의 선언적 문서로의 제한된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유엔(UN) 차원의 규제

1) 유엔 용병 협약

유엔은 분쟁지역에서 사적 행위자들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자,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으로 1980년 12월 결의안 35/48에 의해 ‘용병의 모집, 사용, 자금 조달, 훈련 등에 관한 국제협약’(Drafting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cruitment, Use, Financing and Training of Mercenaries, 이하 “유엔 용병 협약”이라 함)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유엔 용병 협약 초안을 작성하여 이후 1989년 12월 총회 결의안 43/44로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협약은 2001년 10월 20일에 발효되었다.⁴⁹⁾ 유엔 용병 협약은 제1조에서 ‘용병’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47조상의 ‘용병’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⁵⁰⁾ 하지만 당시 유엔 용병 협약은 용병에 대한 정의와 용병의 모집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을 뿐, PMSC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지 못하였다.

2) PMSC 규제 협약안

유엔은 PMSC에게 강화된 국제적 차원의 통제를 위한 추가적인 협약을 만들기 위해 2005년 7월 ‘인권침해와 자결권 행사의 방해 수단으로서 용병 사용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을 설치한다. 그리고 2009년 3월 마침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침해와 자결권 행사의 방해 수단으로서 용병의 사용’(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⁵¹⁾ 이후 2010년 10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 15/26을 통해 용병 사용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이 제안한 ‘PMSC 규제 협약안’(Draft Convention on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협약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PMSC 규제 협약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개방형 정부 간 실무그룹 회의가 현재 지속되고 있다.

PMSC 규제 협약안은 총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⁵²⁾ 주요 조문들을 살펴보면, 협약의 목적(Article 1), 적용범위(Article 3)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부 일반조항과,⁵³⁾ PMSC에 대한 국가책임(Article 4), 법의 지배원칙(Article 5), 국가주권의 존중(Article

47) *Ibid.*, pp. 9-10.

48) *Ibid.*, p. 6.

49) United Nations Document,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cruitment, Use, Financing and Training of Mercenaries*, A/RES/44/34, General Assembly Forty-fourth Session (New York: United Nations, 1989).

50) 단지, 제1추가의정서 제47조 제2항 B호 ‘실제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조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용병의 정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51) United Nations Document,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A/HRC/RES/10/11 (New York: United Nations, 2009).

52) United Nations Documen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A/HRC/15/25 (New York: United Nations, 2010).

53) *Ibid.*, pp. 23-26.

6),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에 대한 존중과 보호(Article 7), 허용되지 않는 무력사용의 금지(Article 8), 국가의 고유기능에 대한 민간위탁의 금지(Article 9), 특정 무기사용의 민간위탁 금지(Article 10), 총기 및 탄약의 불법취득 및 소유, 밀매 금지(Article 11)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2부 일반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⁵⁴⁾

주목해서 볼 부분은 제3부와 제4부의 내용이다. 법적 규제, 감독, 감시를 규정하고 있는 제3부 주요 내용으로 각 당사국에게 PMSC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확립(Article 12), PMSC의 규제와 감독에 대한 국내법령 제정(Article 13), PMSC에 대한 인허가 제도의 운영(Article 14), PMSC의 등록에 대한 각 당사국의 책임 있는 조치의 확립(Article 16)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민사·행정적 제재의 부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의 마련을 다루고 있는 제4부 주요 내용으로는 PMSC의 범죄, 민사·행정적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Article 19), PMSC에 대한 양벌규정 제정(Article 20), PMSC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할권의 확립(Article 21), 형사소추에 관한 의무(Article 23), 피해자의 재화를 위한 국제기금의 마련(Article 28) 등을 규정하고 있다.⁵⁵⁾ 또한 제5부 국제 감시 및 감독으로 PMSCs에 대한 규제·감시·감독에 관한 국제위원회의 설치(Article 29), PMSCs의 국제위원회 등록(Article 30), PMSCs에 대한 체약국의 보고(Article 31), 체약국 보고에 대한 국제위원회의 검토(Article 32),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국제위원회의 조사(Article 34), 협약 위반에 관한 고발(Article 34) 등의 규정들 역시 PMSC의 인권책임 강화를 위한 규범체계를 제공하고 있다.⁵⁶⁾ 이는 PMSC 규제와 관련된 기존의 여타 국제 문서들이 담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로 특히, 협약의 체약국들에게 PMSC에 대한 규제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

를 가지고 있다.

IV. PMSC 통제의 역할과 과제

1. 제도적 협력

지금까지 PMSC 규제에 관한 논의들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는, 국제인도법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과 두 번째는, 자발적 규율이라는 규제의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입법을 통한 규제라는 가능성이다. 오늘날 PMSC 행위의 대부분이 무력분쟁 지역이라는 점은 국제인도법의 규정상의 의무가 PMSC에게도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반면 PMSC의 법적 지위는 민간기업이라는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사적 자치 조직으로서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외적 통제와 감시라는 규제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PMSC 스스로의 자발적 규율을 통한 내적 통제와 감시의 기능 역시 필요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PMSC의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의 형태 역시 필요하다.

몽트뢰 문서와 ICoC는 자발적 규제수단으로 국가와 PMSC 모두에게 인권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용병 협약과 PMSC 규제 협약안은 조약으로서 체약국에게 강제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제수단과 나아가 국내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감시와 보상 등의 목적 수행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국제적 무력충돌 지역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지역에서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 역시 PMSC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결국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현재 형성과정에 있는 PMSC 관련 통제 기제들이 가진 각각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PMSC 문제들을

54) *Ibid.*, pp. 26-30.

55) *Ibid.*, pp. 35-39.

56) *Ibid.*, pp. 40-47.

다양하게 포섭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 제도들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볼 것이다.⁵⁷⁾

2. 다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PMSC 활동과 관련된 국가는 PMSC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계약국가, PMSC가 활동하는 지역의 영토국가, PMSC가 설립 등록되어 있는 국적국가, 그리고 자국민이 PMSC에 고용된 파견국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PMSC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만큼이나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수반한다. 결국 효과적으로 PMSC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PMSC의 고용국 또는 사용국 그리고 파견국들 모두에게 합의된 다자적 통제체계의 수립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보편적 인권에 기반을 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그 실행력이 담보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PMSC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부분에서 통일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현재 유엔의 작업은 그러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아직까지 PMSC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점은 있다. 하지만 PMSC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국내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과 오늘날 PMSC에 의한 인권침해가 국제적인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점은 이의 해결을 위한 다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⁵⁸⁾

57) 실제로 PMSC 규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국제 문서들은 기존에 이미 구축된 PMSC 관련 규범들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또는 수용 가능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다.

58) 유엔 인권이사회는 PMSC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PMS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United Nations Document,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laborating an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on the regulation, monitoring and oversight of the activities of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on its second session, A/HRC/22/41 (New York:

V. 결론

오늘날 이른바 군사 및 안보분야의 아웃소싱(민간 위탁)으로 등장한 PMSC는 분쟁지역에서 직접적인 교전뿐만 아니라 첩보활동, 병참지원, 군사훈련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용역의 수행을 통해 무력충돌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정식 전투원이 아닌 민간기업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 이들의 국제법상 신분에 대한 확립된 개념은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PMSC에 의한 인권 침해의 잠재성은 언제나 현존하는 위협이었으며, 이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점차 커져 갔다. 이들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존재하였지만, 기존 규범체계의 공백 뒤에 가려져 그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현재 PMSC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PMSC의 불법적인 범죄행위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침해에 대한 그 통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어떠한 통제기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합의를 이끌어 못하고 있다. 특히 PMSC에 대한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이러한 합의 도출 실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PMSC 통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형성과정에 있으며, 특히 PMSC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PMSC 규율의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방법을 찾아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숙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PMSC 관련 국내법령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내에도 이미 해외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PMSC가 설립 등록이 되어 있으며, 민간군수산업과 민간보안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

United Nations, 2012), p. 17).

직까지 국내에서 PMSC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낮은 이유로 관련 정책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PMSC 관련 국제적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PMSC 규제 협약안이 발효가 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국내

PMSC에 대한 인권기준을 위해 어떠한 입법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국내적 인권기준을 국제적 규범과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실무진 차원의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PMSC에 대한 국내적 관심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UN 총회 문서

I. 제68차 유엔총회 주요 결의(III)

- 제68차 유엔총회 회기 중 2014년 6월에서 8월 까지 채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¹⁾
- 아브하즈 자치공화국, 그루지야, 츠хин발리 지역/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 출신의 국내유민과 난민의 지위 결의
- 유엔 범세계대테러전략 검토 결의
- 평화유지활동의 모든 측면의 전반적 문제에 관한 종합 검토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아브하즈 자치공화국, 그루지야, 츠хин발리 지역/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 출신의 국내유민과 난민의 지위 결의(Statu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refugees from Abkhazia, Georgia, and the Tskhinvali region/South Ossetia, Georgia, A/RES/68/274)

유엔총회는 2014년 6월 5일자 결의에서, 인종에 상관없이, 아브하즈 자치공화국과 츠хин발리 지역/남오세티아를 포함한 그루지야 도처의 국내유민과 난

1) 2014년 8월 현재, 제68차 유엔총회는 총 303건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http://www.un.org/depts/dhl/resguide/r68_en.shtml 참조.

민 및 그들 자손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음을 승인하였다. 또한 그루지야에서 분쟁의 영향을 받은 국내유민과 난민의 재산권을 준수하고, 이러한 권리를 위반하여 재산을 취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엔총회는 그루지야 도처의 분쟁의 모든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내유민, 난민과 기타 개인을 위해 방해 받지 않는 인도적 활동의 접근에 대한 긴급한 필요를 분명히 표명하였다. 또한 제네바 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신외 구축 조치를 증대시키며, 인권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며, 모든 국내유민과 난민을 자신의 원적지(place of origin)로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위엄 있게 어떠한 제약 없이 송환하기에 유리한 보안 태세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유엔 범세계대테러전략 검토 결의(The 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Review, A/RES/68/276)

유엔총회는 2014년 6월 13일자 결의에서, 사람, 장소, 목적을 불문하고 자행되는 테러리즘의 모든 유형과 징후를 강력하고도 명백히 비난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의 대상인 유엔 범세계대테러전략과 4개의 기둥을 재확인하고, 회원국과 유엔 및 기타 적절한 국제, 지역 및 소지역기구로 하여금 모든 측면에 있어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관련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

다. 유엔총회는 테러가 군대, 법집행조치 및 정보군의 활동만으로는 결코 퇴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테러의 증가와 관련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다 강력한 노력을 통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에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이용되는 조치나 수단이 유엔헌장,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특히 비차별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모든 국가들이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완전히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환기하였다.

3. 평화유지활동의 모든 측면의 전반적 문제에 관한 종합 검토 결의(Comprehensive review of the whole ques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in all their aspects, A/RES/68/277)

유엔총회는 2014년 6월 16일자 결의에서,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들, 사무국 및 관련 기관에 특별위원회의 제안, 권고 및 결론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수년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향후 3년간 옵서버로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국들은 특별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특별위원회 다음 회기에 회원이 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유엔총회는 특별위원회가 그 위임사항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의 모든 측면의 전반적 문제에 관한 종합 검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이전의 제안에 관한 이행 상황을 검토하며, 해당 분야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유엔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제안을 고려하도록 결정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I.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주요 결의

- 2014년 6월에서 8월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¹⁾
- 말리 관련 결의
- 유엔 평화유지활동 결의
- 키프로스 관련 결의
- 이라크 관련 결의
- 테러행위에 의해 야기된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말리 관련 결의(Mali, S/RES/2164 (2014))

유엔안보리는 2014년 6월 25일자 결의에서, 말리 공화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와가두구 예비협정(Ouagadougou Preliminary Agreement)에 서명하고 가입한 무장집단과 말리 당국이 동 협정상 약속을 준수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리의 주권, 통일 및 영토보존을 준수하는 가운데, 말리의 당사자들이 신뢰할 만하고 포괄적인 협상 과정에 지체 없이 신의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1) 2014년 8월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총 43건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http://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2014.shtml> 참조.

또한 말리의 모든 무장집단으로 하여금 무기를 버리고, 즉각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폭력에의 호소를 거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모든 무장집단이 포괄적인 평화 합의의 맥락상, 효과적인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사회재통합 과정(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process)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로서, 말리의 유엔 다차원적 통합안정화 작전(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Mali, 이하 'MINUSMA')이 지원하고 감독하는 주둔지 관련 절차를 재개하도록 요청하였다. 유엔안보리는 2015년 6월 30일까지 1,440명의 경찰 인력을 포함하여 최대 11,200명의 군인 병력 하에서 MINUSMA의 임무를 확대하도록 결정하였으며, MINUSMA에 안보, 안정화 및 민간인 보호와 같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에게 MINUSMA가 새로운 군대에서 가능한 빨리 자신의 완전한 작전 능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에 적절한 역량과 장비를 갖춘 군대와 경찰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안보리는 모든 당사국들에 인도적 활동 인력, 시설 및 구호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유엔 평화유지활동 결의(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S/RES/2167(2014))

유엔안보리는 2014년 7월 28일자 결의에서, 평화

유지활동과 평화구축활동의 임무를 고려하는 가운데, 유엔헌장 제8장에 따라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하는 관련 지역 및 소지역기구 및 협정과 파트너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안보리, 군대나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국가 및 사무국 사이의 삼자 협력을 포함하여, 군대나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국가와의 협력과 협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유엔안보리는 조기 경보, 분쟁예방,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의 분야에서 유엔과 지역 및 소지역기구 사이의 보다 밀접하고 조직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관성, 시너지효과, 집단적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유엔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및 EU 사이의 협력에 관한 최근의 발전에 대해 환영하며, 안보리 위임사항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는 지역기구 재정의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유연성을 증대시킬 필요를 강조하였다.

3. 키프로스 관련 결의(Cyprus, S/RES/2168 (2014))

유엔안보리는 2014년 7월 30일자 결의에서, 키프로스의 분쟁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협상 진척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며 아직 종합적이고 지속할만한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므로, 그리스계 키프로스와 터키계 키프로스 양측이 핵심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진척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토론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1년 안보리결의 2026을 상기하며 양측의 지도자들이 핵심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을 다하고, 키프로스인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와의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며, 협상의 대중적 분위기를 개선하며, 적절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안보리는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며, 합의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 수락할만한

조치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고대하였다. 또한 양측에 긴급한 문제로서 완충지대의 경계와 관련하여 유엔 키프로스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이하 'UNFICYP')의 임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UNFICYP와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이라크 관련 결의(Iraq, S/RES/2169 (2014))

유엔안보리는 2014년 7월 30일자 결의에서, 2015년 7월 31일까지 유엔이라크지원단(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Iraq, 이하 'UNAMI')의 임무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사무총장 특별대표와 UNAMI가 이라크정부의 요청으로 2013년 결의 2110에 규정된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을 추가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라크 국민의 이익을 위해 UNAMI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직원의 안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라크정부에 이라크에 소재하고 있는 유엔에 안전 및 병참지원을 계속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안보리는 UNAMI의 임무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병참과 보안 인력 및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들의 공헌을 환영하며, 회원국들로 하여금 UNAMI에 충분한 인력과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5. 테러행위에 의해 야기된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 결의(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errorist acts, S/RES/2170(2014))

유엔안보리는 2014년 8월 15일자 결의에서,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 이하 'ISIL')의 테러행위와 ISIL의 폭력적인 극단적 이데올로기 및 ISIL의 계속되는 중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남용과 국제인도법 위반을 강력한 어조로 개탄하고 비난하였다. 또한 ISIL, 알누

스라 전선(AI Nusrat Front, 이하 'ANF'), 기타 알카에다와 관련된 모든 개인, 그룹, 기업 및 단체로 하여금 모든 폭력과 테러행위를 중단하며, 즉각 무장 해제하고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안보리는 2001년 결의 1373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모든 국가들에 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조직하며 지원하는 ISIL과 ANF를 포함한 알카에다와 관련된 개인, 그룹, 기업 및 단체를 찾아내어 법정에 세우기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테러행위에 대한 재정지원을 삼가고 억제하도록 결정한 2001년 결의 1373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 영토 내에서 자국민 또는 기타 개인에 의해 어떠한 기금, 재정적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이 직간접적으로 ISIL, ANF, 알카에다와 관련된 기타 개인, 그룹, 기업 및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없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2014년 결의 2161의 결정을 환기시켰다.

UN 인권이사회 문서

I. 유엔인권이사회 주요 결의

- 2014년 6월에서 8월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거나 작성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¹⁾
- 인권과 관련한 다국적기업과 기타 기업에 대한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문건의 작성 결의
- 인터넷상 인권의 증진, 보호 및 향유 결의
- 이주노동자의 인권 결의
-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

II. 주요 결의의 내용

1. **인권과 관련한 다국적기업과 기타 기업에 대한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문건의 작성 결의(Elabor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A/HRC/RES/26/9)**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에 찬성 20, 반대 14, 기권 13의 표결로 채택된 결의에서, 인권과

1)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기(2014.6.10~6.27)에서 결의 총 32건, 결정 총 16건이 채택되었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6/Pages/ResDecStat.aspx> 참조.

관련한 다국적기업과 기타 기업에 대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건에 관한 개방적 성격의 정부간 실무반을 설치하여, 국제인권법상 다국적기업과 기타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해당 정부간 실무반의 의장 겸 특별보고관은 제1, 2회기에서 나온 토론을 검토하여, 제3회기 시작시 실질적 협상을 위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의 초안을 기초하도록 결정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해당 정부간 실무반의 첫 번째 모임에서 국가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문건의 가능할만한 원칙, 범위와 요건에 관해 서면 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위 실무반이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실무반에 독립적인 전문가와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위 실무반 업무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인터넷상 인권의 증진, 보호 및 향유 결의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A/HRC/RES/26/13)**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에 투표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오프라인에서 갖는 권리, 특히 유엔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각 제19조에 따라 국경 없이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향한

전진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개방적 성격을 인정하고, 모든 국가들에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국제적 협력을 개선하고 원활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들에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기타 온라인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인권의 무에 따라 인터넷상 보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들에 투명한 여러 이해관계자 절차를 거쳐,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한 성격을 확인하고, 그 중심에 인권의 보편적 접근과 향유의 목적을 가진 국내의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3. 이주노동자의 인권 결의(Human rights of migrants: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HRC/RES/26/19)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에 투표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특별보고관은 이주노동자 인권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거스르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고, 모든 관련된 출처를 통해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하며, 이주노동자 인권의 위반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권고를 내리며, 관련 국제규범과 기준의 효과적 적용을 증진시키며, 이주노동자 인권 위반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적용가능한 행동과 조치를 권고하며, 정기적으로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이주노동자 인권을 개

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관련 인권조약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에 업무 수행의 일부인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이주노동자 인권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양자, 지역 및 국제적 계획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들에 특별보고관의 업무와 의무 수행에 있어 온전히 협력할 것을 고무하였다.

4.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A/HRC/RES/26/27)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7일에 투표 없이 채택된 결의에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인권의 효과적 향유에 광범위한 직간접적 효력을 미칠 수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리, 빈곤, 성별, 나이, 원주민 또는 소수자 또는 장애를 이유로 이미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과 공동체가 가장 극심하게 체감하게 될 것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모두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결과는 국가의 인권 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를 강조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과 기후변화의 관련성 분석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들에 특히 개도국,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및 아프리카국가의 개발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악영향과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 증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현 결의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인권과 기후변화에 관한 특정주제에 대한 토론을 제28차 회의의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실로 하여금 인권이사회에 권고를 포함한 후속조치 행동의 검토를 담은 약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UN 사무총장 보고서

I. 유엔사무총장 주요 보고서

- 2014년 6월에서 8월까지 유엔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제출한 국제법 관련 주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¹⁾
- 집단적 책임 완수에 관한 보고서
- 유엔 라이베리아 임무단에 관한 사무총장의 제28차 진행보고서

II. 주요 보고서의 내용

1. 집단적 책임 완수에 관한 보고서(Fulfilling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S/2014/449)

유엔사무총장은 2014년 7월 11일자 보고서에서,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 국내, 지역 및 국제행위자들이 국가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의 결과문서의 제138항부터 제140항에 규정된 국가들의 승인에 따라, 총회 결의 63/308상 보호책임을 계속 고려할 결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1)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유엔사무총장은 총 27건의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관련 문건의 목록은 <http://www.un.org/en/sc/documents/sgreports/2014.shtml> 참조.

로, 원칙 부문에 보호책임의 3기동 체제를 확립한 2009년 첫 번째 이행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제2기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 보고서는 세계정상회의의 결과문서에 서술된 잔혹한 범죄의 성격과 역동성을 환기시키며, 국가의 보호책임 완수를 돕기 위한 접근법과 원칙 및 지원책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제2기동의 세 가지 주요 지원 유형으로서, 즉 장려, 역량구축과 보호 원조를 자세히 다루며, 모범적인 국내, 지역 및 국제적 관행의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제2기동 이행에 관한 과제들을 확인하며, 중요한 의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2. 유엔 라이베리아 임무단에 관한 사무총장의 제28차 진행보고서(Twenty-eighth progres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S/2014/598)

유엔사무총장은 2014년 8월 15일자 보고서에서, 2013년 안보리결의 2116에 의해 그 임기가 2014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유엔 라이베리아 임무단(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이하 'UNMIL')을 통해 라이베리아의 상황과 위 결의의 이행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정치적으로 부패 혐의, 경제적 불평등(injustice), 공동체의 반감 및 정부당국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표현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원의원 선거를 서술하고, 국가적 화해와 개혁 과정의 지체에도 불

구하고 UNMIL과 UNDP가 지원하는 헌법검토위원회 및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과 이행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대체로 안정을 찾은 라이베리아의 안보 상황과 함께, 기니에서 발원하여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으로 전파된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한 라이베리아 정부 및 유엔 차원의 인도적 노력에 대해 기술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 권한의 확장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며, 평화유지활동국이 주도하고, 현장지원국, 안전보안국, UNMIL과 UNOCI(코트디부아르 유엔평화유지군)의 참가자들로 구성된 전략적 검토단의 결론과 권고사항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군인 구성, 경찰 구성, 지원적 차원, 인력의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UNMIL에 대한 조정 사항을 제안하였다.

EU 기관

I. EU 기관의 주요 문서)

- 2014년 6월에서 8월까지 EU 기관에서 작성되었거나 준비 중인 EU법 관련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 EU Hercule III 2014년 작업계획 채택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를 위한 신EU지침 채택
- EU 카르텔 안전지대규정(De Minimis Notice) 개정

II. 주요 문서의 내용

1. EU Hercule III 2014년 작업계획 채택

- 2014. 5. 26일 EU집행위는 새로운 Anti-Fraud 프로그램인 Hercule III의 첫 해인 2014년 작업계획을 채택하였음을 발표
- * Hercule 프로그램은 EU의 재정이익의 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를 위해 2004년 채택된 것으로 Hercule I(2004-2006년, 12백만유로), Hercule II(2007-2013년, 98.5백만유로)를 시행하고, 2014. 3월 Hercule III(2014-2020년, 105백만유로)가 발표
- 2014년에는 총13.7백만유로가 회원국들의 사

기, 부정, 불법 활동에 대응하는 활동지원에 사용할 계획

- 이 중 10.3백만유로는 X-RAY 스캐너, 자동 번호판인식 장비구입, 데이터베이스 접근권 확보 등 기술적 지원활동에 사용되며,
- 3.4백만유로는 세관과 경찰 당국의 훈련, 전문가 등과의 정보교류, 세미나 등에 사용될 예정
- Hercule 프로그램은 회원국이 최소한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여 세관과 법집행기관의 기술적 능력과 운영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작업계획 채택은 EU의 재정이익의 확보를 위해 회원국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정을 배정하여 사기, 부정, 불법 방지활동 지원강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음.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를 위한 신EU지침 채택

- EU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할 목적으로, 연간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회계 보고서 비재정 보고서(non-financial statement)* 발간을 의무화하는 “대기업의 비재정·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신 지침(directive on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companies and groups)”을 채택할 예정이다.

1) 주 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제공
(<http://missiontoeu.mofa.go.kr/korean/eu/missiontoeu/eu/news/index.jsp> 참조).

- * 재정 보고서 외에 환경·사회·고용 문제 등과 관련, 기업체의 활동·입장 및 사회적 영향 관련 내용을 담은 비재정 보고서 제출 의무 추가
- 동 지침은 2014. 4. 15 유럽의회를 통과하였으며, EU이사회 승인 후 관보 게재를 통해 정식 발효 예정
- 동 지침 발효시 회원국의 국내입법 절차를 거친 후, 2017 회계연도 또는 2018년(calendar year) 중 동 의무 적용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
- 동 지침은 500명 이상 고용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유럽 진출 우리기업 중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회원국 내 대규모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3. EU 카르텔 안전지대규정(De Minimis Notice) 개정

□ 일반 개관

- 2014. 6. 25. EU경쟁당국(집행위)은 2001년 제정한 사업자간 마이너 합의(minor agreements)에 대해 EU기능조약(TFEU) 제101조 제1항(카르텔 금지)의 적용을 면제하는 안전지대규정(“De Minimis Notice”)을 개정하여 시행
- * 해당 고시: Notice on agreements of minor importance which do not appreciably restrict competition under Article 101(1) of the TFEU (De Minimis Notice)

□ De Minimis Notice 개관

- TFEU 제101조는 그 목적상 또는 그 효과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간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 않은(not appreciable) 합의에 대해서는 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러한 조약 및 법원의 입장에 따라 EU경쟁당국은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상당한 효과가

없는 합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해 제 101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De Minimis Notice를 2001년 발표하였으며, 이는 일정점유율 기준 미만의 사업자간 마이너 합의 등에 대해서 안전지대(safe harbour)를 제공해 줌.

- 이러한 규정이 일정점유율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들간의 합의가 자동적으로 경쟁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케이스별로 판단되어질 것임.
- 고시가 정한 일정 시장점유율 기준 내에 있는 사업자간 합의에 대해서는 EU경쟁당국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기업들이 선의로(in good faith) 고시상의 시장점유율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임.
- 동 고시는 회원국 경쟁당국이나 회원국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동 기관들에게 TFEU 제101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De Minimis Notice 개정 배경

- Expedia Case(C-226/11, 2012.12)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반영
- 동 판결에서 CJEU는 회원국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반경쟁적인 목적을 가진 합의는 그 구체적인 효과와 관계없이 그 성격상 경쟁을 상당히 제한함.
- 반경쟁적인 목적을 가진 합의 등은 정의상(by definition)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이너(minor)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따라서 안전지대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
- 2001년 이후 채택된 각종 수평 및 수직협정에 관한 일괄면제규정과의 조화를 기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
- 안전지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간 합의 등
 - (시장 점유율 기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쟁

자간 합의 등에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관련시장에서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유통비경쟁자간 합의 등의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점유율이 관련시장에서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반경쟁적인 목적이 없어야 함) 해당합의가 반경쟁적인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특히 가격 고정이나 시장분할 같은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 시사점

- 큰 수준의 개정이 아닌 판결취지를 반영하는

일부내용의 개정이지만 일정 점유율 이하 기업들간 미미한 수준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EU 카르텔금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규제가 보다 강화되었으므로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작은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 EU경쟁당국은 지난 15년간 카르텔 법집행을 강화해 왔으며, CJEU도 이러한 EU경쟁당국의 입장을 지지해온 바, 이번 안전지대규정 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에도 법집행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인도) 사건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답 기한 확정

2014년 6월 19일, ICJ는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사건에서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답 제시 시한을 확정하였다. 즉, ICJ는 2014년 6월 16일자 명령을 통해, 마셜군도의 준비서면(Memorial)과 인도의 답변서(Counter-Memorial) 제출 기한을 각각 2014년 12월 16일과 2015년 6월 16일로 결정하였다.

해당 명령에 의하면, 재판소규칙(Rules of Court) 제31조¹⁾에 따라 재판소장이 동 사건의 절차 문제에 관한 당사국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장이 마셜군도와 인도의 대리인을 재판소장과의 회기에 초청하였다. 네덜란드 주재 인도 대사는 인도가 보기에 무엇보다 ICJ는 해당 분쟁에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 당사국 대리인과 소장과의 회기에 유감스럽게도 참석할 수 없을 것임을 알렸다. 2014년 6월 11일, 재판소장은 마셜군도의 대리인과 화동하였는데, 마셜군도는 ICJ가 관할권 문제에 관하여 첫 번째 서면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답 준비에 6개월의 시한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ICJ는 재판소규칙 제79조 2항²⁾에 따라, 해당 사건의 정황상 무엇보다 재판소 관할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본안절차 이전에 별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추후 절차는 이후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관련 보도자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14/22

19 June 2014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India)

Fixing of time-limits for filing of pleadings on the question of jurisdiction

- 1) "In every case submitted to the Court, the President shall ascertain the views of the parties with regard to questions of procedure. For this purpose he shall summon the agents of the parties to meet him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ir appointment, and whenever necessary thereafter."
- 2)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bove,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and after the President has met and consulted with the parties, the Court may decide that any questions of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THE HAGUE, 19 June 2014.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fixed time-limits for filing of pleadings on the question of jurisdiction in the case of 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India).

By an Order of 16 June 2014, the Court fixed 16 December 2014 and 16 June 2015 as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a Memorial by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and a Counter-Memorial by the Republic of India.

In its Order, the Court states that “by a letter dated 28 April 2014, the Registrar invited the representatives of the Marshall Islands and India to a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Court to be held on 11 June 2014, pursuant to Article 31 of the Rules of Court, in order for the President to ascertain the views of the Parties with regard to questions of procedure in the case”.

It also indicates that, “by a letter dated 6 June 2014,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India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nformed the Court, *inter alia*, that “India . . . considers th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oes not have jurisdiction in the alleged dispute”.

According to the Order, by a subsequent letter dated 10 June 2014,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India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ndicated that “India regrets to inform [the Court] that it will not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roposed meeting” to be held by the President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The Order goes on to state that, “on 11 June 2014, the President of the Court met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Marshall Islands . . . and . . . at that meeting, the Marshall Islands expressed the view that, if the Court were to order a first round of written pleadings dedicated to the question of its jurisdiction, a time-limit of six months would be sufficient for the preparation of a pleading on that question”.

Finally, “the Court considers, pursuant to Article 79, paragraph 2, of its Rules,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t is necessary to resolve first of all the ques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and that this question should accordingly be separately determined before any proceedings on the merits”. Therefore, the Court decided that the written pleadings shall first be addressed to the ques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ress Release No. 2014/18 of 25 April 2014,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Press Room”/“Press Release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dependent judicial body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which is not a United Nations tribunal and does not form part of the Lebanese judicial system),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s Joanne Moore,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 태평양 접근에 대한 교섭 의무 (볼리비아 v. 칠레) 사건에서 칠레가 제기한 관할권에 관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볼리비아의 서면절차 시한 확정

2014년 7월 15일, ICJ는 볼리비아의 요청에 의해 태평양 접근에 대한 교섭 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칠레가 제기한 ICJ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s)에 있어 서면절차의 시한을 확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에 의하면, 재판소장은 칠레가 재판소규칙 제79조 1항¹⁾에 의해 ICJ의 관할권과 관련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음을 환기하였다. 동 조항 5항²⁾에 따라, 본안 심리는 중단되었으며, 재판소장은 칠레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관하여 볼리비아가 서면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시한을 2014년 11월 14일로 결정하였다. 추후 절차는 이후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먼저 2013년 4월 24일 “태평양에 대해 볼리비아의 온전한 주권적 접근을 부여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볼리비아와 신의성실하게 효과적으로 협상할 칠레의 의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볼리비아가 소장을 제출하였다. 2013년 6월 18일자 명령에 의해, ICJ는 볼리비아의 준비서면과 칠레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각각 2014년 4월 17일과 2015년 2월 18일자로 확정하였으며, 볼리비아는 위에 언급된 시한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14/24

16 July 2014

- 1) “1. Any objection by the responden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r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r other objection the decision upon which is requested before any further proceedings on the merits, shall be made in writing as soon as possible, and not later than three months after the delivery of the Memorial. Any such objection made by a party other than the respondent shall be filed within the time-limit fixed for the delivery of that party's first pleading.”
- 2) “5. Upon receipt by the Registry of a preliminary objection,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shall be suspended and the Court, or the President if the Court is not sitting, shall fix the time-limit within which the other party may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documents in support shall be attached and evidence which it is proposed to produce shall be mentioned.”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Fixing of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of a written statement by Bolivia on the preliminary objec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raised by Chile

THE HAGUE, 16 July 2014. By an Order of 15 July 2014,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has fixed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by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of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raised by the Republic of Chile in the case concerning the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In his Order, the President recalls that earlier that day, Chile, referring to Article 79, paragraph 1, of the Rules of Court, filed a preliminary objec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have therefore been suspended. Pursuant to that paragraph, the President, by the said Order, has fixed 14 November 2014 as the time-limit within which Bolivia may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 raised by Chile.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History of the proceedings

On 24 April 2013, Bolivia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an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against Chile concerning a dispute in relation to “Chile’s 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d effectively with Bolivia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granting Bolivia a fully sovereign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y an Order of 18 June 2013, the Court fixed 17 April 2014 and 18 February 2015 as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a Memorial by Bolivia and a Counter-Memorial by Chile.

The Memorial of Bolivia was filed within the time-limit thus fixed.

Further details can be found in Press Releases Nos. 2013/11 and 2013/15,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Press Room”/“Press Releases”.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full text of the Order will be available shortly on the Court’s websit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 mostly criminal —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dependent judicial body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which is not a United Nations tribunal and does not form part of the Lebanese judicial system),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r. Boris Heim,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s Joanne Moore,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TLOS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활동에 관한 지역수산기구의 권고적 의견 요청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ITLOS는 지역수산기구(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이하 'SRFC')가 제출한 권고적 의견 요청에 관한 공개 심리(public hearings)를 2014년 9월 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2014년 4월 14일자 명령과 관련하여, 다음 13개국과 정부간기구가 해당 심리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스페인, 미크로네시아, 뉴질랜드, 영국, 태국, EU, 카리브 어업기구와 국제자연보존연맹.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음과 같다. 세네갈의 다카르에 위치한 SRFC는 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카보베르데,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아, 세네갈과 시에라리온이 그것이다. 2013년 3월 제14차 회기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SRFC의 각료회의는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에 “다음 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ITLOS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1.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활동이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기국의 의무는 무엇인가?
2. 기국은 어느 범위까지 자신의 깃발 하에 운항하는 선박이 수행한 IUU 어업활동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3. 어업허가가 기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국제협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문제의 선박에 의한 연안국의 어업 관련 국내법 위반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4. 공유 어족자원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권고적 의견 요청서는 2013년 3월 27일자 서한에 의해 전달되었고, ITLOS 규칙 제133조¹⁾에 따라 행정처장은 유엔해양법협약 모든 당사국과 관련 정부간기구에 권고적 의견 요청에 관한 공지를 띄었다. 2013년 5월 24일자 명령은 협약 당사국, SRFC와 정부간기구에 ITLOS에 제출된 문제에 관한 서면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제출 시한을 2013년 11월 29일로 확정하였다. 이후 제출 시한은 2013년 12월 3일자 명령에 의해 2013년 12월 19일로 연장되었으며, 30건의 서면자료가 제출되었다. 2013년 12월 20일자 명령에 의해, ITLOS 소장은 서면입장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2014년 3월 14일로 결정하였고, 6개 당사국과 관련 정부간기구들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1) “1. The Registrar shall forthwith give notice of the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to all States Parties.
2. The Chamber, or its President if the Chamber is not sitting, shall identify th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likely to be able to furnish information on the question. The Registrar shall give notice of the request to such organizations.
3. States Parties and the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invited to present written statements on the question within a time-limit fixed by the Chamber or its President if the Chamber is not sitting. Such statements shall be communicated to States Parties and organizations which have made written statements. The Chamber, or its President if the Chamber is not sitting, may fix a further time-limit within which such States Parties and organizations may present written statements on the statements made.
4. The Chamber, or its President if the Chamber is not sitting, shall decide whether oral proceedings shall be held and, if so, fix the date for the opening of such proceedings. States Parties and the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invited to make oral statements at the proceedings.”

〈관련 보도자료〉

ITLOS/Press 215
28 August 2014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Press Release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TO THE TRIBUNAL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REGARD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CTIVITIES**

HEARINGS TO OPEN ON 2 SEPTEMBER 2014

The public hearing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relating to the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SRFC) will open on 2 September 2014 at 3 p.m. Judge Shunji Yanai, President of the Tribunal, will preside over the sitting.

Further to Order 2014/1, of 14 April 2014, thirteen Stat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hearings. In addition to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these are: Germany, Argentina, Australia, Chile, Spain,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New Zealand, United Kingdom, Thailand, European Union, 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The schedule for the hearings is as follows:

Tuesday, 2 September 2014, 3 p.m. - 6 p.m.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Wednesday, 3 September 2014, 10 a.m. - 1:15 p.m.

Germany

Argentina

Australia

Chile

Spain

Thursday, 4 September 2014, 10 a.m. – 1p.m.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New Zealand

United Kingdom

Thailand

European Union

Friday, 5 September 2014, 10 a.m. – 1 p.m.

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The verbatim records of the hearings will be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The hearings can be viewed [live](#)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and will be available in the [webcast archive](#) shortly after the closure of each sitting.

History of the proceedings

Located in Dakar, Senegal, the SRFC comprises seven member States: Cabo Verde, the Gambia, Guinea, Guinea-Bissau, Mauritania, Senegal and Sierra Leone. In a resolution adopted during its fourteenth session in March 2013, the Conference of Ministers of the SRFC authorized the Permanent Secretary of the SRFC “to seize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in order to obtain its advisory opinion on the following matters:

1. What are the obligations of the flag State in cases wher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activities are conducted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ird party States?
2. To what extent shall the flag State be held liable for IUU fishing activities conducted by vessels sailing under its flag?
3. Where a fishing license is issued to a vessel within the framework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the flag State or with an international agency, shall the State or international agency be held liable for the violation of the fisheries legislation of the coastal State by the vessel in question?
4. What ar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astal State in ensuring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shared stocks and stocks of common interest, especially the small pelagic species and tuna?”

The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was transmitted by letter dated 27 March 2013 from the Permanent Secretary of the SRFC, Mr Kane Ciré Amadou, to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The SRFC submitted a dossier of supporting documents to the Tribunal, which is available on the Tribunal’s websi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3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the Registrar gave notice of the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to all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vention) and to various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list of organizations see the

annex to the Tribunal's Order 2013/2 of 24 May 2013). The Order of 24 May 2013 invited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the SRFC and th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present written statements on the questions submitted to the Tribunal and fixed 29 November 2013 as the time-limit for the presentation of written statements. The time-limit was subsequently extended to 19 December 2013 by Order of 3 December 2013.

Thirty Statements were filed with the Tribunal within the time-limit, as follows:

I.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Saudi Arabia, Germany, New Zealand, China, Somalia, Ireland,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Australia, Japan, Portugal, Chile, Argentina, United Kingdom, Thailand, Netherlands, European Union, Cuba, France, Spain, Montenegro, Switzerland, Sri Lanka;

II. States Parties to the 1995 Straddling Fish Stocks Agreement

United States of America;

III.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vited to submit written statements pursuant to articles 138, paragraph 3, and 133, paragraph 3,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Forum Fisheries Agency,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United Nations,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Central American Fisheries and Aquaculture Organization

WWF International also submitted a statement, which does not form part of the case file.

By Order of 20 December 2013, the President fixed 14 March 2014 as the time-limit within which written statements on the written statements could be submitted to the Tribunal. Six States Parti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bmitted written statements in the second round of written proceedings as follows:

United Kingdom, New Zealand, European Union, Netherlands, Thailand,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WWF International also submitted a statement, which does not form part of the case file.

The written statements are available on the Tribunal's website.

Attending the hearings

The hearings will be held in the main courtroom of the Tribunal and are open to the public. Members

of the diplomatic and consular corps wishing to attend the hearing are requested to contact the Tribunal's Protocol Office.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are requested to register with the Press Office.

Accreditation for media representatives

Members of the press are welcome to attend the hearings but are requested to register in advance with the Press Office using the accreditation form that is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Tribunal.

Unobtrusive audio and video recording of the hearings is permitted. Filming is subject to special authorization from the Press Office. Facilities are available for radio crews to connect recording equipment directly to the Tribunal's audio system.

Press information will be available at the sitting itself, or from the Press Office.

Note: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y are issu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The press releases of the Tribunal,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the Tribunal's websites: <http://www.itlos.org> and <http://www.tidm.org> and from the Registry of the Tribunal. Please contact Ms Julia Ritter at: Am Internationalen Seegerichtshof 1, 22609 Hamburg, Germany, Tel.: +49 (40) 35607-227; Fax: +49 (40) 35607-245; E-mail: press@itlos.org

●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 검사 v. Laurent Gbagbo 사건: 제1전심재판부 Laurent Gbagbo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

2014년 6월 12일, ICC 제1전심재판부는 *The Prosecutor v. Laurent Gbagbo* 사건에서, Laurent Gbagbo에 대해 4건의 인도에 반한 죄(살인, 강간,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살인미수, 박해)에 대한 혐의를 다수결로 확인하고, 그를 확인된 범죄 혐의로 재판부에 회부하였다. 제1전심재판부는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재판장, Hans-Peter Kaul 재판관 및 반대견해를 제시한 Christine Van den Wyngaert 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코트디부아르의 전직대통령인 Laurent Gbagbo는 2011년 11월 30일 ICC로 인도되어, 2011년 12월 5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출두하였다. 2013년 2월 19일에서 28일까지 열린 혐의 인정 심리 이후, 전심재판부는 다수결로 심리를 휴정하기로 결정하고, 검사에게 더 많은 증거 제공을 검토하거나 추가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재판부는 검사부, 변호인과 희생자 대리인으로부터 추가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재판부는 목격자 108명의 증언, 22,000페이지 이상의 서류 증거 및 상당한 양의 음성과 영상 자료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세밀히 검토하였다. 재판부는 2010년 12월 16일과 19일 RTI 본부에서의 와타라 지지 행진 동안과 그 직후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2011년 3월 3일 Abobo에서의 여성 시위, 2011년 3월 17일 Abobo의 인구밀집지역 포격 및 2011년 4월 12일경 Yopougon에서의 살인, 강간,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살인미수 및 박해와 같은 인도적 범죄에 대해 Laurent Gbagbo가 형사법상 책임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Laurent Gbagbo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a)에 따라 親Gbagbo군대의 회원 및 조직 중추세력의 회원들과 함께 위의 범죄를 저지르고,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b)에 따라 위의 범죄 행위를 명령하고,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d)에 따라 위의 범죄 행위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소되었다.

범죄 혐의 확인 결정에 대해 항소 허가를 요청한 당사자의 권리에 따라, ICC 소장은 적절한 때에 재판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관련 보도자료>



Cour
Pénale
International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ess Release

Press Release : 12/06/2014

Pre-Trial Chamber I commits Laurent Gbagbo to trial

ICC-CPI-20140612-PR1016

Situation: Côte d'Ivoire

Case: The Prosecutor v. Laurent Gbagbo

On 12 June 2014, Pre-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confirmed by majority four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rape, other inhumane acts or – in the alternative – attempted murder, and persecution) against Laurent Gbagbo and committed him for trial before a Trial Chamber. Pre-Trial Chamber I is composed of Presiding Judge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Judge Hans-Peter Kaul and Judge Christine Van den Wyngaert who appended a dissenting opinion.

Laurent Gbagbo, former President of Côte d'Ivoire, was surrendered to the ICC on 30 November 2011 and he first appeared before the Pre-Trial Chamber on 5 December 2011. Following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conducted from 19 to 28 February 2013), the Chamber, by majority, decided to adjourn the hearing and requested the Prosecutor to consider providing it with further evidence or conduct additional investigations. In accordance with an established calendar, the Chamber received additional submissions of evidence and observations by the Prosecution, the Defence and the victims' representative.

The Chamber thoroughly examined all the evidence submitted to it by the parties, which included the statements of 108 witnesses, more than 22.000 pages of other documentary evidence, as well as a large amount of audio and video material. The Chamber found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Laurent Gbagbo is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 crimes against humanity of murder, rape, other inhumane acts or – in the alternative – attempted murder, and persecution in Abidjan, Côte d'Ivoire, committed between 16 and 19 December 2010 during and after a pro-Ouattara march on the RTI headquarters, on 3 March 2011 at a women's demonstration in Abobo, on 17 March 2011 by shelling a densely populated area in Abobo, and on or around 12 April 2011 in Yopougon.

Mr Gbagbo is accused of having engaged his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mmitting these crimes, jointly with members of his inner circle and through members of the pro-Gbagbo forces (article 25(3)(a) of the Rome Statute) or, in the alternative, for ordering soliciting and inducing the commission of these crimes (article 25(3)(b) of the Rome Statute) or, in the alternative, for contributing in any other way to the commission of these crimes (article 25(3)(d) of the Rome Statute).

Subject to the right of the parties to request leave to appeal against the confirmation of charges' decision, the Presidency of the ICC will constitute a Trial Chamber in due course.

●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 검사 v. Germain Katanga 사건: 제2재판부 판결에 대한 항소 중단

2014년 6월 25일,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사건의 2014년 3월 7일자 ICC 제2재판부 판결에 대해 Germain Katanga의 변호인과 검사부는 항소를 중단하여, 위 판결이 최종판결이 되었다.

2014년 3월 7일 제2재판부는 다수결로 Germain Katanga에 대해 1건의 인도적 범죄와 4건의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 결정을 내리고, 2014년 5월 23일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¹⁾

2014년 6월 25일, 변호인은 Germain Katanga가 항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ICC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음을 항소재판부에 통고하였다. 또한 Germain Katanga는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검사는 항소재판부에 자신 역시 판결 및 선고 형량에 대해 항소를 중단할 뜻을 밝혀 왔다.

제2재판부는 Germain Katanga가 기소된 범죄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



Cour
Pénale
International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ess Release

Press Release : 25/06/2014

Defence and Prosecution discontinue respective appeals against judgment in Katanga case

ICC-CPI-20140625-PR1021

Situatio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Case: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1) 역자 주: 관련 결정에 대한 내용은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년 6월호 138-140쪽 참조.

Today, 25 June 2014, the Defence for Germain Katanga and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both discontinued their appeals against the judgment of 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f 7 March 2014 in the case *The Prosecutor v. Germain Katanga*. The judgment is now final.

On 7 March 2014, Trial Chamber II, ruling in the majority, found Germain Katanga guilty of one cou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four counts of war crimes and sentenced him on 23 May 2014 to a total sentence of 12 years imprisonment.

Today, 25 June 2014, the Defence notified the Appeals Chamber that Germain Katanga had decided to discontinue his appeal and that Germain Katanga accepted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its conclusions on its role as well as his conduct. Germain Katanga also indicated that he decided not to appeal against the imposed sentence. The Prosecutor subsequently informed the Appeals Chamber that she also discontinued her appeal against the judgment and that she does not intend to appeal the sentence imposed on Germain Katanga.

Trial Chamber II sha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reparations to victims of the crimes for which Germain Katanga was convicted. The decision of the judges on these issues will be taken in due course.

Background: On 7 March 2014, Trial Chamber II (then composed of Judges Bruno Cotte, Fatoumata Dembele Diarra, and Christine Van den Wyngaert) found German Katanga guilty, as an accessor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5(3)(d) of the Rome Statute, of one count of crime against humanity (murder) and four counts of war crimes (murder, attacking a civilian population, destruction of property and pillaging) committed on 24 February 2003 during the attack on the village of Bogoro, in the Ituri district of the DRC. The Chamber acquitted Germain Katanga of the other charges that he was facing. The Prosecutor and the Defence then appealed the judgment. On 23 May 2014, Trial Chamber II sentenced Germain Katanga to a total of 12 years' imprisonment. The Chamber also ordered that the time spent in detention at the ICC – between 18 September 2007 and 23 May 2014 – be deducted from his sentence. Decisions on victims' reparations will be rendered later.

●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 검사 v. Bemba, Kilolo et al. 사건: 항소재판부 Kilolo, Babala 및 Mangenda의 항소 기각

2014년 7월 11일, ICC 항소재판부는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사건에서, 가석방 요청을 거부한 2014년 3월 14일과 17일자 제2전심재판부 결정에 대해 Aimé Kilolo Musamba, Fidèle Babala Wandu와 Jean-Jacques Mangenda Kabongo의 항소를 다수결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ICC에서 열린 공개 심리 중, Sanji Mmasenono Monageng 재판장은 항소재판부 5명의 재판관 중 다수결로, 3명의 용의자가 제기한 항소와 관련하여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명백한 오류가 없었다며 본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음을 설명하는 판결요약문을 낭독하였다.

또한 Monageng 재판장은 Anita Ušacka 재판관과 Erkki Kourula 재판관의 반대의견 요약문을 낭독하였는데, Ušacka 재판관은 사법방해죄(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가 결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주요범죄에 비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전심재판부가 계속된 구금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가석방 관련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Kourula 재판관은 사법방해죄가 극히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한 전심재판부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이것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58조 1항(b)1)의 요건에 대한 전심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위 두 개의 반대의견은 관련 사항이 용의자 각각의 가석방 요청과 관련하여 전심재판부의 새로운 결정을 위해 파기환송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Cour
Pénale
International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ess Release

1) “제58조 전심재판부의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 발부

1. 전심재판부는 수사 개시후 언제라도 소추관의 신청에 따라 소추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증거 또는 기타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이 확인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b. 당해인의 체포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재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2) 수사 또는 재판소 절차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경우

(3) 적용 가능한 경우, 당해 범행의 계속 또는 그와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판소의 관할권내에 속하는 관련범행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Press Release : 11/07/2014

Bemba, Kilolo et al. case: Appeals Chamber dismisses the appeals of Messrs. Kilolo, Babala and Mangenda

ICC-CPI-20140711-PR1027

Situation: Central African Republic

Case: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Today, 11 July 2014,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elivered its judgments in which it dismissed, by majority, the appeals of Aimé Kilolo Musamba, Fidèle Babala Wandu and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against the decisions of Pre-Trial Chamber II of 14 and 17 March 2014 rejecting their requests for interim release.

During a public hearing held today at the ICC, the Presiding Judge in this appeal, Sanji Mmasenono Monageng, read a summary of the judgments explaining that the Appeals Chamber, by majority of its five judges, decided,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to dismiss the grounds of appeal submitted by the three suspects, having found no clear errors materially affecting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s.

Judge Monageng also read a summary of the dissenting opinions of Judge Anita Ušacka and Judge Erkki Kourula. Judge Ušacka considered that, given the fact that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re in no way comparable to core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the Pre-Trial Chamber erred in applying existing jurisprudence on interim release to analyse whether their continued detention was justified. Judge Kourula opined that the Pre-Trial Chamber erred in stating that the offences were of 'utmost gravity', and held this to have critically impacted the Pre-Trial Chamber's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under article 58 (1) (b) of the Statute. Both dissenting opinions concluded that the matter should be remanded to the Pre-Trial Chamber for a new decision on each of the suspects' requests for interim release.

Background: On 20 November 2013, Judge Cuno Tarfusser, acting as single judge of Pre-Trial Chamber II, issued a warrant of arrest for Jean-Pierre Bemba Gombo, his lead Counsel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a member of Mr Bemba's Defence team and case manager), Fidèle Babala Wandu (a member of the DRC Parliament and Deputy Secretary General of the Mouvement pour la Libération du Congo), and Narcisse Arido (a Defence witness) for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llegedly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consisting of corruptly influencing witnesses before the ICC and presenting evidence that they knew to be false or forged. All suspects in this case are currently in the ICC's custody.

●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C

- 검사 v. Al-Senussi 사건: 항소재판부 재판적격성 부인



2014년 7월 24일, ICC 항소재판부는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and Abdullah Al-Senussi* 사건에서, Abdullah Al-Senussi 사건이 허용가능하지 않다고 선언한 제1 전심재판부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확인하였다.

2013년 4월 2일, 리비아당국은 전심재판부에 Abdullah Al-Senussi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3년 10월 11일 제1 전심재판부는 권한 있는 리비아당국에 의해 관련 국내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리비아가 진정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할 의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 사건은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2013년 10월 17일, 변호인은 이러한 결정에 항소하였다.

2014년 7월 24일, Akua Kuenyehia 재판장은 항소재판부의 판결 및 송상현 재판관 및 Anita Ušacka 재판관의 별개의견 요약문을 낭독하였다. 재판장은 항소재판부가 Al-Senussi의 변호인이 제출한 세 가지 항소이유를 철저히 검토하였음을 설명한 뒤, 리비아가 Al-Senussi를 진정으로 기소할 의도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오류가 없었다고 결정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ICC는 국내형사소송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CC는 관련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의도가 없거나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개인을 수사, 기소 및 심판할 수 있다.

위 판결은 Saif Al-Islam Gaddafi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2013년 5월 31일, 제1 전심재판부는 Saif Al-Islam Gaddafi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이의를 제기한 리비아의 주장을 기각하고, 리비아에 ICC로 용의자를 인도할 의무를 상기시켰다. 2014년 5월 21일, ICC 항소재판부는 제1 전심재판부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1) 역자 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1조 참조(“국제형사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한다)를 이에 설립한다. 재판소는 상설

<관련 보도자료>



Press Release

Press Release : 24/07/2014

Al-Senussi case: Appeals Chamber confirms case is inadmissible before ICC

ICC-CPI-20140724-PR1034

Situation: Libya

Case: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and Abdullah Al-Senussi

Today, 24 July 2014,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unanimously confirmed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which declared the case against Abdullah Al-Senussi inadmissible before the ICC.

On 2 April 2013, the Libyan authorities filed a challenge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with regard to Abdullah Al Senussi before Pre-Trial Chamber I of the ICC. On 11 October 2013, Pre-Trial Chamber I decided that the case against Mr Al-Senussi was inadmissible before the Court as it was subject to on-going domestic proceedings conducted by the competent Libyan authorities and that Libya was willing and able genuinely to carry out such investigation. On 17 October 2013, the Defence appealed this decision.

In an open session today, the Presiding Judge in this appeal, Judge Akua Kuenyehia, read a summary of the Judgment of the Appeals Chamber and of the separate opinions by Judges Sang-Hyun Song and Judge Anita Ušacka. The Presiding Judge indicated that the Appeals Chamber examined thoroughly the three grounds of appeal submitted by the Defence of Mr Senussi. The Appeals Chamber concluded that there were no errors in the findings of the Pre-Trial Chamber that Libya is not unwilling or unable to genuinely prosecute Mr Al-Senussi, or in the exercise of its discretion in the conduct of the proceedings

적 기구이며,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 . . .").

2) 역자 주: 관련 결정에 대한 내용은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년 6월호 135-137쪽 참조.

and in the evaluation of the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Rome Statute, the ICC does not replac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s; rather, it complements them. The ICC can investigate and, where warranted, prosecute and try individuals only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annot or is unwilling genuinely to do so.

Today's judgment has no bearing on the case against Saif Al-Islam Gaddafi. On 31 May 2013, Pre-Trial Chamber I rejected Libya's challenge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against Saif Al Islam Gaddafi and reminded Libya of its obligation to surrender the suspect to the Court. On 21 May 2014, the ICC Appeals Chamber confirmed the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Background: The situation in Libya was referred to the ICC Prosecutor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ough the unanimous adoption of Resolution 1970 on 26 February 2011. On 27 June 2011, Pre-Trial Chamber I issued warrants of arrest for Muammar Mohammed Abu Minyar Gaddafi, Saif Al-Islam Gaddafi and Abdullah Al-Senussi for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and persecution) allegedly committed across Libya from 15 February 2011 until at least 28 February 2011, through the State apparatus and Security Forces. On 22 November 2011, Pre-Trial Chamber I formally terminated the case against Muammar Gaddafi due to his death.

●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EU사법재판소(CJEU)

- Ålands Vindkraft AB v Energimyndigheten 사건(Case C-573/12)의 판결: 상품의 자유이동 원칙과 예외

2014년 7월 1일, CJEU는 *Ålands Vindkraft AB v Energimyndigheten* 사건에서 스웨덴이 자국 영토에서 녹색에너지 생산을 진흥한 지원제도는 EU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하였다.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녹색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생산자에게 혜택을 부여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된 녹색에너지의 사용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스웨덴의 경우, 자국 영토에 위치한 녹색에너지설비에 전력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증은 전력공급업자 또는 일정량의 인증 쿼터를 보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정한 사용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 이러한 인증 판매는 녹색전력 생산자들이 전력 판매 이외에 부가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비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한 전력비용 보다 훨씬 고가인 녹색전력 생산을 위한 추가적 비용은 공급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Ålands Vindkraft社は 핀란드의 Åland 군도에 소재한 풍력발전단지과 관련하여 스웨덴 당국에 전력인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신청은 스웨덴에서 설립된 녹색에너지설비에만 전력인증이 부여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Ålands Vindkraft社は **상품의 자유이동 원칙(principle of free movement of goods)**이 스웨덴 전력인증제도에 의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스웨덴 법정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원고에 의하면, 해당 제도를 통해 스웨덴 전력소비시장의 약 18%가 스웨덴에 소재한 녹색전력생산자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전력수입에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행정법원은 CJEU에 스웨덴의 전력인증이 EU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해 선결적 부탁절차를 요청하였다.

CJEU는 무엇보다, 스웨덴의 녹색인증제도는 녹색전력의 생산을 지원하는 한, 재생에너지지침 영역에 포함되는 지원제도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침이 지원제도를 선택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생산되는 녹색에너지까지 포함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스웨덴의 지원제도는 위 지침에 합치된다.

또한 CJEU는 문제의 지원제도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특히 녹색전력의 수입을 방해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공급업자와 사용자는 만약 일정한 비용 지불을 피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수입하는 전력에 비례하게 인증을 구입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스웨덴으로부터 녹색전력 생산자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전력을 패키지로 인증과 함께 판매할 가능성은 공급업자 또는 전력사용자에게 국내전력 공급에 관한 계약 관계 확립과 협상의 시작을 용이하게 만든다. 따라서 지원제도는 **상품의 자유이동에 제한**이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CJEU는 이러한 **제한이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용을 진흥하기 위한 공공이익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판결하였다.¹⁾ CJEU는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상, 녹색에너지 진흥조치가 소비단계 보다는 생산단계를 적절히 목표로 삼고 있음을 인정하고, 스웨덴의 관련 제도가 장기적 관점에서 녹색에너지 투자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스웨덴 지원제도는 상품의 자유이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1) 역자 주: EU기능조약 제34조와 제36조 참조.

“제34조: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제36조: The provisions of Articles 34 and 35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

〈관련 보도자료〉



Press and Informatio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90/14
Luxembourg, 1 July 2014

Judgment in Case C-573/12
Ålands Vindkraft AB v Energimyndigheten

The Swedish support scheme promoting green energy production in the national territory is compatible with EU law

Member States are not required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in other EU States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¹⁾ allows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green energy. Under that directive, Member States which grant benefits to producers are not required to support the use of green energy produced in another Member State.

In Sweden, green electricity production installations located on the national territory may be awarded electricity certificates. Those certificates may then be sold to electricity suppliers or to certain users, who are under an obligation to hold a certain number (quota) of certificates, corresponding to a proportion of the total quantity of electricity supplied or consumed, failing which they must pay a fee. The sale of those certificates enables producers of green electricity to receive income additional to that derived from the sale of electricity. Accordingly, the additional cost of producing green electricity, whose production costs are still higher than those for electricity produced from non-renewable sources of energy, is borne by the suppliers and the consumers.

Ålands Vindkraft applied to the Swedish authorities for electricity certificates in respect of its wind farm in the Åland archipelago, in Finland. The application was refused on the grounds that only green electricity production installations located in Sweden may be awarded such electricity certificates.

Ålands Vindkraft challenged that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Swedish courts, arguing that the principle of the free movement of goods precluded the Swedish electricity certificates scheme. According to Ålands Vindkraft, the effect of the scheme is that approximately 18% of the Swedish electricity consumption market is reserved to green electricity producers located in Sweden, to the detriment of electricity imports from other Member States.

The förvaltningsrätten i Linköping (Administrative Court, Linköping, Sweden), the court hearing the action,

1)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OJ 2009 L 140, p. 16)

asked the Court of Justice whether the Swedish electricity certificates scheme is compatible with EU law.

In today's judgment, the Court finds, first of all, that the Swedish green certificates scheme is a support scheme which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in so far as it supports the production of green electricity. The Court notes that the directive does not require Member States which have opted for a support scheme to extend that scheme to cover green electricity produc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State. Accordingly, **the Swedish support scheme is compatible with the directive.**

Secondly, the Court notes that the support scheme at issue **is capable of hindering imports of electricity from other Member States**, especially green electricity. Suppliers and users are required to purchase certificates in proportion to the electricity that they import if they wish to avoid having to pay a specific fee. Also, the possibility for producers of green electricity from Sweden to sell their certificates together with the electricity that they produce, as a package, facilitates the opening of negoti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concerning the supply of national electricity to suppliers or electricity users. It follows that **the scheme constitutes a restriction of the free movement of goods.**

However, the Court finds that **the restriction is justified by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 of promot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combat climate change. In that context, the Court acknowledges that, for the purposes of attaining the objective pursued, the measures promoting the transition to green energy justifiably target the production stage rather than the consumption stage. In the same way, the Court concedes that, as EU law currently stands, Sweden was legitimately able to consider that, for those purposes, the national support scheme should be reserved to the national production of green electricity. The Court notes in particular that the support scheme is necessary in order to fost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vestments in green energy.

In those circumstances, the Court rules that **the Swedish support scheme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he free movement of goods.**

NOTE: A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allows the courts and tribunals of the Member States, in disputes which have been brought before them, to refer questions to the Court of Justice about the interpretation of EU law or the validity of a European Union act. The Court of Justice does not decide the dispute itself.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or tribunal to dispose of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Court's decision, which is similarly binding on other national courts or tribunals before which a similar issue is raised.

Unofficial document for media use, not binding on the Court of Justice.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is published on the CURIA website on the day of delivery.

Press contact: Christopher Fretwell ☎ (+352) 4303 3355

Pictures of the delivery of the judgment are available from "Europe by Satellite" ☎ (+32) 2 2964106

●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EU사법재판소(CJEU)

- Maurice Leone, Blandine Leone v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Caisse nationale de retraite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 사건(Case C-173/13)의 판결: 성별을 근거로 한 간접차별

2014년 7월 17일, CJEU는 공무원에 부여하고 있는 일정한 연금 관련 특혜에 관한 프랑스법은 성별을 근거로 한 간접차별을 야기한다고 판결하였다.

제도적으로 여성 공무원에 부여된 강제적 성격의 출산휴가의 이행을 통해 야기된 불평등대우는 문제의 규칙이 프랑스의 적법한 사회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심사항을 진정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러한 목적의 관점상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프랑스법상 적어도 3명의 자녀를 둔 부모인 공무원은 각 자녀별 최소 2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포함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즉시 연금 신청과 함께 조기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남편의 육아휴가, 육아휴가 또는 입양의 형태를 띌 수 있는데, 프랑스법은 이러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연금목적의 서비스공제(service credit)를 각 자녀당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CJEU가 *Griesmar* 사건에서 서비스공제를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이전 프랑스법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업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을 배제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판결한 이후 채택되었다.

병원 공무원인 Maurice Leone씨는 리옹의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는데, 2005년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즉시 연금 신청과 함께 조기퇴직을 신청하였다. 그의 신청은 자녀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다는 근거로 거부되었다. 그는 자신이 성별에 근거한 차별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EU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남성 및 여성 근로자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 프랑스 리옹의 행정법원은 해당 문제를 CJEU에 부탁하였다.

이에 CJEU는 서비스공제와 관련하여, 프랑스법은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소 2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兩性에 부여하는 혜택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CJEU는 프랑스법상 사용된 기준이 보다 많은 여성이 관련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프랑스법상 출산휴가의 강제적 성격과 최소 2개월의 기간으로 인해 여성 공무원은 서비스공제 특혜로부터 이득을 보게 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비스공제의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유형의 휴가, 즉 남성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휴가는 선택적이며, 일부의 경우 연금수급권의 지불과 축적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CJEU는 프랑스법이 상당수의 남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하며, 성별을 근거로 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CJEU는 국내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관련 **대우의 차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는데, 프랑스가 추구하는 목적이 적법한 사회정책목적을 구성하지만 이것이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1) 역자 주: EU기능조약 제157조 1항 참조: “1. Each Member State shall ensure that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male and female workers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is applied.”

〈관련 보도자료〉



Press and Informatio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102/14
Luxembourg, 17 July 2014

Judgment in Case C-173/13
Maurice Leone and Blandine Leone v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et Caisse nationale de retraite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

French rules on certain pension-related advantages granted to civil servants give rise to indirec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

The unequal treatment, which results from a condition which female civil servants fulfil systematically because of the compulsory nature of maternity leave, is not justified, as the rules in question do not genuinely reflect a concern to attain the legitimate social policy objective relied on by France and have not been pursued i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manner in the light of that aim

Under French law, civil servants who are the parents of at least three children may opt for early retirement with immediate payment of pension,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including having taken a career break of at least two consecutive months for each child. That career break may take the form of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or adoption. French law further provides for a service credit for pension purposes to be granted for each child in respect of whom such a career break has been taken. Those rules were adopted following the Court of Justice's judgment in *Griesmar*¹⁾ in which the Court held that earlier French rules, under which that service credit was granted only to female civil servants, thereby excluding male civil servants who were able to prove that they had assumed the task of bringing up their children, were directly discriminatory.

Mr Maurice Leone, a civil servant in the hospital sector, worked as a nurse in the civilian care homes of Lyon. In 2005, he applied for early retirement with immediate payment of his pension as father of three children. His application was refused on the ground that Mr Leone had not taken a career break for each of his children. Mr Leone then brought legal proceedings, taking the view that he had been the victim of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 EU law²⁾ requires the Member States to guarantee male and female workers equal pay for equal work. The Cour administrative d'appel de Lyon (Administrative Appeal Court, Lyon, France) referred questions to the Court of Justice.

In its judgment today, the Court holds, **with regard to the service credit**, that the French rules benefit

1) Case C-366/99 *Griesmar* ; see also press release No n°62/01.

2) Article 141 CE, now Article 157 TFEU.

civil servants of both sexes provided that they have had a career break of at least two consecutive months in order to care for their children, and appear to be neutral as to the sex of the beneficiary. The Court states, however, that, notwithstanding the appearance of neutrality, the criterion used in the French rules leads to a situation where many more women than men receive the benefit of the advantage concerned. Given the mandatory nature and minimum two-month duration of maternity leave under French law, female civil servants are the ones who are in a position to benefit from the service credit advantage. By contrast, other types of leave liable to give rise to entitlement to service credits and therefore available to male civil servants are optional and, in some cases, lead to a loss of pay and accumulation of pension rights. It follows that the French rules place a high number of male workers at a disadvantage, thereby giving rise to indirec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

The Court further considers that, subject to assessment by the national court, that difference in treatment is not justified in the present case by objective factors unrelated to any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 Although the objective relied on by France (namely to compensate for the disadvantages suffered in the course of their career by all workers, both female and male, who have taken a career break for a period of time in order to devote themselves to bringing up their children) indeed constitutes a legitimate social policy aim, the rules in question are not appropriate to achieve that aim or necessary in order to do so. In particular, the French rules do not genuinely reflect a concern to attain that aim and have not been pursued i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manner in the light of that aim.

As regards, next, early retirement with immediate payment of pension, the Court holds that, as with respect to the service credit, the French rules, although ostensibly neutral, are liable to result in a much higher proportion of women than men receiving the benefit of it. Again, the Court considers that, subject to assessment by the national court, such a difference in treatment is not justified, as the French rules do not genuinely reflect a concern to attain the abovementioned legitimate social policy aim and have not been pursued i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manner in the light of that aim.

Lastly, the Court examines whether the discrimination identified in the scheme involving the service credit and early retirement with immediate payment of pension may be justified on the ground that EU law³⁾ allows Member States to maintain or adopt measures providing for specific advantages in order to make it easier for the underrepresented sex to pursue a vocational activity or to prevent or compensate for disadvantages in professional careers. The Court answers in both cases in the negative, considering that the measures in question are not of a nature such as to offset the disadvantages to which those workers are exposed by helping them in their professional life and thereby ensure full equality in practice between men and women in working life.

3) Article 141(4) EC, now Article 157(4) TFEU.

NOTE: A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allows the courts and tribunals of the Member States, in disputes which have been brought before them, to refer questions to the Court of Justice about the interpretation of European Union law or the validity of a European Union act. The Court of Justice does not decide the dispute itself.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or tribunal to dispose of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Court's decision, which is similarly binding on other national courts or tribunals before which a similar issue is raised.

Unofficial document for media use, not binding on the Court of Justice.

The full text of the judgment is published on the CURIA website on the day of delivery.

Press contact: Christopher Fretwell ☎ (+352) 4303 3355

Des images du prononcé de l'arrêt sont disponibles sur "Europe by Satellite" ☎ (+32) 2 2964106

●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유럽인권재판소(ECtHR)

-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사건의 판결: 고용계약의 적법성과 비례성

2014년 6월 12일,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application no. 56030/07) 사건에서 (9대 8의 표결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상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¹⁾가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동 사건은 교회 교리에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공공연하게 참여한 후, 가톨릭 교리 및 윤리를 가르쳤던 결혼한 신부(priest)이자 다섯 아이 아버지의 고용계약 비갱신과 관련이 있다. ECtHR은 종교 교사가 교회의 대변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회가 해당 교사에게 특별한 충성을 기대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교사가 교육적 관념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 교육적 관념과 교사의 개인적 신념 사이의 차이가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ECtHR은 스페인 법원이 충분히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가톨릭교회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오는 존경에 의해 부여된 한도 안에서 자세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평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청원자 José Antonio Fernández Martínez는 1937년에 태어나서 스페인의 Cieza에 살고 있는 스페인인이고, 1961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84년 그는 바티칸에 독신주의로부터의 특별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즉각적인 답변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는 1985년에 결혼하여 다섯 자녀를 두었다. 그는 1991년부터 계속 매년 갱신계약을 통해 Murcia 지역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가톨릭 교리와 윤리를 가르쳤다. 1996년 11월, Murcia 지역신문 La Verdad는 Martínez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신부의 “선택적 독신을 위한 운동(Movement for Optional Celibacy)”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해당 기사는 낙태, 이혼, 성적취향 및 피임에 관한 교회 입장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여러 참여자들의 견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Martínez와 가족사진을 함께 신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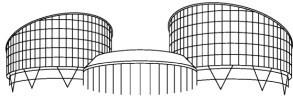
1997년 9월 15일, 그는 바티칸에서 발급해 준 칙서를 통해 독신주의로부터 특별허가를 수여받았는데, 현지 주교가 달리 결정하지 않고 추문이 없는 한도에서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다고 씌어 있었다. 1997년 9월 29일 주교는 교육부에 Martínez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Martínez는 관련 결정에 대해 행정당국에 청원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후 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2007년 12월 11일, 그는 고용계약의 비갱신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ECtHR에 청원을 제출하였다. ECtHR은 고용 또는 기한부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교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히 추문의 개념에 의존하였음에 주목하고, 청원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가톨릭교회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CtHR은 국가에 부여된 재량의 여지(margin of appreciation)와 관련하여, 청원자의 사생활 준수를 위한 권리의 개입이 비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판결하였다.

1)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2.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관련 보도자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Press Release
issued by the Registrar of the Court

ECHR 170 (2014)
12.06.2014

**The decision not to renew the contract, as religious education teacher,
of a Catholic priest who was married and had several children,
after his active involvement in a movement opposing Church doctrine
had been made public, was legitimate and proportionate**

In today's Grand Chamber judgment in the case of *Fernández Martínez v. Spain* (application no. 56030/07), which is final¹⁾,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ld, by nine votes to eight, that there had been: **no violation of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ase concerned the non-renewal of the contract of a married priest and father of five who taught Catholic religion and ethics, after he had been granted dispensation from celibacy and following an event at which he had publicly displayed his active commitment to a movement opposing Church doctrine.

In the Court's view, it was not unreasonable for the Church to expect particular loyalty of religious education teachers, since they could be regarded as its representatives. Any divergence between the ideas to be taught and the personal beliefs of a teacher could raise a problem of credibility when that teacher actively challenged those ideas.

The Court found that the Spanish courts had sufficiently taken into account all the relevant factors and had weighed up the competing interests in a detailed and comprehensive manner, within the limits imposed by the respect that was due to the autonomy of the Catholic Church. In the light of the review by the domestic courts, the principle of the Church's autonomy did not seem to have been invoked improperly: it could not be said that the Bishop's decision had been insufficiently reasoned or arbitrary, or that it had been taken with an aim that was incompatible with the exercise of the Catholic Church's autonomy, as recognised and protected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1) Grand Chamber judgments are final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ll final judgments are transmitted to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for supervision of their execution.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execution process can be found here: www.coe.int/t/dghl/monitoring/execution

Principal facts

The applicant, José Antonio Fernández Martínez, is a Spanish national who was born in 1937 and lives in Cieza (Spain). He was ordained as a priest in 1961. In 1984 he applied to the Vatican for dispensation from celibacy, but did not receive an immediate response. He was married in a civil ceremony in 1985, and he and his wife have five children. He taught Catholic religion and ethics in a State high school of the Murcia region from October 1991 onwards, under an annually renewable contract.

In November 1996 the Murcia newspaper *La Verdad* published an article about the “Movement for Optional Celibacy” of priests (MOCEOP) of which Mr Fernández Martínez was an active member. The article included comments by a number of participants indicating their disagreement with the Church’s position on abortion, divorce, sexuality and contraception, and it was illustrated by a picture of the applicant with his family.

On 15 September 1997 Mr Fernández Martínez was granted dispensation from celibacy by the Vatican in a rescript, which also released him from the rights and duties associated with his former clerical status. The rescript further indicated that he could no longer teach religion in a State school, unless the local Bishop decided otherwise, and provided there was no “scandal”. On 29 September 1997 the Bishop of Cartagena inform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it was not renewing Mr Fernández Martínez’s contract.

Mr Fernández Martínez first appealed to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gainst the decision not to renew his contract, but he was unsuccessful. He then initiated proceedings for wrongful dismissal before the Murcia employment tribunal, which upheld his claim and ordered his reinstatement with the payment of salary arrears, characterising the non-renewal as a “dismissal”. The tribunal found that he had been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his family situation and his membership of the “Movement for Optional Celibacy” of priests.

The Education Ministry and the Diocese appealed against that decision. In a judgment of 26 February 2001 the High Court of Justice upheld their appeal. The court took the view that the Bishop, by virtue of his prerogatives under the Code of Canon Law, had merely sought to ensure that the teacher observed his duty of discretion and that his personal situation did not give rise to any scandal. If necessary, and in view of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rescript releasing him from celibacy, the Bishop had been obliged not to renew his contract. The High Court of Justice found that, since the renewal of the contract was subject to the Bishop’s annual approval, the case concerned the non-renewal of a temporary contract and not a dismissal.

Mr Fernández Martínez lodged an *amparo* appeal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dismissed the appeal. The Constitutional Court took the view that the decision not to renew his contract was not based on any discriminatory intention related to his family situation and that it had been the applicant himself who, of his own free will, had made public both his family situation and his membership of MOCEOP. The court

emphasis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of selecting and recruiting teachers of Catholic religion in State schools and pointed out that religious education teachers in Spain had a special status which justified taking into account their religious beliefs when they were chosen. The Constitutional Court noted that the reason for the non-renewal decision had been a newspaper article which had given rise to a “scandal” – according to the arguments of the Diocese – because it had made public two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nt already known to the Diocese: his family situation as a priest who was married and had several children, and his membership of a movement which challenged certain precepts of the Catholic Church. That publicity constituted the factual basis for what the Bishop regarded as the “scandal”.

Complaints, procedure and composition of the Court

Relying in particular on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Mr Fernández Martínez complained that his contract of employment had not been renewed. He alleged that this was an interference with his private and family life.

The application was lodged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11 December 2007. The Court delivered a Chamber judgment on 15 May 2012. On 18 July 2012 the applicant requested that the case be referred to the Grand Chamber under Article 43 (referral to the Grand Chamber) and on 24 September 2012 the panel of the Grand Chamber accepted that request. A public hearing was held on 30 January 2013.

Judgment was given by the Grand Chamber of 17 judges, composed as follows:

Dean **Spielmann** (Luxembourg), *President*,
Guido **Raimondi** (Italy),
Mark **Villiger** (Liechtenstein),
Isabelle **Berro-Lefèvre** (Monaco),
Ján **Šikuta** (Slovakia),
George **Nicolaou** (Cyprus),
András **Sajó** (Hungary),
Ann **Power-Forde** (Ireland),
Işıl **Karakaş** (Turkey),
Angelika **Nußberger** (Germany),
André **Potocki** (France),
Paul **Lemmens** (Belgium),
Helena **Jäderblom** (Sweden),
Valeriu **Griţco** (the Republic of Moldova),
Faris **Vehabović** (Bosnia and Herzegovina),
Dmitry **Dedov** (Russia) and,

Alejandro **Saiz Amaiz** (Spain), ad hoc Judge,

and also Johan **Callewaert**, *Deputy Grand Chamber Registrar*.

Decision of the Court

Article 8

The Court reiterated that there was no general right to employment or to the renewal of a fixed-term contract. However, there was no reason of principle why the notion of “private life” should be taken to exclude professional activities. In the present case, private life and professional life were particularly intertwined, as factors relating to private life were regarded as qualifying criteria for the professional activity in question. The Court thus found Article 8 applicable, as the non-renewal of the applicant’s contract, on account of events mainly relating to personal choices he had made in the context of his private life, had seriously affected his chances of carrying on his specific professional activity.

The Court note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acted in accordance with the 1979 Agreement between Spain and the Holy See, supplemented by the Ministerial Order of 11 October 1982, which was an international treaty and incorporated as such into Spanish law in conformity with the Spanish Constitution. The non-renewal of the applicant’s contract of employment had thus been based on the applicable Spanish law.

The Court noted that the Bishop had relied in particular on the notion of “scandal” to justify his decision. Even though the notion of scandal was not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part of the Code of Canon Law concerning religious education teachers, it could be considered to refer to notions that were themselves in the canons such as “true doctrine”, “witness of Christian life” or “religious or moral considerations”. Those provisions expressed specific requirements with foreseeable effects. Since Mr Fernández Martínez had been the director of a seminary, he could have foreseen that the public display of his militancy against certain precepts of the Church would be at odds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canon law and would not be without consequence. On the basis of the clear wording of the Agreement between Spain and the Holy See, he could also have reasonably foreseen that in the absence of a certificate of suitability from the Church his contract would not be renewed. The Court found that the non-renewal of his contract was thus in accordance with the law.

Like the parties, the Court took the view that the decision not to renew the applicant’s contract pursued the legitimate aim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Catholic Church, and in particular its autonomy as to the choice of persons qualified to teach religious doctrine.

As regards the autonomy of faith groups, the Court noted that religious communities traditionally and universally existed in the form of organised structures. The right of believers to freedom of religion meant

that they should be allowed to associate freely, without arbitrary State intervention.

The autonomous existence of religious communities went to the very heart of the protection which Article 9 of the Convention afforded. It had a direct interest, not only for the actual organisation of those communities but also for the effective enjoyment by their members of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Were the organisational life of the community not protected by Article 9 of the Convention, all other aspects of the individual's freedom of religion would become vulnerable.

Howev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did not enshrine a right of dissent within a religious community. In the event of any disagreement between a religious community and one of its members, the individual's freedom of religion was exercised by the option of freely leaving the community.

Respect for the autonomy of religious communities recognised by the State implied, in particular, that the State should accept the right of such communities to react,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rules and interests, to any dissident movements emerging within them that might pose a threat to their cohesion, image or unity. It was therefore not the task of the national authorities to act as the arbiter between religious communities and the various dissident factions that existed or might emerge within them.

The Court reiterated that, but for very exceptional cases,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as guaranteed under the Convention excluded any discretion on the part of the State to determine whether religious beliefs or the means used to express such beliefs were legitimate. Moreover, the principle of religious autonomy prevented the State from obliging a religious community to admit or exclude an individual or to entrust someone with a particular religious duty.

As a consequence of their autonomy, religious communities were entitled to demand a certain degree of loyalty from those working for them or representing them.

The Court, whilst observing that Mr Fernández Martínez had not received the dispensation from the obligation of celibacy until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newspaper article, took the view that, by signing his successive employment contracts, he had knowingly and voluntarily accepted a special duty of loyalty towards the Catholic Church, which limited the scope of his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to a certain degree. Such contractual limitations were permissible under the Convention where they were freely accepted. The Court was not convinced that at the time of the publication of the article in *La Verdad*, this contractual duty of loyalty had ceased to exist. In choosing to accept a publication about his family circumstances and his association with a protest-oriented meeting, Mr Fernández Martínez had severed the bond of trust that was necessary for the fulfilment of his professional duties.

The Court observed that Mr Fernández Martínez had voluntarily been part of the circle of individuals who were bound by a duty of loyalty towards the Catholic Church. The fact of being seen as campaigning in movements opposed to Catholic doctrine clearly ran counter to that duty. In addition, there was little

doubt that the applicant, as former priest and director of a seminary, had been or must have been aware of the substance and significance of that duty.

Mr Fernández Martínez had been able to complain about the non-renewal of his contract before the Employment Tribunal and then before the Murcia High Court of Justice, which had examined the lawfulness of the measure in question under ordinary labour law, taking ecclesiastical law into account, and had weighed up the competing interests of the applicant and the Catholic Church. At last instance the applicant had been able to lodge an *amparo* appeal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Since the reasoning for the non-renewal decision had been strictly religious, the domestic courts had considered that they had to confine themselves to verifying respect for the fundamental rights at stake.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taken the view that the State's duty of neutrality precluded it from ruling on the notion of "scandal" used by the Bishop to refuse to renew the contract, or on the merits of the optional celibacy of priests as advocated by the applicant. It had examined the extent of the interference with the applicant's rights and had found that it was neither disproportionate nor unconstitutional, but that it could be justified in terms of respect for the lawful exercise by the Catholic Church of its religious freedom in its collective or community dimension.

The Court was of the view that the domestic courts had taken into account all the relevant factors and had weighed up the interests at stake in detail and in depth, within the limits imposed on them by the necessary respect for the autonomy of the Catholic Church. In the light of the review exercised by the national courts, it did not appear that the autonomy of the Church had been improperly invoked: the Bishop's decision could not be said to have contained insufficient reasoning, to have been arbitrary, or to have been taken for a purpose that was unrelated to the exercise of the Catholic Church's autonomy.

Having regard to the margin of appreciation afforded to the State, the Court found that the interference with the applicant's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life had not been disproportionate. The Court concluded by nine votes to eight that there had been no violation of Article 8.

Having regard to its conclusion under Article 8, the Court found that there was no need to examine the other complaints separately.

Separate opinions

Judges Spielmann, Sajò, Karakaş, Lemmens, Jäderblom, Vehabović, Dedov and Saiz Arnaiz expressed a joint dissenting opinion; Judges Spielmann, Sajò and Lemmens expressed a joint dissenting opinion; Judges Sajò and Dedov each expressed a dissenting opinion. These opinions are annexed to the judgment.

The judgment is available in English and French.

This press release is a document produced by the Registry. It does not bind the Court. Decisions,

judgments and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Court can be found on www.echr.coe.int. To receive the Court's press releases, please subscribe here: www.echr.coe.int/RSS/en or follow us on Twitter [@ECHRpress](https://twitter.com/ECHRpress).

Press contacts

echrpess@echr.coe.int | tel: +33 3 90 21 42 08

Denis Lambert (tel: + 33 3 90 21 41 09)

Tracey Turner-Tretz (tel: + 33 3 88 41 35 30)

Céline Menu-Lange (tel: + 33 3 90 21 58 77)

Nina Salomon (tel: + 33 3 90 21 49 79)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set up in Strasbourg by th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in 1959 to deal with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0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유럽인권재판소(ECtHR)

- Svinarenko and Slyadnev v. Russia 사건의 판결: 미결구금 중 굴욕적인 대우

2014년 7월 17일,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Svinarenko and Slyadnev v. Russia* (application nos. 32541/08, 43441/08)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유럽인권협약상 제3조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prohibition of torture and of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¹⁾, 제6조 1항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a fair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²⁾의 위반이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동 사건은 미결구금(detention on remand) 상태에 있는 죄수를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새장 같은 철창에 가두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ECtHR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청원자 Aleksandr Svinarenko와 Valentin Slyadnev는 각각 1968년과 1970년에 태어난 러시아인으로, Svinarenko는 Murmansk 지역에서 복역 중에 있으며, Slyadnev는 Magadan 지역의 Sinegorye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다. 두 명의 청원자는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폭력 사용을 동반한 강도질을 비롯한 갱단의 회원으로 자행한 수 개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Magadan 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두 명의 청원자는 2004년 6월에 무죄선고를 받고 방면되었다. 2004년 12월, 러시아대법원은 배심원 후보 중 일부가 일정 정보를 감추었으며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판결을 파기하였다. 2005년 12월 두 청원자는 다시 구금되었으나, 2006년 12월 Slyadnev는 폭력 사용에 있어 갈취 및 자의적 불법행위로 기소되고 Svinarenko는 석방되었다. 2007년 6월,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으며, 2007년 8월 Svinarenko는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었다. 2009년 3월, Svinarenko는 최종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2005년 12월 이후 계속 구금 상태에 있었던 Slyadnev는 폭력 사용의 자위적 불법행위로 기소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미결구금 상태의 청원자들은 심리 중에 가로 약 1.5m, 세로 약 2.5m에 해당하는 금속 우리(metal cage)에 갇혀 있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우리 옆을 지켰다. Svinarenko는 석방된 뒤 주정부에 보상을 청구하였고, 2009년 10월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으며, 2010년 3월 형사소송의 결과 그가 입은 비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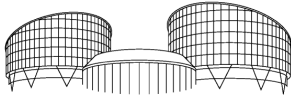
청원자들은 재판 진행 중 법정에서 금속 우리에 가두는 것 - 러시아에서 미결구금 상태의 모든 혐의자 및 피고에 적용되는 일반적 관행 - 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과도한 기간의 경과와 동 협약 제6조 1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각각 2008년 5월 5일과 6월 2일 ECtHR에 청원을 제기하였다.

ECtHR은 Svinarenko가 석방되고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협약 위반의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러시아정부의 항변을 기각하였다. 위에 언급한 관행은 과거 소련연방에 속했던 여러 국가들의 일반적 관행이었지만, 최근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야에서는 이를 중지하였다. 러시아는 1994년 이를 도입하였는데, 법정에서 금속 우리에 구금하는 것이 승인된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ECtHR은 법규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사회의 법의 지배에 근본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행은 공포되지 않은 장관 명령으로 규율되고 있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결국 ECtHR은 문제의 관행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며, 굴욕적인 대우는 안전상 고려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ECtHR은 Svinarenko의 경우 6년 10개월, Slyadnev의 경우 6년 반에 걸친 형사소송기간은 불합리한 것이었으므로 협약 제6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1)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 "1. In the determination of his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or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is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within a reasonable time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Judgment shall be pronounced publicly but the press and public may be excluded from all or part of the trial in the interests of morals, public order or national security in a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interests of juveniles 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life of the parties so require, or to the extent strictly necessar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publicity would prejudice the interests of justice."

〈관련 보도자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Press Release
issued by the Registrar of the Court

ECHR 223 (2014)
17.07.2014

Practice of keeping remand prisoners in a metal cage during court hearings amounted to degrading treatment

In today's Grand Chamber judgment in the case of Svinarenko and Slyadnev v. Russia (application nos. 32541/08 and 43441/08), which is final¹⁾,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ld, unanimously, that there had been:

a violation of Article 3 (prohibition of torture and of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a violation of Article 6 § 1 (right to a fair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case essentially concerned the practice of keeping remand prisoners in metal cages during hearings on their cases.

The Court found that holding the applicants in a metal cage during court hearings on their case was a degrading treatment for which there could be no justification. Such treatment constituted in itself an affront to human dignity in breach of Article 3.

Principal facts

The applicants, Aleksandr Svinarenko and Valentin Slyadnev, are Russian nationals who were born in 1968 and 1970 respectively. Mr Svinarenko is currently serving a prison sentence in the Murmansk region. Mr Slyadnev lives in the settlement of Sinegorye in the Yagodninskiy District of the Magadan Region (Russia).

Both applicants were charged, in 2002 and 2003 respectively, with a number of offences, committed as members of a gang led by another man, including robbery with the use of violence. Mr Svinarenko was detained on remand, while Mr Slyadnev was serving a prison sentence following his conviction in another case. Shortly after his early conditional release from prison, he was remanded in custody in connection

1) Grand Chamber judgments are final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ll final judgments are transmitted to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for supervision of their execution.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execution process can be found here: www.coe.int/t/dghl/monitoring/execution

with the new charges.

In a first jury trial before the Magadan Regional Court, both applicants were acquitted and released in June 2004. In December 2004, the Supreme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quashed the judgment – in particular on the grounds that some of the candidate jurors had concealed certain information from the court and that the presiding judge had failed to sum up all evidence – and remitted the case for fresh examination. The hearings in the second trial against the applicants, who were tried together with two co-defendants, were adjourned on several occasions, among other things because jurors were unable to attend. In December 2005, both applicants were again detained on remand. In December 2006, Mr Svinarenko was acquitted, while Mr Slyadnev was convicted of extortion and “arbitrary unlawful acts” with the use of violence. In June 2007, the Supreme Court quashed that judgment and remitted the case for re-hearing. Mr Svinarenko was detained on remand in August 2007 in connection with another criminal case.

The third trial was also delayed on several occasions, in particular because the number of candidate jurors was initially insufficient at several hearings. In March 2009, Mr Svinarenko was ultimately acquitted of all charges against him and Mr Slyadnev, who had continuously been detained on remand since December 2005, was convicted of “arbitrary unlawful acts” with the use of violence and acquitted on the remaining charges.

While in detention on remand, the applicants were placed in a metal cage – measuring about 1.5 by 2.5 metres – during court hearings. Armed guards remained beside the cage.

Following Mr Svinarenko’s acquittal, he brought compensation proceedings against the State. In October 2009, he was awarded compensation for pecuniary damage and, in March 2010, for non-pecuniary damage incurred by him as a result of his criminal prosecution.

Complaints, procedure and composition of the Court

Relying on Article 3 (prohibition of torture and of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applicants alleged that their confinement in a metal cage in a courtroom during their trial – a standard practice applied to each and every suspect and accused detained on remand in Russia – had amounted to degrading treatment. They also complained under Article 6 § 1 (right to a fair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about the excessive length of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m.

The case originated in two applications lodged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5 May and 2 July 2008 respectively. In its Chamber judgment of 11 December 2012, the Court joined the applications, declared them partly admissible and held unanimously that there had been a violation of Article 3 and a violation of Article 6 § 1. The case was referred to the Grand Chamber at the Government’s request. A Grand Chamber hearing took place on 18 September 2013.

Judgment was given by the Grand Chamber of 17 judges, composed as follows:

Dean **Spielmann** (Luxembourg), *President*,
Josep **Casadevall** (Andorra),
Guido **Raimondi** (Italy),
Ineta **Ziemele** (Latvia),
Mark **Villiger** (Liechtenstein),
Peer **Lorenzen** (Denmark),
Boštjan M. **Zupančič** (Slovenia),
Danutė **Jočienė** (Lithuania),
Ján **Šikuta** (Slovakia),
George **Nicolaou** (Cyprus),
Luis **López Guerra** (Spain),
Vincent A. **de Gaetano** (Malta),
Linos-Alexandre **Sicilianos** (Greece),
Helen **Keller** (Switzerland),
Helena **Jäderblom** (Sweden),
Johannes **Silvis** (the Netherlands),
Dmitry **Dedov** (Russia),

and also Michael **O'Boyle**, *Deputy Registrar*.

Decision of the Court

The Court rejected a preliminary objection by the Russian Government that Mr Svinarenko could not claim to be a victim of the alleged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as he had been fully acquitted and awarded compensation. The Court noted that, although the compensation proceedings had come to an end in March 2010, the Government had not made their plea before the Chamber took its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and the merits on 11 December 2012. The Government had not pointed to any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would have prevented them from raising the objection in a timely manner.

Article 3

The Court examined the complaint under Article 3 in so far as it concerned the third trial against the applicants. They had not raised their complaint before any national court, alleging that confinement in a metal cage in the courtroom was a standard practice in Russia, thus implying that there had been no legal remedies to be exhausted at national level. The Court noted that they had therefore been required to lodge their applications no later than six months from the time the situation complained of ceased to exist. By having lodged their application in 2008, they had complied with the six-month rule only with regard to

the third trial.

Placing defendants in metal cages when they appeared before a court in criminal proceedings while remanded in custody had been a standard practice in several Member States, which had previously belonged to the Soviet Union, but some of them had abandoned this measure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Armenia and Georgia. In Russia, where it had been introduced in 1994, recourse to metal cages in courtrooms remained an approved practice. The Court noted that the practice was regulated by an unpublished ministerial order, which was problematic in itself, given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rule of law in a democratic society which presupposed the accessibility of legal rules.

In recent years, the Court had examined, in Chamber judgments, a number of cases concerning the use of metal cages in the courtroom and had found a violation of Article 3 in this regard for the reason that such treatment had not been justified by security considerations given the circumstances of the respective case, such as the applicants' personality, the charges against them, their criminal records or their behaviour.

In the present case, the Grand Chamber noted the Government's argument that recourse to a cage was justified to ensure proper conditions for holding the trial, having regard to the violent nature of the crimes with which the applicants had been charged, together with, in particular, their criminal records and victims' and witnesses' fears of the applicants' unlawful behaviour. However, while agreeing that order and security in the courtroom were indispensable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Court underlined that the means chosen for ensuring such order and security must not involve measures of restraint which by virtue of their level of severity would bring them within the scope of Article 3. Article 3 prohibited in absolute terms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hich is why there could be no justification for any such treatment.

As to whether the "minimum level of severity" had been reached to bring the measure within the scope of Article 3, the Court observed that the applicants had been tried by a jury court, that a large number of witnesses had been present and the hearings had been open to the general public. The Court considered that the applicants' exposure to the public eye in a cage must have undermined their image and must have aroused in them feelings of humiliation, helplessness, fear, anguish and inferiority. They had been subjected to this treatment during the entire jury trial which lasted more than a year, with several hearings held almost every month.

Furthermore, the applicants must have had objectively justified fears that their exposure in a cage during court hearings conveyed to their judges a negative image of them as being dangerous, thus undermining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Court found no convincing arguments to the effect that holding a defendant in a cage during a trial was a necessary means of physically restraining him, preventing his escape, dealing with disorderly or

aggressive behaviour, or protecting him against aggression from outside. Its continued practice could therefore only be understood as a means of degrading and humiliating the caged person.

Against that background, the Court found that the applicants had been subjected to distress of an intensity exceeding the unavoidable level of suffering inherent in their detention during a court appearance, and that, therefore, their confinement in a cage had attained the “minimum level of severity” to bring it within the scope of Article 3.

The Court did not consider that the use of cages in this context could ever be justified under Article 3, contrary to what the Government had sought to show in their submissions to the Grand Chamber. Furthermore, the Court was of the view that the threat to security alleged by the Government was, in any event, unsubstantiated.

The Court reiterated that the very essence of the Convention was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that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as an instrument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human beings required that its provisions were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to make its safeguards practical and effective. It found that holding a person in a metal cage during a trial constituted in itself – having regard to its objectively degrading nature which was incompatible with the standards of civilised behaviour that were the hallmark of a democratic society – an affront to human dignity in breach of Article 3.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applicants’ confinement in a metal cage in the courtroom had amounted to degrading treatment. There had accordingly been a violation of Article 3.

Article 6

As regards the complaints under Article 6 § 1 concerning the length of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applicants – which had lasted six years and ten months in the case of Mr Svinarenko and six and a half years in the case of Mr Slyadnev – the Court did not see any reason to depart from the Chamber’s finding. In particular, there had been significant delays attributable to the State during the period when the case was pending before the trial court for the second and the third time which had amounted to at least a year. During that time the applicants had been detained on remand, so that particular diligence had been required of the courts to administer justice expeditiously.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complexity of the case and the difficulties which the trial court had faced, the Court underlined that the State remained responsible for the efficiency of its justice system.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length of the criminal proceedings had been unreasonable. There had accordingly been a breach of Article 6 § 1.

Just satisfaction (Article 41)

The Court held that Russia was to pay each applicant 10,000 euros (EUR) in respect of non-pecuniary

damage, and it was to pay EUR 2,000 to Mr Svinarenko and EUR 4,000 to Mr Slyadnev in respect of costs and expenses.

Separate opinions

Judges Raimondi and Sicilianos, as well as Judges Nicolaou and Keller, expressed joint concurring opinions. Judge Silvis also expressed a concurring opinion. These opinions are annexed to the judgment.

The judgment is available in English and French.

This press release is a document produced by the Registry. It does not bind the Court. Decisions, judgments and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Court can be found on www.echr.coe.int. To receive the Court's press releases, please subscribe here: www.echr.coe.int/RSS/en or follow us on Twitter [@ECHRpress](https://twitter.com/ECHRpress).

Press contacts

echrpess@echr.coe.int | tel: +33 3 90 21 42 08

Nina Salomon (tel: + 33 3 90 21 49 79)

Tracey Turner-Tretz (tel: + 33 3 88 41 35 30)

Céline Menu-Lange (tel: + 33 3 90 21 58 77)

Denis Lambert (tel: + 33 3 90 21 41 09)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as set up in Strasbourg by th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in 1959 to deal with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0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국제법 관련 국내법

▶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6. 17. 공포, 대통령령 제25384호)

• 개정이유

특별귀화 대상자 중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해당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의 신고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적상실 신고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화허가 심사 방법 및 절차의 개선(제4조)

귀화허가 신청자의 품행 및 기본 소양에 대한 심사를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중심으로 하던 것을 필기시험·면접심사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귀화 대상자 범위의 명확화(제6조제1항제1호)

특별귀화 대상자 중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 관련 공로자의 범위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

다. 국적 관련한 신청·신고 방법 및 절차의 명확화(현행 제22조 삭제, 제25조의2 신설)

귀화허가 신청 등 국적과 관련된 신청·신고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 일신전속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현재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확인적 성격을 가지는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 등(제28조의2제4항)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은 현행 2회에서 1회로 조정함.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6. 18. 공포, 법무부령 제817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화허가 재신청의 경우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화허가 신청, 국적취득 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국적 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청·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그 동안의 국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국적취득 신고 수수료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정하고,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및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4. 6. 25. 공포, 대통령령 제2539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세율의 불균형 완화와 국내 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설탕과 유채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설탕과 유채의 경우에는 각각 5만 메트릭톤(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에 대하여 각각 5퍼센트(설탕의 경우 기본세율은 30퍼센트, 유채의 경우 기본세율은 1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연처리 우피(牛皮)의 수입전량에 대하여 1퍼센트(기본세율은 3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尿素) 14만 메트릭톤에 대하여 3퍼센트(기본세율은 8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 6. 25. 공포, 대통령령 제25399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2014. 4. 29.)됨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추가하고, 콜롬비아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재시행을 금지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週期)로 그 조치를 완화하여야 하는 대상국가에 콜롬비아공화국을 추가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 6. 30. 공포, 대통령령 제25433호)

• 개정이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4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제5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문화재청장 및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 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문화재청장 및 경상북도지사로 변경함.

나.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의2 신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상북도의 국장급 공무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등이 되도록 함.

다.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13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7. 3. 공포, 외교부령 제1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504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 사항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7. 16. 공포, 대통령령 제25475호)**

• **개정이유**

새로운 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하

기 위하여 전문무역상사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어 활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간 수출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2285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제12조의2 신설)

전문무역상사는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이고,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실적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무역거래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되, 수출규모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농업·어업·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제12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무역상사의 국내외 홍보, 우수제품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 수행기관의 지정(제54조의2 신설)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은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대외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등을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라.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4조의6 신설)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에 두는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조달청 소속 고위공무원,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임원, 정부간 수출계약의 해당 물품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 수행기관의 임원 및 민간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7. 22. 공포,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6호, 고용노동부령 제0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7. 30. 공포, 기획재정부령 제43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될 때에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 총 220개 품목 중 질소발생기와 냉동·냉각장치 등 1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진동 복합시험기와 반도체 소자측정기 등 3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8. 27. 공포, 대통령령 제2556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북아시아 3개국(대한민국·일본·중국) 간 협력사업의 추진 및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경제 국가에 대한 경제외교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8. 27. 공포, 외교부령 제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북아시아 3개국(대한민국·일본·중국)간 협력사업의 추진 및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경제 국가에 대한 경제외교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급 또는 6등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563호, 2014. 8.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외교부 조직 및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사무운영 직렬 1명(9급)의 정원과 전기운영 직렬 1명(9급)의 정원을 각각 위생 직렬 1명(9급)의 정원과 조리 직렬 1명(9급)의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제법 관련 판례

▶ 난민 신청 외국인 변호인접견 허가 가처분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5. 선고 2014헌사592 결정)

[판시사항]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접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접견을 허가하도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난민법(2013. 7. 1.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인신보호법(2008. 6. 22.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판례집 12-2, 381, 385-386

[전 문]

[당 사 자]

청 구 인 모하마드 ○○(Mohammed ○○) 대리인 변호사 이일
피신청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본안사건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주 문]

피신청인은 변호인의 2014. 4. 25.자 신청인에 대한 변호인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8. 카르툼 공항에서 출국하였고, 201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하면서, 2013. 9.경 동족 학살을 위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및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접견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14. 4. 25.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본안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은 변호인이 신청인을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4. 25.자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가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의 효력을 본안사건 종국결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2014헌사592)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난민법 제12조),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및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된다(인신보호법 제12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피의자와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를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접견을 불허한 것이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항고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2014. 5. 19. 재항고심에 접수되어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

다. 신청인의 변호인접견을 즉시 허용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출입국관리, 환송구역 질서유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3. 결 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판시사항]

- [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외국인인 청구인들의 참정권, 입국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에 관한 기본권주체성 또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이 부인된 사례
- [2]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1]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 [2] 국적에 관한 사항은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인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출입국·체류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복수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복수국적자로 인하여 외교적 보호권이 중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한편, 국적법은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회복허가라는 별도의 용이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재 2006. 3. 30. 2003헌마806, 판례집 18-1상, 381, 389 헌재 2011. 9. 29. 2009헌마351, 판례집 23-2상, 659, 669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 공보 180, 1453, 1460

[2]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판례집 12-2, 167, 176

[전 문]

[당 사 자]

청구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담당변호사 현경대 외 3인

[주 문]

청구인 김○남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사단법인 ○○ 유권자 총연합회(이하 ‘청구인 총연합회’라 한다)는 2009. 5. 14.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김○남은 심판청구 당시 만 69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84. 6. 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다.

청구인 설○혁은 1960. 3. 17., 청구인 이○창은 1947. 12. 10., 청구인 최○선은 1951. 3. 5., 청구인 최○종은 1948. 7. 19.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청구인 김○남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 청구인 설○혁, 이○창, 최○선, 최○종(이하 ‘설○혁등’이라 한다)은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 청구인 총연합회는 위 모든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 설○혁등

(1)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미국 시민권자인 청구인 설○혁등이 미국 시민권을 일정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한다.

(2)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만 65세 미만인 청구인 설○혁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 김○남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 27년간 살아왔고 심판청구 당시 만 69세였던 청구인 김○남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 상실 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 김○남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만 65세 이상의 외국인과 사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청구인 총연합회

청구인 총연합회는 구성원인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심판대상조항들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그 결과 청구인 총연합회의 정치적 영향력도 제한받게 되어 그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므로 위 청구인의 참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총연합회의 심판청구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7. 29. 2008헌마664등).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들은 국적 포기 내지 상실에 관한 규정들로서 그 규율대상이 개인이고 청구인 총연합회는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 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나머지 청구인들을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총연합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설○혁등의 심판청구

(1) 국적법 제10조 제1항

청구인 설○혁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 설○혁등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참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정권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 설○혁등이 주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입국의 자유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9. 29. 2009헌마351 ;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 참조).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은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헌재 2006. 3. 30. 2003헌마806)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 설○혁등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 설○혁등의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

위 조항은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게 비로소 적용되는 조항인데, 청구인 설○혁등은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이러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설○혁등의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연혁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조항은 1948. 12. 20. 제정된 국적법 제12조 제4호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국적법이 1997. 12. 13. 전부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가 제15조 제1항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쟁점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가 제한되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추구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남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청구인 김○남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재산권 취득 및 행사에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일 뿐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김○남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또한 청구인 김○남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복수국적 보유가 허용되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규율대상은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율대상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외국인인바, 두 집단은 평등권을 논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청구인 김○남이 주장하는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 紐帶)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는바(헌재 2000. 8. 31. 97헌가12),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이러한 보호와 복종관계를 복수의 국가가 함께 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곧, 출입국·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의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 관한 내용을 입법자가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뿐만 아니라 국적의 유지,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국가가 공유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추가로 취득하는 자는 그 외국법의 지배에 복종하고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외국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호와 복종관계를 복수의 국가에게 인정하는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출입국·체류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복수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복수국적자로 인한 섭외적 법률분쟁 또는 국제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어느 나라의 외교적 보호권이 우선하는지 등이 불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물론 인권으로서의 국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국적의 문제가 배타적인 국내관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주된 목적은 무국적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로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하고 국적을 박탈당하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적박탈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한편, 우리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출생, 인지 등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제12조 제1항) 일정한 기간 동안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13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의 방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고, 이때 청구인 김○남과 같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영주의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따라서 비록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겠으나, 입법자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허가라는 별도의 용이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길을 열어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후천적 복수국적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면탈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남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남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별지 1]

청구인 명단

1. 사단법인 ○○ 유권자 총연합회대표자 이사 배○철
2. 김○남
3. 설○혁
4. 이○창
5. 최○선
6. 최○종

[별지 2] 관련조항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 할 수 있다.

▶ 미국 파트너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에서 정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중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의 의미와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의 의미 /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위 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떠한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거주자가 될 수 없으나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체에게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특별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조합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단체가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로서 취급이 같은 이상 조합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단체를 위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목적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단서가 규정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중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옳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어떠한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고,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중 구성원이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 (e)호 (ii)목, 제3조 제1항 (b)호 (i)목, (ii)목, 제1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11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국제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

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목과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목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목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목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목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VC 아시아'라 한다)와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인 Asia Investors L.L.C.(이하 'AI'라 한다)가 각 66.7%와 33.3%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룩셈부르크에 Korea Dairy Luxembourg S.A.R.L(이하 'KDL'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다시 KDL과 내국법인인 디엠프드 주식회사(이하 '디엠프드'라 한다)의 경영진이 각 88.75%와 11.25%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1999. 12. 10. 벨기에 법인인 Korea Dairy Holdings N.V.(이하 'KD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② KDH는 1999. 12. 21. 덴마크 축산개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디엠프드의 발행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한 다음, 2005. 7. 20. 이를 원고에게 170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벨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는 이유로, KDH의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④ 이에 피고는, KDH와 KDL이 한·벨 조세조약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가운데 디엠프드 경영진에 귀속되는 11.25%를 제외한 KDL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88.75%는 CVC 아시아가 그중 66.7%의, AI의 주주들인 미국의 Travelers Property Casualty(지분 20%)와 Metlife(지분 20%) 및 홍콩의 Citicorp Securities Asia Pacific Ltd.(지분 60%, 이하 'CSAP'라 한다)가 그중 33.3%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5. 1. 원고에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CVC 아시아 및 홍콩의 CSAP에 귀속된 양도소득 부분에 관하여 2005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KDH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양도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그 양도 이후 곧바로 청산절차를 개시한 점, KDH는 이 사건 주식 매각에 따른 분배금을 수령한 직후 CVC 아시아와 AI에 송금하였을 뿐 그 스스로 수취한 분배금이 없는 점, KDH와 KDL은 독립적인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았고 고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CVC 아시아는 대한민국 내 투자로 인한 조세를 비과세 받거나 감면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각국의 조세제도와 조세조약 등을 연구·분석하여 벨기에에 KDH를, 룩셈부르크에 KDL을 각 설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DH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명목상의 회사에 해당하고 CVC 아시아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88.75% 중 66.7%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CVC 아시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CVC 아시아가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 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CVC 아시아는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면서 고유의 사업 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VC 아시아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CVC 아시아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CVC 아시아가 자신에 귀속된 양도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그 구성원인 투자자들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AI가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유치·운용하면서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하여 온 점, 미국의 사법(私法)상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으로 취급되는 점, 비록 AI가 미국 세법상 유한책임회사가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성원과세를 선택하였더라도 유한책임 회사에 대한 미국 세법상 취급에 따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I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88.75% 중 33.3%의 실질귀속자를 AI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AI의 구성원들을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88.75%

중 33.3%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그중 홍콩의 CSAP 지분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설령 AI를 실질귀속자로 보더라도 AI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이상 AI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홍콩의 CSAP 지분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AI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AI에 귀속된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AI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88.75% 중 33%의 실질귀속자를 AI로 본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 중 AI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AI에 귀속된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AI에 귀속된 양도소득 중 그 구성원인 CSAP 지분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각 호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한·미 조세조약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얻은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미국법인’을, (ii)목에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를 들고 있는데,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1항 (e)호 (ii)목은 “‘미국법인’ 또는 ‘미국의 법인’이라 함은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적 없는 단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그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떠한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단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거주자가 될 수 없으나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단체에게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특별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조합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단체가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로서 취급이 같은 이상 그 조합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단체를 위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목적이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단서가 규정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중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옳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어떠한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중 그 구성원이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인 AI는 미국 세법에 따라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 중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단체로서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심리하여 AI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확정할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AI에 귀속된 양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AI에 귀속된 양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원천지국에 의한 과세로부터의 면제와 관련된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의 의미나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상 처분 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333 결정)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1996. 3. 29. 조약 제1345호로 체결된 것) 제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협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재결과 국세청장 등의 통지들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규정한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중 ‘처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협정조항을 적용하여 각하재결을 한 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정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정조항은 이 사건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통지들은 모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통지들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행정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함에 그치고 있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위 두 집단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에서 서로 상이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행정심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심판을 억제하여 행정청과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 이와 같이 처분 개념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1996. 3. 29. 조약 제1345호로 체결된 것) 제9조 제2호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중 ‘처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2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7. 12. 27. 2006헌바34, 판례집 19-2, 787

나. 헌재 2001. 6. 28. 2000헌바30, 판례집 13-1, 1326, 1336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판례집 23-1하, 377, 386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강○덕대리인 변호사 김진환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635 행정심판재결처분취소등

[주 문]

1.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중 ‘처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 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캐세이패시픽항공(이하 ‘캐세이패시픽’이라 한다)이 단체 항공권에 이 증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11.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에 따라 캐세이패시픽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청구인 주장의 과세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탈세제보를 불문처리하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제1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4. 28. 국세청장에게 위 불문처리에 대하여 재심요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5. 13.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제2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시 2010. 5. 14. 국세청장에게 부당이익에 의한 탈세가 위 협정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회신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신청을 하였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0. 6. 23. 청구인에게 부당이익인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캐세이패시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상호면세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제3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0. 7. 14. 감사원장에게 위 제1 내지 제3통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장은 2010. 7. 19.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 민원을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제4통지’라 한다)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 8. 2. 이 사건 제3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제5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0. 7. 19.자의 민원이송회신을 통지받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요청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10. 10. 4.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 감사관들의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통지’라 한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1. 7. 8.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1.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즉시 처리하라. 2. 감사원장은 서울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직접감사를 실시하라. 3. 기획재정부장관은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유권해석을 실시하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청구는 2011. 10. 18. “청구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격상 민원에 불과하여 민원회신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청구인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15959 탈세제보 처리 이행청구 등 사건에 대한 각하재결).

바.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재결 및 이 사건 제1 내지 제3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635)를 제기하면서, 위 소송계속 중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11아403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8. 17. 위 협정조항에 대하여는 각하, 위 행정심판법조항들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그러자 청구인은 2012. 9. 11. ① 위 협정조항, ② 위 행정심판법조항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2조 제3항 제1호, ④ 이 사건 제1 내지 제6통지 및 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재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3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처분 개념을 불완전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문제삼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조항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중 ‘처분’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1996. 3. 29. 조약 제1345호로 체결된 것) 제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협정조항’이라 한다), ②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중 ‘처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라 한다, 한편 위 조항들은 이후 개정되었으나 단순한 자구 수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실질적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③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2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조항들’이라 한다), ④ 이 사건 제1 내지 제6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들’이라 통칭한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15959 탈세제보 처리 이행청구 등 사건에 대한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각하재결’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밑줄 친 부분에 한한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1996. 3. 29. 조약 제1345호로 체결된 것)
제9조 국제항공운수에 대한 이종과세 회피

2. 일방 계약당사자의 항공사가 공동계산, 공동 항공운송 경영 또는 국제공동경영체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

하여 동 계약당사자의 지역에서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총수익, 소득 또는 이윤은 타방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타방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이윤세 및 기타 모든 수입·수익·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국세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이 사건 협정에 따라 상호면세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거부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협정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재판에서 전제가 되고, 이 사건 협정은 부당이득에 대하여도 면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이 사건 통지들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 제18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임이 명확함에도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에서 처분개념에 대하여 불완전하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통지들은 위헌인 이 사건 협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헌이고, 이 사건 각하재결도 위헌인 행정심판법조항들에 따른 것이므로 위헌이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사건 각하재결을 취소하고, 국세청장 등의 이 사건 제1 내지 제3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다.

먼저 당해사건의 청구 중 ‘이 사건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에 있어서 이 사건 협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재결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행정소송법 제19조), 재결 자체의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흠을 말하는 것으로,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을 근거로 각하재결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협정 조항은 적용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정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정조항은 이 사건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당해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 내지 제3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34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통지를 한 행정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임에도 국세청장을 상대로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단순한 ‘응답’ 내지는 ‘처리결과통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 제3 각 통지는 탈세제보 불문처리의 당부를 묻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단순한 ‘응답’

또는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모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제3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협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헌재 2010. 12. 28. 2009헌바25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당해소송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서울행정법원 2011아4034)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조항들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258 참조).

다. 이 사건 통지들 및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인 것이다(헌재 2007. 4. 26. 2004헌바1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통지들 및 이 사건 각하재결에 관한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의 입법연혁

행정심판절차와 관련하여 1951년 제정되어 주요 내용의 개정없이 시행되어 오다 1984. 12. 15. 법률 제 3755호로 폐지된 구 소원법(訴願法)에서는, 처분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제1조에서 간접적으로 소원의 대상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규정하였다가, 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행정심판법을 제정하면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3조 1항), 처분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 행정소송법(1951. 8. 24. 법률 제213호로 제정되고,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도 처분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행정소송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규정하였다(제1조). 그러나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취소소송을 비롯한 항고소송의 종류를 규정하면서(제4조),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규정하고(제19조, 제2조 제1항 제1호), 이를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함으로써(제38조 제1항, 제2항)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과 재결임을 명시하여 처분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1984. 12. 15. 행정심판법을 제정하고 행정소송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각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처분의 개념을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행정심판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처분개념을 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이러한 처분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때에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외에도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조항이고, 다른 구체적인 개별적 자유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이므로, 평등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183 참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헌법 제1조 제1항, 제2항(대한민국의 국제, 정체, 국민주권), 제7조 제1항(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제23조 제1항(재산권), 제26조 제1항, 제2항(청원권), 제29조 제1항(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제30조(구조를 받을 권리), 제119조 제2항(대한민국의 경제질서)의 각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의 대상을 한정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위 각 헌법 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등 참조).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행정심판 대상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함에 그치고 있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헌재 2001. 6. 28. 2000헌바3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들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등에 대한 단순한 ‘응답’ 또는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으로 그 자체로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처분개념을 한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바, 위 두 집단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에서 서로 상이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은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이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족하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까지 행정심판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 사건 통지들과 같은 유형의 행위를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시간·노력·비용이 소요되어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받지 못하는 제약을 받게 되지만, 이는 불필요한 심판을 억제하여 행정청과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 이와 같이 처분 개념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이 사건 협정조항,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조항들, 이 사건 통지들,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 (청구인 적격)

-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편의치적선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호창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2인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517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는 해상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및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에메랄드 라인 오버시즈 인코퍼레이션은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선적국인 파나마국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용선자인 퍼스트쉽핑은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과 임원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 이 사건 선박은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항해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되었을 뿐이고 파나마국의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인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고 선원들 중 파나마국 사람은 없는 점, 퍼스트쉽핑이 작성한 선원고용계약서에는 그 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선장과 기관장인 원고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경매절차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를 포함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법인이거나 국민이고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선박우선

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이 원고들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우선택권의 성립여부나 그 준거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부산가정법원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4드단○○○○ 판결)**

원 고 김AA

피 고 누BB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30. 양산시 물금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의 여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5. 피고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혼인하고, 2013. 12. 30. 양산시 물금읍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3.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잠자리를 거부하고, 2014. 3. 14. 가출하여 외국인여성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3. 14. 부산 북부경찰서 구포지구대에 ‘피고가 채팅하고 있는 원고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2014. 3. 24. 위 사건을 이첩 받은 부산지방법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피고가 채팅하고 있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의 손이 원고의 뺨에 살짝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대한민국에 시집와서 생활한지 3일 가량 지났는데 생활이 힘들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이 사건을 송치 받은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5. 22.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철

새소식 요약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 6.3(화) 외교부는 3~4월 두 달간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프로젝트의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총 160건의 프로젝트 중 학계·언론계·홍보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7개 프로젝트팀을 2014년도 “국민 공공외교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우리나라가 제5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2014.6.2~5, 파리 유네스코 본부) 기간 중 시행된 2014-18년 임기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선거에서 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 윤병세 장관은 우나 마웅 르윈 미얀마 외교장관과 6.5(목) 오전 미얀마 네피도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 한-아세안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지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6월 11일(수)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백진현 재판관이 투표 참여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15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선되었다.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영국 정부의 주도로 6.12(목)-13(금)간 런던에서 개최중인 「분쟁해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인정 및 조치를 촉구하였다.
- 제2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6월 12일 베이징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이 공동 협력사업을 시행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4.6.10.-12.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7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는 6.12(목) 동 회의 폐회시 2015-16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회의 의장을 한국의 오준 주유엔 대사가 수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6.16(월) 로리 에반스 EU 집행위 수산총국장 및 데이빗 오설 리반 EU 대외관계청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IUU 어업 문제 등 한-EU간 현안 및 제반 지역·국제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제2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6월 17일(화)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어, IAEA에서의 이란 핵문제 현황, 핵비확산을 위한 IAEA 검증체제 강화 동향, 한-IAEA 안전조치 분야 협력 강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19(목)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카자흐스탄의 예를란 이드리소프 외교부장관이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하였다.
-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6.15-25)는 현지 시각 6.22(일) 오전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남한산성(Namhansanseong)’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키로 결정하였다.

새소식 요약

- 6.26(목) 제5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의 외교부 및 어업관련 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닝보에서 개최되어, 서해수역을 포함한 양국간 해상에서의 조업질서 및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상의 여러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23(월)~27(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원자력공급그룹 총회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대외발표문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 7.1(화) 우리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일본의 각의결정과 관련하여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 외교부는 2014.7.2(수) 2014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5명을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www.UNrecruit.go.kr)를 통해 발표하였다.
- 「2014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이 2014. 7.2(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남미 정부 고위인사들과 우리 정부, 경제계, 학계 등 각계 인사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 7.3(목)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중국측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하였다.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7.4(금)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조지아 및 아르메니아와의 문화협정에 서명하였다.
- 주유엔한국대표부 한충희 차석대사가 2014년 7월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에서 60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1년 임기의 의장에 선출되었다.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7.9(수) 저녁 신라호텔에서 이슬람 및 중동 관계인사 100여명을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만찬을 개최하였다.
- 한-케냐 경제공동위 참석차 케냐 방문 중인 이경수 차관보는 7.8(화) 오전(현지시간) 케냐 재무부에서 한-케냐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상원조기본협정 등 3개 협정에 서명하였다.
- 외교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년공공외교단」 2기 출범식을 7.11(금) 10시 조태열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청사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세계경제포럼의 「북극 관련 글로벌 의제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금년 9월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 신동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미국 뉴욕에서 「제4차 유엔 개발협력포럼 고위급 회의」 참석 계기에, 7.9(수)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G2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한-ILO 협력사업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겸 박길성 사단법인 세계한류학회 회장은 7월 15일(화) 외교부 청사에서 한류 확산과 공공외교 증진을 위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새소식 요약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4.7.17(목)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개최 한-비셰그라드 그룹간 외교장관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7.15(화)-16(수) 양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하였다.
- 7.18(금) 정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켓 발사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외교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식 고취 및 정부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돕고자 ‘독도 강좌’를 개최하였다.
- 유엔을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대표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오랜 기간 야심차게 준비해 온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국제적 협의가 최근 완료(2014.7.19.)되었으며, 동 SDG 제안서가 유엔 총회에 제출되었다.
- 7.24(목)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전 심화로 인해 가자지구내 민간인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며 많은 국내 피난민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유엔 기구를 통한 100만불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시민적·정치적 규약위원회는 7.15(화)-16(수)간 일본의 제6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7.24(목) 동 심의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공개하였다.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7.28(월)-29(화)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메콩측 의장국인 씨하삭 태국 외교장관대리와 회의를 공동 주재하였다.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7.29(화) 중국 사회과학원측과 공동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명회」를 주최하였다.
- 아랍에미리트) 최대 에미리트인 아부다비의 왕세제실이 파견하는 UAE 청년 대사들 28명이 8.1(금)-21(목)간 방한, 한국전문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8.5(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8.6-7간 개최된 제70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 미국 상무부는 8.7(현지시간) 한국산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상계관세 연례재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에서 동국제강 등 한국기업 6개사에 대해 모두 0.11%의 미소 마진으로 판정, 사실상 무혐의 발표를 하였다.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8.9(토)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15차 ASEAN+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로 17년이 된 ASEAN+3의 협력을 점검하고, 미래방향을 진단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윤병세 외교장관은 8.10(일) 14:30-18:30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21차 아세안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새소식 요약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8.10(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4차 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EAS 국가간 협력 성과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안중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20(수)-21(목)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 8.19(화) UN이 제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이하여, 외교부와 KOICA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내 소재 18개의 인도적 지원 비영리단체 및 국제기구들과 함께 세계 인도주의의 날 온·오프라인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외교부는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 영상 3편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KTX 공항철도 모니터(~10월 중순까지), 유튜브,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방영하였다.
- 8.21(목) 우리 정부는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의 미국인 기자 참수와 관련하여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였다.
- 외교부는 3국협력 사무국과 공동으로 8.25(월)-30(토)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한·일·중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외교부는 노후화된 여권발급 통합 전산망(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2015.3월까지 모두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미래의 자원대국인 몽골을 8.25(월)-27(수)간 공식 방문하여, 8.26(화) 오전 룽산완단 볼드 몽골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너러브 알탕후약 총리 및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을 각각 예방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2014년 8월 26일 서울에서 제3차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2014년 8월 29일(금) 오후 서울에서 아нил 와드하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차관과 「제4차 한·인도 차관급 외교정책안보대화」를 개최하였다.
- 8.29(금) 우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3주년을 맞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였다.

2014년도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7개 프로젝트 선정 (2014. 6. 3)

1. 외교부는 3~4월 두 달간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프로젝트의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총 160건의 프로젝트 중 학계·언론계·홍보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아래 7개 프로젝트를 2014년도 “국민 공공외교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프로젝트명	실행 지역
한글 : “너 빼고 다 아는” (뉴욕 맨하튼에서 한글 전시회)	미국
‘Korea-Germany’ Unification Talk Concert (한·독 통일 토크콘서트)	독일
2014 GMV 코트디부아르 의료봉사 : ‘굿바이 부를리, 하이피레’	코트디부아르
A.S.K(Asian Sing Korean Soul) : 아시아여, 한국의 감성을 노래하라	인도
글을 그리다 : 한국문학 예술번역 프로젝트	프랑스
DKKF : Denmark Kimchi Festival	덴마크
‘세계가 한글을 입다’: 전세계 한글 티셔츠 공모 페스티벌	국내

2. 이번에 선정된 7개팀은 △한글, △의료봉사, △예술, △한식(김치)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북미·유럽·아프리카 등 전세계 외국 대중에게 한국을 알리는 ‘매력전도사’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 이 중 2개팀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민 공공외교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연속성 있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공공외교의 효과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와 여러 뮤지션 등이 참여하는 ‘A.S.K’팀은 작년 케냐에서 K-Pop 오디션을 진행해 아프리카에 K-Pop을 알렸으며, 금년에는 인도에 K-Pop을 소개할 예정

※ 우리 의료진과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굿바이 부를리’팀은 작년에 코트디부아르에서 현지 풍토병인 부를리궤양을 치료하고, 주민들과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소개하였으며, 금년에도 동일한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

3. 외교부가 국정과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사업은 국민이 민간외교관으로서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특색있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직접 시행하고,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선정된 7개팀은 정부로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예산을 지원 받아, 금년 중 “국민 공공외교관”으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프로젝트 진행상황은 공공외교 포털(www.publicdiplomacy.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개별 프로젝트 결과는 12월 중 개최 예정인 민·관 합동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4. 외교부는 이러한 공공외교 공모 사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민간 공공외교 활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외교시대’에 걸맞게 “국민 공공외교관”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 정부, 2014-18년 임기 무형유산위원회 진출 성공 -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과정 참여와 우리 문화 홍보 기반 마련 - (2014. 6. 5)

1. 우리나라가 제5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2014.6.2~5, 파리 유네스코 본부) 기

간 중 시행된 2014-18년 임기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선거에서 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아태지역(그룹 IV) 4개 공석을 두고 한국, 인도, 몽골, 아프가니스탄, 사모아 등 5개국이 경합을 벌였으며, 우리나라는 총 161개 협약 당사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142개국으로부터 126표를 획득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 총 24개국으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로서, 이번 위원국 진출로 우리나라는 각국이 등재 신청하는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등의 결정 과정에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 ‘농악’, 2015년 ‘줄다리기’(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4개국 공동등재 추진 중), 2016년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위원국 수임을 통해 앞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한편, 우리 정부의 이번 위원국 당선은 2008-12년 임기에 이어 두 번째로서, 그간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분야 보존·보호 및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병세 장관, 미얀마 ‘개혁·개방 파트너’로서 한-미얀마 양국 관계 강화 방안 협의 (2014. 6. 5)

1. 6.4.(수)~6.7.(토) 일정으로 미얀마를 공식 방

문 중인 윤병세 장관은 우나 마웅 르윈(Wunna Maung Lwin) 미얀마 외교장관과 6.5.(목) 오전 미얀마 네피도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 한-아세안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지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우나 마웅 르윈 장관 방한 계기 회담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된 양국간 양자회담이다.

※ 우나 마웅 르윈 미얀마 외교장관, 한-아세안 센터 주최 「한-아세안 관계 조망 국제 컨퍼런스」 참석차 14.2.25.~27.간 방한, 2.27. 한-미얀마 외교장관 회담 개최

2. 우나 마웅 르윈 장관은 2011년 미얀마 민선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경제, 행정 등 3개 분야 개혁 조치를 소개하였다. 윤 장관은 미얀마 개혁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과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이 미얀마의 ‘개혁·개방 파트너’로서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3. 윤 장관은 한국은 미얀마의 4대 투자국(‘13년 누적 43억불), 미얀마는 베트남과 함께 한국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14년 ODA 2억불)로서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였다.

○ 윤 장관은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토대 위에서 ‘아웅산 묘역 순국사절 추모비’ 건립이 가능했다고 하고 미얀마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으며, 우나 마웅 르윈 장관은 추모비를 양국간 우정의 상징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아울러 윤 장관은 이번 회담 계기 체결된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을 통해 미얀마 투자의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우나 마웅 르윈 장관은 동 협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동·서남아를 잇는 “land bridge”로서 미얀마의 인프라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5. 윤 장관은 KOICA 주관 새마을 운동 농촌종합개발사업, 미얀마 개발연구소(MDI) 설립 지원 등 양국간 개발 협력을 통해 미얀마의 경제 및 사회 분야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하였고, 우나 마웅 르윈 장관은 우리측의 ODA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6. 한편, 윤 장관은 미얀마가 1997년 ASEAN 가입 후 올해 첫 ASEAN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8월 ARF 외교장관회의 및 11월 ASEAN 관련 정상회의 의장서명에서 우리의 이러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얀마 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우나 마웅 르윈 장관은 미얀마와 북한 사이에 더 이상 군사협력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얀마는 핵확산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UN 안보리 관련 결의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7. 우나 마웅 르윈 장관은 그간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아세안 공동체의 형성·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활동에 한국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윤 장관은 5월에 개최된 제24차 아세안 정상회의 시 미얀마의 훌륭한 의장국 수행을 평가하면서,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추진한 미얀마 컨벤션 역량 강화 사업 등 한국도 관련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아울러 윤 장관은 금년 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시 떼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의 참석 및 원활한 개최를 위한 미얀마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8. 한편, 윤 장관은 6.5.(목) 외교장관 회담 후에 한-미얀마 투자 보장 협정에 서명하고, 떼인 세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 및 쉘레 만(Shwe Mann) 하원의장 예방 및 미얀마 컨벤션 역량 강화사업 기증식 참여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6.6.(금) 양곤에서 개최될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 제막식 참석으로 미얀마 공식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2014~2023년 임기) 재선 (2014. 6. 12)

1. 6월 11일(수)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백진현 재판관이 투표 참여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15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선되었습니다.
 -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매 3년 마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7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10명의 후보자가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들은 2023년까지 향후 9년간 재판관직에 재임할 예정이다.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 관련 국제법을 집대성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해양경계획정, 어업,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함.
2.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를 가진 해양국으로서 평화로운 해양질서의 안정적인 유지와 해양법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국익과 직결되며,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왔습니다.

- 우리나라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시부터 재판관을 배출했으며, 백진현 재판관이 재선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재판소 설립 이래 3회 연속(27년간) 재판관을 진출시킴.
- 3. 백진현 재판관의 재선은 국제재판소 재판관 수임을 위한 동인의 전문성과 경력을 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이 재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 해양법협약 성안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주요 해양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차관, 런던 국제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인정 및 조치를 촉구 (2014. 6. 13)

1.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영국 정부의 주도로 6.12(목)-13(금)간 런던에서 개최중인 「분쟁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Global Summit on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 Conflict)」에 참석, 인류가 염원하는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과 충분한 책임구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조 차관은 특히 지난 세기에 있었던 가장 끔찍한 전시 성폭력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며, 과거 과오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을 강조하였다.
2. 조차관은 6.12(목) 오후에 개최된 ‘분쟁하 성폭력 방지 및 대응’과 ‘국가 및 국제사회의 책임구명 조치 개선’ 주제의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상기 언급 이외에도 분쟁하 성폭

- 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1) 정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2)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 과정에의 여성 참여 확대 및 3)불처벌 관행의 종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인권선도국가로서 우리 정부가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3. 금번 회의는 정상/각료급 국제회의로서 작년 9월 제68차 유엔 총회시 발표된 ‘분쟁하 성폭력 종식 선언(A Declaration of Commitment To End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승인한 120여개국 대표가 참석하고 있으며, 윤병세 외교장관을 포함, 총 20여개국의 정상/각료들이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itiative)’의 핵심참여인사(Champion)로 활동 중이다.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한·중 공공외교 협력 진일보 (제2차 공공외교포럼 개최) (2014. 6. 13)

1. 제2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6월 12일 베이징 세인트 레지스(St. Regis) 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이 공동 협력사업을 시행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한·중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중국 공공외교협회가 주관한 금번 포럼에는 양국 정부, 학계, 언론계, 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 250여명이 참석
 - 금번 포럼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1년간의 공공외교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2. 이날 개최식에서 윤병세 장관은 한·중 양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정을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두 나라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하나로 연결되어 새로운 동북아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을 모아가지고 강조하였다. (권영세 주중대사 축사 대독)

○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의 발전 방향은 서로 통한다고 지적하며, 양국 국민들이 각자의 희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실현하자고 역설(류젠차오(Liu Jianchao) 외교부 부장조리 대독)

3. 이번 포럼에 참여한 양국 대표단들은 3개 세션에서 각각 발제를 나누어 말아 ‘한·중 공공외교 정책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서로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한풍(漢風)과 한류(韓流)’, ‘한·중 우호의 미래적 발전’ 이라는 주제로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공외교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은 첫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제1차 공공외교포럼 및 그 후속조치들을 평가하면서, △한·중 녹색봉사단 사업과 △양국 간 한국어의 해와 중국어의 해 지정 사업을 양국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제안

4. “아름다운 희망을 함께 이루어 가자”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 결과, 한·중 양국은 △금번 포럼 부대 행사로 개최되었던 한·중 인터넷 오피니언 리더 원탁회의를 정례화하고, △한·중 녹색봉사단 사업을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양국 실무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녹색봉사단 사업 등의 구체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 예정

※ 양국 대표단은 폐막식에서 △대중매체의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영

상물들의 상대국 시장 진출 지원, △양국 협력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지원, △청소년 간 교류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사회와의 화합, △인터넷 오피니언 리더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제2차 한중공공외교포럼 발표문’을 채택

오준 주유엔대사,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 수임 (2014. 6. 13)

1. 2014. 6. 10.-12.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7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당사국회의(의장 : 카마우 주유엔 케냐대사)는 6.12.(목) 동 회의 폐회시 2015-16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회의 의장을 한국의 오준 주유엔 대사가 수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장애인 권리협약(CRPD)

- 2006년 채택, 2008년 발효되었으며, 전 세계 10억 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중심적인 국제 규범

※ 우리나라는 동 협약 성안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한 조항(6조)을 제안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8.12월 가입

2.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은 147개 협약당사국 및 장애 관련 전 세계 NGO들이 참여하는 당사국회의를 주재하고, 협약당사국들을 대표하여 유엔 및 장애 관련 NGO들과의 협력 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권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 역대 당사국회의 의장: 멕시코(2008-10), 스웨덴(2011-12), 케냐(2013-14)

3.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그간 장애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기

여 및 경험을 살려 국제무대에서 장애관련 이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장애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기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IUU 어업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EU측 협조 당부 (2014. 6. 17)

1. 런던 개최 다자회의* 참석 후 브뤼셀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6.16(월)「로리 에반스(Lowri Evans)」EU 집행위 수산총국장 및「데이빗 오설리반(David O'Sullivan)」EU 대외관계청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IUU 어업 문제 등 한-EU간 현안 및 제반 지역·국제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다.

* 6.12-13, 분쟁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

2. 조 차관은 에반스 수산총국장을 면담하여 IUU 어업 문제와 관련 한-EU 수산당국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한-EU 수산당국간 협의(6.9-11, 서울) 결과에 대한 EU측 평가를 청취하였다.

○ 아울러, 조 차관은 최근 우리가 취한 IUU 어업 근절 조치를 설명한 후, 우리 정부의 IUU 어업 근절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불법어업국 지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수산총국장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에반스 수산총국장은 한-EU 수산당국간에 과거와 달리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조 차관은 오설리반 사무차관을 면담하여, 양

측간 주요현안으로 대두된 불법어업국 지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EU 양국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대외관계청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기본협정과 FTA(2010년 서명)에 이어 최근 이루어진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 정식 서명(5.23)으로 한국이 EU와 정무, 경제, 안보 3대 분야에서 모두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 이외에도 조 차관과 오설리반 사무차관은 주요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 정세, △북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한-EU간 전략적 공조를 글로벌 이슈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2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2014. 6. 17)

1. 제2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6월 17일(화)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어, △ IAEA에서의 이란 핵문제 현황, △ 핵비확산을 위한 IAEA 검증체제 강화 동향, △ 한-IAEA 안전조치 분야 협력 강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동 협의회는 김문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과 IAEA 테로 바리오란타(Tero Varjoranta) 안전조치 담당 사무차장 간에 이루어졌다.

※ 금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6월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

2. 북핵 문제 관련, 우리측은 IAEA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핵심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IAEA가 앞으로도 북핵 검증 분야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IAEA측은 2009년 4월 IAEA 사찰관의 북한 철수 이후에도 사찰 복귀에 대비한 상시적인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양측은 북한의 핵 활동 동향 및 검증 문제에 있어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아울러, 양측은 핵확산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조치 분야에서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 확산 우려국들의 의심 구매활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양측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IAEA 안전조치 적용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2014. 6. 19)

1. 6.19(목)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카자흐스탄측 예를란 이드리스프(Erlan IDRISOV) 외교부장관이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하였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2. 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카자흐간 인적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우리 정상의 카자흐 방문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 인적 교류 현황(‘13년)

- 우리국민의 카자흐스탄 방문 약 45,000여명, 카자흐인의 방한 약 13,000여명

3.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 종교, 유학,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및 한 번에 30일 초과 또는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증 필요

4. 한·카자흐 양국은 2014년 중 발효를 목표로 양국의 국내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5.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카자흐 양국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국민이 일반여권으로 사증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 및 지역 총 116개(‘14.6.19 현재)

남한산성(Namhansanseong) 세계유산 등재 -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최종 결정 - (2014. 6. 22)

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15-25)는 현지 시각 6.22(일) 오전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남한산성(Namhansanseong)’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키로 결정하였다.

○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 자연, 복합) 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21개국으로 구성)로서 우리나라는 2013-17년 임기 위원국(2013.11월 위원국 당선)으로 동 위원회에 참여 중

※ 정부는 금번 위원회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주유네스코

대표부, 주카타르대사관, 경기도청, 경기도 광주시청, ICOMOS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2. 특히,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 및 ICOMOS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로서 문화유산의 등재 여부를 위원회에 권고)는 동 유산이 17세기 초 비상시 임시 수도로서 당시 일본과 중국의 산성 건축 기술을 반영하고 서양식 무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방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 또한,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무기체제의 변화상을 잘 나타내며,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부연

※ 금번 위원회에서는 총 41건의 등재 신청서가 심사되고 있는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ICOMOS, IUCN)는 △ 등재(inscribe) 15건, △ 보류(referral) 2건, △ 반려(deferral) 14건, △ 등재불가(not to inscribe) 5건 등의 의견을 권고

3.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 인접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주민들이 유산 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추가적으로 권고하였는바, 문화재청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동 마스터플랜은 △ 유산의 중장기적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세계유산 전문 연구·교류 기능 강화, △ 지역주민 참여 촉진 등을 통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또한, 남한산성 본성의 미정비구간(제1남용

성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훼손된 여장을 전면 보수하는 등 유산의 가치보전 및 역사성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

4.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7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며 한국을 지켜낸 역사적 증거인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국 및 세계유산위원국들과의 접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바, 금번 등재 결정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한 우리 문화재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금번 ‘남한산성’ 등재 결정으로 석굴암·불국사 및 종묘(1995),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조선왕릉(2009) 등 총 11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

제5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결과 (2014. 6. 26)

1. 6.26(목) 제5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의 외교부 및 어업관련 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닝보에서 개최되어, △서해수역을 포함한 양국간 해상에서의 조업질서 및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상의 여러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금번 회의시, 우리측에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서해어업관리단·주중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 관계관이 참석

○ 중국측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鸣)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중국해경국·산둥성·랴오닝성 관계관이 참석

※ 동 회의는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 회의(서울), 2013.7월 제3차 회의(중국 옌타이), 2014.12월 제4차 회의(목포)를 개최
- 2013년 상반기에 동 회의를 매년 2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2. 회의에서 양측은 금년 상반기 서해에서의 조업질서와 관련, 불법조업 단속사례 및 무허가·영해침범·특정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위반사례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0%와 68%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업질서가 양측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단속 실적(1-5월간) : 92척(전년동기 229척 대비 약 60% 감소)

※ 중대위반사례(1-5월간) : 28척(전년동기 88척 대비 약 68% 감소)

3.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NLL 인접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고, 중국측이 동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감안하여 단속조사팀 추가 파견, 불법조업 어선의 즉각적인 퇴각, 어민대상 교육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에도 관련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동 문제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4. 양측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 국민방중시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 불법조업 단속 등 조업질서 강화 차원에서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 △잠정 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양국 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 공동단속 협조체제도 강화하기

로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서해해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양국간 장기적 어업·수산협력 차원에서 양국 전문가 상호교류 등 인적·기술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지속 증진,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간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한·중 수산협력 연구체제 구축,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기술적 교류 확대에 합의

5. 한·중 양측은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그동안 4차례 개최되는 동안 △양국간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어업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등 유용한 협의채널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제6차 회의를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 북한 핵문제 관련 심각한 우려 표명 (2014. 6. 28)

1. 6.23(월)~27(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총회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대외발표문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2.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은 이번 대외발표문을 통해 핵비확산 측면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9.19 공동성명에 부합하는 평화적인 방식

의 해결 방안 지지도 언급

- 금번 대외발표문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를 명시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외 메시지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
- 3. 원자력공급그룹(NSG)은 원자력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를 통해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1978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원자력 분야 48개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일본의 각의결정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4. 7. 1)

1.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
2.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4.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4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합격자 발표 (2014. 7. 2)

1. 외교부는 2014.7.2.(수) 2014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5명을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www.UNrecruit.go.kr)를 통해 발표하였다.
 - 합격자 15명은 금년 중 국제기구에 파견 예정
2.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제도는 우리나라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 정부의 경비 부담 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최대 2년간 파견하여 국제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구의 정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 정부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8명의 JPO를 선발하여 유엔 사무국,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에 파견
3. 정부는 JPO 파견과 더불어 유엔봉사단(UNV) 파견 등 「국제기구인사센터」를 통해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도 5.26.(월) - 5.29.(목) 총 4회에 걸쳐 「제7회 국제기구진출 설명회」 개최

“한국과 중남미는 서로에게 소중한 협력 파트너” - 윤병세 장관, 「2014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에서 밝혀 - (2014. 7. 2)

1. 「2014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이 2014. 7. 2.(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남미 정부 고위인사들과 우리 정부, 경제계, 학계 등 각계

인사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함께하는 미래, 성장하는 파트너십」(Sharing Vision, Deepening Partnership)을 주제로 △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의 발전 방향과 한-CELAC 간 협력 모색, △ 중남미의 도전 과제와 한-중남미간 협력 강화 방안, △ 국제 개발 금융기구를 통한 한-중남미간 경제협력 증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CELAC) : 중남미 33개국 전체를 포괄하는 최초의 지역협력체로, 회원국간 연대 강화와 경제적 보완성 증대 등을 위해 2011년 출범

2. 중남미에서는 CELAC 콰르테토*를 대표해 「마누엘 곤살레스 산스(Manuel González Sanz)」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 「리카르도 빠띠뇨(Ricardo Patiño)」 에콰도르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멕시코국제문제이사회(COMEXI),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브라질응용경제연구소(IPEA) 등 중남미 주요 정치·경제연구소와 콜롬비아국토개발금융공사(FINDETER), 페루개발금융공사(COFIDE) 등 중남미 개발은행의 고위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 CELAC 콰르테토(Cuarteto) : CELAC 전·현·차기 의장국에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을 더한 4개국으로 구성되어 대외적으로 CELAC을 대표

** 카리브공동체(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ARICOM) : 카리브 14개국간 단일경제시장 형성을 목표로 1973년 출범한 지역기구이며, 현 CARICOM 의장국인 앤티가바부다는 외교일정상 이번 포럼에 불참

- 한국측에서는 외교부 외에도 서울대, 선문대, 숭실대 등 학계 인사들과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수출입은행, BNP Paribas 등 유관 기관 및 기업 인사들이 연사와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였다.

3.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고위급포럼 개최사에서 한-중남미 외교관계가 지난 50여년간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하고, 최근 국제정세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채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지난 2011년 출범한 CELAC의 중남미 통합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중남미 관계가 가일층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 윤 장관은 개최식에서 “CELAC은 중남미·카리브 33개국 전체를 아우르는 최초의 지역협의체로서 중남미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남미 협력 분야는 무역과 투자를 넘어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개발협력, ICT, 환경, 보건·의료, 전자정부, 농업, 치안 등 실로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기후변화, 환경, 개발 및 빈곤퇴치, 사이버안보, 군축 및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미래동반자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4. 한-CELAC 협력세션을 주재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지역통합 움직임은 전략적 구호를 넘어 각 대륙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의 대세”라고 분석하고 CELAC이 중남미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중남미 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이자 UN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중층적이고 다양한 평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라틴아메리카 또한 한국에게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이번으로 7회째를 맞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고위급 인사 참석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정부간 중요한 협력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 고위급포럼에서는 중남미 정부 주요인사 외에 연구기관과 개발은행에서 고위급 인사가 참가하여 한국과 중남미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한-CELAC간 협력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우리와 중남미간 다층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책경험 공유 및 상호 관심분야에서 공동 재정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영사협정 체결 (2014. 7. 3)

1. 7.3(목)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중국측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하였다.
 -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2. 우리 정부는 한-중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중 영사협정 체결을 200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금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3. 한-중 영사협정은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시 즉시 통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양자 영사협정이며, 통상

국가간 영사관계는 <영사관계 비엔나협약(1963)>을 통해 규율되나 급증하는 한-중간 인적교류를 감안하여 보다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영사협력 체제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4일 이내 통보, 영사접견 4일내 실시 보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한-중 영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한-조지아/한-아르메니아 문화협정 체결 (2014. 7. 4)

1.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7.4(금)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조지아 및 아르메니아와의 문화협정에 서명하였다.
 - 니콜로즈 아프카자와 (Nikoloz Apkhazava) 주한조지아대사와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한-조지아 문화협정)」에 서명
 - ※ 한-조지아 문화협정 주요 내용
 -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체육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및 콘텐츠교류를 포함한 제반 협력 장려, △상대국 작품의 저작권 보호 등
 - 그란트 포고시안 (Grant Pogosyan) 주한아르메니아대사와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한-아르메니아 문화협정)」에 서명
 - ※ 한-아르메니아 문화협정 주요 내용
 - △문화 분야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 등 제반

협력 강화, △교육, 체육, 청소년 분야에서
의 협력 및 교류 상호 장려

2. 금번 조지아 및 아르메니아와의 문화협정 체결은 7.4(금)-9(수)간 외교부 주최로 개최되는 「2014 코카서스 문화축제」 계기에 추진된 것으로, 동 협정 체결이 양국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4 코카서스 문화축제(Caucasus Cultural Festival)

- 행사기간 및 장소 : 서울(7.4-6, 광진구 악스 코리아), 부산(7.9, 영도문화예술회관), 청송(7.10, 종합문화복지타운)
- 주요행사 : △조지아·아르메니아 공연단 공연, △사진전, △어린이 문화체험전, △아르메니아 유물체험전, △조지아·아르메니아 문화강연회 등

한중희 유엔차석대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의장 선출 (2014. 7. 7)」

1. 주유엔한국대표부 한중희 차석대사가 2014년 7월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본회의에서 60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1년 임기의 의장에 선출되었다.
 - UNCITRAL은 국제거래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상거래에 관한 분쟁과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의 상거래법의 조화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
2. 이번 한중희 주유엔차석대사의 의장 선출은 국제상거래법 분야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3. 한중희 의장은 7월 7일부터 1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47차 UNCITRAL 본회의 주제, △각 실무작업반 진행상황 보고 진행 및 작업결과물의 채택, △향후 과제 논의 등 국제거래법 현안 논의를 이끄는 한편, 의장 자격으로 UNCITRAL의 다양한 대외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4. 우리나라는 2004년 UNCITRAL 위원국이 된 이래 국제상거래에 관한 표준규범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지난 2012년 1월에는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여, 국제세미나 및 컨퍼런스, 모의유엔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상거래규범을 전파하는 허브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슬람과의 소통을 위한 외교부 장관 주최 「이프타르(Iftar)」 개최 (2014. 7. 8)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7.9(수) 저녁 신라호텔에서 이슬람 및 중동 관계인사 100여명을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만찬을 개최할 예정이다.
 - ※ 라마단(Ramadan) : 이슬람력 아홉 번째 달로, 예언자 마호메드가 코란의 첫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한달간 금식 및 수행을 하고 자선·관용·형제애를 실천(금년 라마단 기간 : 6.29-7.28)
 - ※ 이프타르(Iftar) : ‘금식을 깬다(break fasting)’라는 뜻으로 라마단 기간 중 매일 일몰이후 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하는 첫 식사(만찬)
2. 우리부는 2004년부터 10년간 이슬람 협력기구(OIC) 회원국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이프타르」를 개최해 왔으며, 이프타르 행사가 국내 거주 무슬림 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에는 국내거주 무슬림들과 다양한 이슬람 및 중동관련 인사들을 초청,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이슬람 협력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 이슬람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1969년에 발족된 이슬람 국가들의 협의체로 사우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5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

3. 특히, 이번 행사에는 사우디 출신의 나세르 알 마하셰르(한국명 나세일) S-oil 사장, 무슬림 다문화가족, 국내에서 연수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의사들,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아랍인 유학생 등 국내 거주 무슬림들과,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이진숙 MBC 보도본부장,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라 구단에서 활약했던 설기현 축구선수, 두바이 소재 부르즈 알 아랍(Burj Al-Arab) 호텔에서 수석주방장으로 활동했던 에드워드 권 등 언론, 문화, 체육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4. 우리부는 이프타르 행사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종교·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보다 포용력 있는 사회로 성숙해 가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한-케냐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관련 3개 협정 서명 (2014. 7. 9)

1. 한-케냐 경제공동위 참석차 케냐 방문 중인 이경수 차관보는 7.8(화) 오전(현지시간) 케냐 재무부에서 한-케냐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상원조기본협정 등 3개 협정에 서명하였다.
 - 케냐측은 Henry Rotich 케냐 재무장관이 동 3개 협정에 서명
 - 동 협정 서명식에는 케냐 유력 방송국, 신문사 등 다수 매체가 참석, 취재하였으며 양국 대표의 기자회견 실시

2. 금번 3개 협정 체결을 통해 한-케냐간 세제협력·투자보호·개발원조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를 계기로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케냐 간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이중부담 방지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 관련 국내법 시행 및 집행을 위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역외 탈세거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케냐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산을 수용 등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케냐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무상원조기본협정은 KOICA의 케냐 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허가, 편의 제공 및 특권, 면제 등을 규정

“청년공공외교단” 2기 선발 및 출범식 개최 (2014. 7. 9)

1. 외교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년공공외교단」 2기 출범식을 7.11(금) 10시 조태열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청사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청년공공외교단」 2기 단원 50명은 출범식 직후 1박 2일 간 강원도 원주로 워크숍을 떠나 상호 단합을 도모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구상할 예정이다.
2. 외교부가 6.5(목)-6.29(일) 간 실시한 「청년공공외교단 2기」 공모에는 총 410명의 청년들이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등을 통하여 최종 50명의 단원이 선발되었다.

- 약 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한국인 45명, 외국인 5명으로, 남성 11명, 여성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선발자는 미국, 일본, 중국(2명), 프랑스 국적 청년이다.

- 금번 청년공공외교단 2기 면접심사에는 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으로 활약을 펼쳤던 나승연 오라티오 공동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나승연 대표는 앞으로 「청년공공외교단 2기」의 멘토단으로서 단원들을 위한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3. 한편, 금번 「청년공공외교단」 2기에는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이브 제롬 코르비노 (Fabien Yves Jerome Corbineau, 한국명 최윤)가 명예단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계획이며, 외교부는 11일 출범식에서 파비앙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과거 프랑스 태권도 국가대표로 활약한 바 있는 파비앙은 한국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 명예단원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4. 이번엔 선발된 「청년 공공외교단」 2기 단원들은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시행하게 되며, 외교부는 활동비, 유니폼, 활동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 「청년공공외교단」 2기는 7-11월간의 활동에 대해 12월 중 결과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3기 모집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5. 외교부는 「청년공공외교단」 사업을 포함, 앞으로 청년층을 비롯하여 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세

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 비전 실현에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세계경제포럼 북극협의회 위원 위촉 (2014. 7. 10)

1.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의 「북극 관련 글로벌 의제 협의회(Global Agenda Council on the Arctic : 이하 북극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되어 금년 9월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 * 금년 6월말 슈밥 WEF 회장은 조 차관을 WEF 북극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7월초 조 차관이 이를 수락

- 북극협의회는 WEF가 주요 국제 이슈를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설립한 86개의 글로벌 의제 협의회*의 일환으로 2012년 출범하였으며, 북극 관련 정부 및 민간 고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 글로벌 의제 협의회는 80개 이슈별 협의회(글로벌·지역·산업 이슈)와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6개 일반협의회로 구성되며 2008년 설립

- * 제1기 북극협의회(2012-14년 활동)는 그린란드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극이사회 회원국의 정부 및 민간 고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

2. WEF 북극협의회는 2년의 활동기간 중 지속가능한 북극 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구축 방안”을 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인 바, 향후 북극 관련 이슈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북극의 해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북극 지역의 환경을 보호

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3. 조 차관은 금년 9월 이후 3-4차례의 화상회의, 11월 두바이 개최 글로벌 의제 정상회의 및 내년 1월 다보스 포럼 참석 등을 통해 북극 의제를 협의하며, 내년 6월경 1년차 활동의 성과를 담게 될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게 된다.
 - 조 차관은 2013.5월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옵서버 가입 과정에서 북극이사회 주요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3.5월 노르웨이 뉘올레슨(Ny-Alesund) 개최 “북극 국제 심포지움”에 기조연사로 초청되어 우리의 북극 활동 및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등 북극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4.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부터 북극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2002년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 뉘올레슨에 다산과학기지 설치를 통해 북극 과학조사 활동을 본격화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북극활동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전개한 결과 2013.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후 동 이사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외교부, ILO와 협력을 통해 G20 개발의제 이행에 앞장서다 (2014. 7. 10)

1.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미국 뉴욕에서 「제4차 유엔 개발협력포럼 고위급 회의」 참석 계기에, 7.9(수)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G2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한-ILO 협력사업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 * G20 개발의제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주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개발이 G20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이라는 국제사회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핵심적인 분야라는 것에 회원국들이 합의함.
2. 금번 MOU 서명은 작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자원개발 관련 공약* 이행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 G20 개발의제 인적자원개발 분야 공약: ‘고용시장 수요에 맞는 각 개도국의 직업훈련 역량 향상’
 - ILO는 G20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총괄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 분야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우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된다.
3. 따라서 MOU의 주요 내용은 G20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공약을 개도국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모잠비크와 네팔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모잠비크) 자원채취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 공동체 직업훈련 역량 강화 사업, (네팔)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지역고용센터 역량 강화 사업
4. 금번 협력사업 추진은 그간 정책 권고 위주로 진행된 G20 개발의제 논의를 개도국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 창출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세계 주요국들의 모임인 G20 그룹내 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편, 신 조정관과 라이더 사무총장은 양자간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적 근로여건 개선, 양질의 고용 확산 등을 위한 한-ILO

간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외교부-세계한류학회 간 업무협약서 체결” (2014. 7. 15)

1.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과 박길성 사단법인 세계한류학회 회장(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은 7월 15일(화) 외교부 청사에서 한류 확산과 공공외교 증진을 위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및 한류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시행 관련 협력, △국내외 공공외교 및 한류 관련 정보와 자료의 상호제공, 공동조사 및 자문, △공공외교 및 한류의 중요성에 관한 대내외적 인식 제고 등이며, 양 기관 간 정례 업무협의회 개최 등을 규정
 - ※ 세계한류학회(World Association for Hallyu Studies)는 2012년 한류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으며, 세계 19개국에 지부를 두고 매년 ‘한류국제학술대회(World Congress for Hallyu)’ 및 ‘한류 에세이·논문 경연대회’ 등 개최
2.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학회의 해외사업 및 외교부의 공공외교 수행에 상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민간협력을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윤병세 장관,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24년만에 체코 공식 방문,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격상 방안 협의 (2014. 7. 17)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4.7.17(목)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개최 한-비셰그라드 그룹간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7.15(화)-16(수) 양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 7.16(수) 루보미르 자오랄렉(Lubomir Zaoralek) 외교장관과 오찬 회담을 갖고,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총리 및 밀로쉬 제만(Milos Zeman) 대통령을 각각 예방하였다.

2. 자오랄렉 장관은 체코가 한국을 아시아내 핵심국가로서 중시하고 있는바 한국과의 전방위적인 협력관계(full-fledged partnership)를 적극 희망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위인사 교류, 교역·투자 확대 및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내년 양국 수교 25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이 길지 않은 수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반 분야에 걸쳐 협력을 심화·확대해오고 있다고 하고, 특히 양국간 성공적인 협력사례로서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넥센타이어 등 대표적 기업들의 대 체코 투자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주요 투자 결정이 양국간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 또한, 양 장관은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토대로 원자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 및 국방안보 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원자력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금년 6월 양국 정부간 에너지 협력 MOU를 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하반기 중 후속 협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4. 윤 장관은 그간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체코의 적극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에 상주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체코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자오랄렉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한반도 평화·안정에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체코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자오랄렉 장관, 2005.5월 하원의장 자격으로 남북한 동시 방문

5. 또한, 양 장관은 인적 및 문화 교류가 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초청 장학생(GKS) 사업, 체코내 한국어 및 한국학 진흥, 체코 국립미술관내 한국실 설치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6. 소보트카 총리 및 제만 대통령은 별도 예방에서 양국관계 심화 발전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을 아시아 지역내 주요 협력 파트너로 평가한다고 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양국간 고위인사의 교류 균형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관계 격상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표명하였다.
7. 이번 방문은 1990년 양국간 수교의정서 체결차 체코를 방문한 최호중 전 장관 이후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24년만에 이루어진 공식 방문으로서,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코 지도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특히, 체코 대통령, 총리, 외교장관 등 최고 위 인사들의 한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격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양 정부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 (2014. 7. 18)

1. 정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켓 발사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로 간주한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유엔 안보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조치 등 외교적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북한은 금년 2월 이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12발(6회)을 포함하여 수백발의 미사일, 로켓, 방사포를 발사

※ 대북 안보리 결의(1718, 1874, 2087, 209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를 금지

2. 정부는 뉴욕시간 7.17(목) 안보리 비공개회의 시 ‘기타안건(other matters)’ 의제하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하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제기하였다. 동 회의 종료후 안보리 의장(르완다)은 대언론 구두설명(Remarks to the press)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북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condemn)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fully comply)할 것을 촉구하였다.

※ 지난 3.26 북한의 노동 미사일 2기 발사시 정부는 미국 등과 공조 하에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 대언론 구두설명을 도출

○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북한의 최근 3차례(6.29, 7.9, 7.13)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북한제재위 앞 서한을 통해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하면서 제재위가 동 사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일본, 영

국, 프랑스 등 우방국들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제출하였다.

3.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사전통보 조치없는 탄도미사일 발사행위가 시카고 협약상 의무위반 및 국제민항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미·일 등 여타 우방국과 공동으로 7.8(화) ICAO 이사회 의장에게 ICAO 차원의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ICAO 이사회 의장은 7.14(월) 북한 육해운상 앞 서한을 통해 경고하였다.

※ 협약 체결국들(북한 포함)은 민항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행위 이전 협약 부속서에 따라 ▲피영항국과 협의,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통한 사전통보 조치 이행 필요

- 특히, ICAO는 과거 북한의 국장급 인사에게 서한을 보낸 것에 비해 금번에는 북한의 민항안전 관련 최고책임자인 육해운상(장관급)에게 국제민항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약상 조치이행 확보를 요구하였다.

4. 또한,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항행 안전에 미치는 위해문제를 제기하여, 지난 4.10(목)에 이어 7.11(금) IMO 사무총장이 북한에 대해 국제해양인명안전협약(SOLAS)상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 7.3(금) IMO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SOLAS 협약상 의무 위반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마셜제도 등도 북한측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

5. 우리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외교관이 들려주는 우리의 독도이야기” - 외교부, ‘청소년 독도 강좌’ 개최 - (2014. 7. 23)

1. 외교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식 고취 및 정부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돕고자 ‘독도 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강좌 일정 및 대상

- 8. 5.(화) 15:00~17:00 / 중학생 300명
- 8. 7.(목) 15:00~17:00 / 고등학생 300명
- 8. 12.(화) 15:00~17:00 / 대학생 300명

※ 장소 : 국립외교원 1층 강당(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2. 이번 강좌는 △독도 현황 소개, △정부 독도정책 및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주권 근거 설명, △외교관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대학생은 7월 24일(목)부터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 알림창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별 선착순 3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참석확인서 및 소정의 기념품 제공 예정

3. 외교부는 2012, 2013년에도 독도 강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룬다 (2014. 7. 23)

1. 그간 유엔을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대표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오랜 기간 야심차게 준비해 온 ‘지속가능발전목표’ (SDG)*에 대한 국제적 협의가 최

근 완료(2014.7.19)되었으며 동 SDG 제안서가 유엔 총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유엔은 당초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사회·환경간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제적 논의와 성과가 상대적으로 환경이슈 중심으로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DG 논의를 개시

2. 금번 SDG 제안서 준비작업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2012.6월) 합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공개작업반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동 공개작업반은 2013.2월~2014.7월간 포괄적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

*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 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 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목표 리스트 별첨)

3. 정부는 그간 유엔의 협의 과정에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또한 그 과정을 국내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단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유엔 협의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4. 그 결과 금번 합의된 최종 결과물에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강조해 왔던 빈곤·교육·보건 등 중점분야가 모두 포함 되었을 뿐 아니라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파트너십, 글로벌 시민교육 등 최근 우리나라가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 위상 제고 차원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5. 금번 SDG 제안서는 전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핵심과제를

선별해 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글로벌 발전과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세부목표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6. 향후 정부는 2015.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목표로 금년 말부터 협의가 개시될 ‘2015년 이후의 새로운 개발어젠다’ 수립 과정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과제가 모두 포함되고 아울러 우리측 주요 관심사가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 관련 100만불 인도적 지원 결정 (2014. 7. 24)

1.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전 심화로 인해 가자지구내 민간인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며 많은 국내 피난민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유엔 기구를 통한 100만불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금번 사태와 관련 UN 등 국제 사회는 피난민이 처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의 개선을 위해 아-팔에 2차례 일시 정전을 권고하여, 7.17일과 7.20일에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에게 생필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측에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대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 하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 지원동향

- ▲미국 4천7백만불 ▲영국 5백만 파운드 ▲아랍에미리트 4천1백만불 ▲덴마크 200만불 ▲사우디아라비아 53백만불 ▲카타르 5백만불 ▲터키 2백50만불 ▲남아공 1백만불 ▲아일랜드 5십만불 ▲UN 구호물

품 115톤 등

3.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노력과 지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정부는 제한된 인도적 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 일본 보고서 심의 최종의견서 공개 (2014. 7. 25)

1. 시민적·정치적 규약위원회(일명 B규약위원회)는 7.15(화)-16(수)간 일본의 제6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7.24(목) 동 심의에 대한 최종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를 공개하였다.
 - ※ 시민적·정치적 규약 위원회는 임기 4년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시민적·정치적 규약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 필요한 권고 제시
2. B규약위원회는 이번 최종의견서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많은 경우에 있어 모집, 이송 및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군대나 군대를 대신한 기관에 의한 강제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하는 반면, 이들이 강제로 이주(forcibly deported)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모순된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모든 행위들은 일본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인권침해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영어원문)

The Committee is concerned by the State party’s contradictory position that the “comfort women” were not “forcibly deported” by Japanese military during wartime but that the “recruitment, trans-

portation and management” of these women in comfort stations was done in many cases generally against their will through coercion and intimidation by the military or entities acting on behalf of the military.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any such acts carried out against the will of the victims are sufficient to consider them as human rights violations involving the direct leg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party.

3. 또한, B규약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통해 △전시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해 자행한 성노예 행위 및 여타 인권침해 주장을 실질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법적 접근 보장 및 완전한 배상 실시, △모든 관련 증거 공개, △교과서 수록 등 학생들과 대중들에게 교육 실시, △공개 사과 및 책임 공식인정,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 규탄 등을 촉구하였다.

(영어원문)

The State party should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ensure: (i) that all allegations of sexual slavery or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by Japanese military during wartime against the “comfort women”, are effectively,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and that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if found guilty, punished; (ii) access to justice and full reparation to victims and their families; (iii) the disclosure of all evidence available; (iv) education of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issue, including adequate references in textbooks; (v) the expression of a public apology and official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party; (vi) condemnation of any attempts to defame victims or to deny the events.

4. 이밖에도 한국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hate speech), 극단적인 집회, 괴롭힘,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종적 우월성을 옹호하고 차별, 적대 및 폭력을 부추기는 모든 종류의 선전 및 시위 금지,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충분한 자원 배분 및 혐오와 인종주의적 범죄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집행 인력에 대한 훈련 강화, △인종주의적 공격 예방, 관련자 조사 및 처벌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 한-메콩 미래 협력에 뜻을 달다 - (2014. 7. 29)

1. 윤병세 외교부장은 7.28(월)-29(화)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메콩측 의장국인 씨하삭 태국 외교장관대리와 회의를 공동 주재하였다.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한국과 ASEAN내 대륙동남아국가*인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된 소지역협력체로, 메콩지역의 개발격차 해소와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국이 제안하여 2011년 출범하였다.
 -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3년마다 한국에서, 그 중간에는 ARF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되고 있고, 2017년에는 한국에서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
 - * ASEAN 10개국은 상기 대륙 동남아 5개국과 해양 동남아 5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 동남아국가들은 ASEAN의 선발 개도국 내지 선진국이며, 대륙 동남아 국가들은 90년대 중반부터 ASEAN에 가입한 후발 개도국임.
 -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ASEAN

내 개발격차해소의 주요 수단으로서 메콩지역의 연계성 증진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메콩지역과의 협력체를 결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2. 금번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1년 10월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한국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 4년간의 한-메콩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윤장관은 그동안 메콩내 교통연구소 설립사업 연구 개시, 통상/물류/농업 분야 인적자원 개발 사업 및 산림 복원 및 녹화 사업 실시 등 한-메콩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3. 또한, 윤장관은 한국과 메콩연구소간 한-메콩 협력기금에 대한 MOU가 체결되어 동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을 평가하고, 한-메콩 협력기금이 메콩 소지역 협력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 한-메콩 협력기금 : 2013년 신설되었으며, 태국 콘캔에 소재한 국제기구인 메콩연구소에서 관리 및 운영키로 합의(2013년 50만불, 2014년 80만불)
4.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의 한-메콩 협력 목표와 방향이 담긴 한-메콩 액션플랜(2014-2017)이 최초로 채택되어, 6개 우선협력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발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 6개 우선 협력분야 :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 수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5. 윤장관은 앞으로 한-메콩 협력이 여타 협력체

와 차별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국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며, 대표적으로 메콩지역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새마을운동사업을 확대하여 메콩지역의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6. 메콩국가 장관들은 한국이 메콩 5개국을 포함 ASEAN 10개 개별국가에 대한 그간의 양자 협력과 한-ASEAN틀내에서 지역기구로서 ASEAN 자체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특히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보완 기제로 메콩 소지역 협력을 금년 한-메콩 액션플랜 채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메콩 협력 내에서 메콩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개발 관련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7. 한편, 윤장관은 금번 회의 계기에 북핵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됨을 강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윤장관은 작년 ARF 외교장관회의와 마찬가지로 금년 미얀마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의장성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메콩국가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에 메콩국가들은 우리측 입장에 공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핵포기 및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였다.

조태열 제2차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중국 설명회 개최 - 중국 전문가들, 우리측 구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 표명 - (2014. 7. 30)

1.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7.29(화) 중국 사회과학원측과 공동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명회」를 주최하였다.
 - 이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명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설명회에 이어 중국을 대상으로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서, 동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추진
 - 금번 설명회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아태전략연구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한 펑(Han Feng)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원 부원장, 왕 판(Wang Fan) 외교학원 부원장, 푸 멩즈(Fu Mengzi)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등 중국내 국제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관련 대표적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만찬 포함 5시간에 걸쳐 진행
2. 조 차관은 기초연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을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바꿔놓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한편,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 및 특징을 설명하면서,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특히 조 차관은 그간 미·중·일·러 등 동 구상 주요 대상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에서 제기된 관심을 반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한국 주도의 특정 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정치적 아젠다 성격의 제안이 아니며, △북한이나 북핵문제를 주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 △북한을 배제한

채 ‘6 minus 1’ 구도하에 추진되는 구상이 아니며, △기존의 지역협력 메카니즘을 보완·발전시키고자 하며, △연성안보 이슈를 다루면서도 지역 평화와 안보라는 정치·안보적 측면도 병행한다는 점 그리고 △한·일,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한 동북아 지역 신뢰위기가 동 구상 추진에 제약요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동 구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라는 점 등을 강조

- 이와 함께, 금번 설명회에 참석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동 구상이 완결된 개념이 아닌 주변국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상으로 정치적 대립과 무관하게 협력이 가능한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슈에 관한 협력을 지향한다고 설명하였고,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특정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의 협력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김용순 교수는 우리측 구상의 특징으로 △참여대상국으로서 개방적 지역주의(open-regionalism), △운영방식의 개방성(co-stakeholdership) 및 △역내 협력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제시
3. 금번 설명회에서 중국측 전문가들은 한·중 양국관계가 양국 정상간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교 이래 최고의 수준에 있다고 하면서 이번 외교 차관이 방중하여 설명회를 개최해 준 우리 정부의 성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 중국측 전문가들은 지난 3월 1차 설명회 당시 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있는 질문을 다수 제기한바, △그간의 성과, △미국, 일본 등 동구상 주요 대상국들의 반응, △한·중·일 3국 협력과의 관계, △북한의 참여 유도 방안 및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과의 관계, △역외국

가인 미국의 역할, △전통 안보 및 비전통연성 안보이슈간 연계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

- 특히, 중국측은 북한의 참여 및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정부가 금년 하반기 동 구상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 제고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국제회의의 중 최대 규모 행사인 제1차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에 대한 기대를 표명
 - 중국측 참석자들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중간 신뢰라고 강조하면서, △남북한 관계 경색(특히 북핵 문제 포함), △일본의 우경화 및 역사수정주의적 행태, △미·북 관계, △한·일, 중·일 관계 악화 등을 동 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
4.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설명회는 동 구상에 대한 국제적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관련국 정부 인사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금번 설명회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참여 대상국인 중국 학계의 높아진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동 구상 추진에 있어 한 단계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차세대 한국 전문가로 성장할 UAE 청년사절단 방한 (2014. 7. 31)

1.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에미리트인 아부다비의 왕세제실이 파견하는 UAE 청년 대사들(Youth Ambassadors) 28명이 8.1(금)-21(목)간 방한, 한국전문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에미리트(emirate)는 이슬람 국가의 왕(emir)이 통치하는 영토·국가를 의미하며, UAE는 아부다비·두바이·샤르자·아즈만·움알콰인·라스알카이마·푸자이라 등 7개 에미리트로 구성된 연방국가

- 이들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어 연수,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 방문, △한전, 삼성, SK, POSCO 등 주요기업 방문 및 △박물관 관람, DMZ·전쟁기념관 방문, 궁중요리 실습 등 역사·문화 체험과 같은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종훈 국회의원, 윤종록 미래부 차관, 권태균 前 주UAE대사 등으로부터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UAE 관계에 대한 강의도 들을 예정이다.
- 2. 외교부는 UAE 청년 대사 프로그램을 후원하여, UAE 차세대 리더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양국간 미래 협력 확대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 특히, 금번 청년 대사들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한국석유공사, 국내 의료기관 등 방문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현황을 몸소 체험할 계획이다.
- 3. 금년으로 3년째를 맞는 UAE 청년 대사 프로그램(Youth Ambassadors Programme)은 아부다비 왕세제실이 post-oil 시대에 대비하여 차세대 리더 및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특히 UAE는 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매년 한국에 파견하여, UAE 미래 성장전략 수립에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아부다비 왕세제실이 공개모집을 거쳐 직접 선발하여, UAE 내 주요대학의 우수 인재로 구성된다. 금년 선발된 청년 대사들은 UAE 5개 대학 재학생 28명으로, 이중 8명은 2013년 동 프로그램 참가자로 방한한 경험을 바탕으로 Level 2 코스에서 한국에 대한 심화 교육을 받는다.

※ UAE 청년 대사 프로그램 실시현황

- 제1차 '12.6.28-7.21(20명), 제2차 '13.6.22-7.8(24명) 방한

※ post-oil 시대: 탈석유 시대를 의미하며, 산유국은 석유자원 고갈이나 국제적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직면하여 post-oil 시대를 대비한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중점 추진중

2014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4. 8. 5)

1. 일본 정부는 금일 발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였다.
2.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여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4.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태열 제2차관, 싱가포르·태국 방문 및 ESCAP 총회, G20 ESCAP 고위급회의 기조연설 (2014. 8. 7)

1.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8.4-5간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그레이스 푸(Grace Fu), 치 위 키웅(Chee Wee Kiong) 제1외교차관, 알버트 추아(Albert Chua) 제2외교차관, 빌라하리 카우시칸(Bilahari Kausikan) 전 외교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 및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와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한-싱 관계, △작년 12월초 리센룽 총리 방한 성과, △동북아·동남아 지역 정세,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리센룽 총리 방한시 합의한 성과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환경에 처해있는 양국이 다양한 레벨에서의 대화를 활성화하여 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조 차관은 최근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싱가포르측도 이에 공감하면서 북한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2. 이어서 조 차관은 8.6-7간 개최된 제70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아태지역 연계성 강화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여와 활동을 소개하고 특히 ESCAP 차원에서 최근 우리 주도로 적극 추진 중인 ‘아시아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 이니셔티브’* 및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 체결** 노력을 설명하는 등 우리의 對ESCAP 활동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기여의사를 표명하였다.

- 아울러, 조 차관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감안하여 ESCAP 회원국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
 - * 아태지역 초고속 인터넷망(브로드밴드) 보급을 위한 협력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추진 중
 - ** 싱글윈도우(세관 수출입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등 서류없는 무역 이행 촉진을 위한 지역협정 체결을 위하여 금번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
 - 또한, 조 차관은 동 총회 계기 G20 아웃리치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8.6 G20 ESCAP 고위급 회의에 특별 연사로 초청되어 기조연설을 통해, 금년도 호주 G20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하고, G20 회원국-비회원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
 - ESCAP 사무국 및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주도로 2010년에 시작되어 금년 제5차를 맞은 동 회의가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G20 회원국의 아웃리치 활동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았다고 높이 평가
 - ※ 금번 ESCAP 총회에서는 ‘공동의 번영을 위한 지역 연계성 증진(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하여 무역, 수송, ICT, 에너지 등 분야에서 아태지역 연결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체링 톱게(Tshering Tobgay) 부탄 총리, 리바오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 키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대신 정무관(차관급) 등 주요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
3. 한편, 조 차관은 총회 기간중 금년 2월 취임한 샴샤드 악타(Shamshad Akhtar) ESCAP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지난 60년간 이어온 한-ESCAP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국민의 ESCAP 사무국 진출을 위한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4. 조 차관은 태국 방문 기간 중 8.6 차와릿 추카쩨(Chavalit Chookajorn)태국 농업협력부 장관 대리를 면담하여, 지난 해 6월 태국 수자원관리 계획의 우선협력 대상자(총 8개 사업 중 2개 사업)로 선정된 바 있는 한국수자원 공사(K-water)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설명하고, 태국의 통합 수자원관리 산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태국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조 차관은 8.7 태국 학계 및 언론계 주요 인사를 오찬간담회에 초청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신뢰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동북아, 동남아 정세 등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5. 금번 조 차관의 싱가포르, 태국 고위인사 및 학계·언론계 인사들과의 만남은 동아시아의 외교환경 변화로 인한 도전적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시각을 싱가포르, 태국 양국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對ESCAP 기여 및 아태지역 개도국 지원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ESCAP내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 EMC, TCC 동양, 에진 머레이 (동국제강을 제외한 여타 회사는 생산자가 아닌 무역 회사)

- 미 상무부는 2013.3.29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2012년 상계관계 연례재심을 개시함.
2. 미국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2000년부터 반덤핑 및 상계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상계조치의 경우 2008년 연례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혐의(0.97%)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일몰재심에서 동 조치가 계속 유지되어 이후 계속 연례재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금번 미소마진 판정으로 인해 향후 연례재심 없이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됨.
 - 동국제강의 철강후판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15,000톤(약 1,000만불) 수준임.
 - * 한편, 국내 최대 철강후판 생산자인 POSCO는 2000년 원심에서 이미 반덤핑/상계조치 무혐의 판정을 받아 대미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
 3. 외교부는 금번 상계조사 과정에서 작년 9월 및 금년 1월 정부 답변서 제출 등 국내업체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기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미국 철강후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사실상 무혐의 판정 (2014. 8. 8)

1. 미국 상무부는 8.7(현지시간) 한국산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상계관세 연례재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에서 동국제강 등 한국기업 6개사*에 대해 모두 0.11%의 미소마진으로 판정, 사실상 무혐의 발표를 함.
 - * 해당 업체 : 동국제강, 경일, 삼성 C&T, 삼

윤병세 외교장관, ASEAN 및 중국, 일본 장관들과 동아시아의 성장을 위한 ASEAN+3의 역할에 대해 논하다. - 제15차 ASEAN+3 외교장관회의 참석 - (2014. 8. 9)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4.8.9(토)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15차 ASEAN+3 외교장관회의

의에 참석하여, 올해로 17년이 된 ASEAN+3의 협력을 점검하고, 미래방향을 진단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ASEAN+3 :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2. 윤장관은 ASEAN+3가 1997년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동남아와 동북아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 점차 농업, 문화, 교육 등 20여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이제는 명실 공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지역협력체로 자리매김하고, 여타 역내 협력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3. 윤장관은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역내 여타 협력체와 중복문제가 제기되고, 새로운 이슈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ASEAN+3의 강점인 기능협력에 집중하여 이러한 상황을 발전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즉, 금융, 농업 등 그간 가시적 성과 분야는 지속 강화하면서, 동시에 빈곤퇴치, 수자원 관리 등 성과 부진 분야와 연계성, 공공행정 등 신규사업 추진 가능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4. 또한,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된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의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 비전 및 59개 권고사항 관련 검토가 금년에 진행 중인 바, 윤장관은 동 검토가 ASEAN+3 협력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갖는 의미를 감안하여 회원국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EAVG II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인 기여를 평가하고, 2015년 최종 보고서의 정상회의 제출을 기대했다.
5. 한편, 윤장관은 동북아내 Asia Paradox 현상에도 불구하고, ASEAN+3 차원의 기능협력 분야 진전을 위한 협력에 대해서는 한·중·일간 공감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3국의 협력은

ASEAN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서로 추동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3국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향후 동아시아 전체에 모범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형성되도록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6. 마지막으로 윤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ASEAN+3 회원국간 공조를 강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장관, 제21차 ARF 외교장관회의 (8.10, 미얀마 네피도) 참석 결과 (2014. 8. 10)

1. 윤병세 외교장관은 8.10(일) 14:30-18:30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2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케리 국무장관), 일본(기시다 외상), 중국(왕이 외교부장) 외교장관이 작년에 이어 금번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북한은 리수용 외상이 참석(러시아는 마르글로프 아태차관 참석)
 - 지역·국제정세 논의시 회원국 외교장관들간 북한 핵문제 및 남중국해 문제, 말레이시아 민간 항공기 격추 관련 민간 항공 안전 문제 등을 위주로 심도 있는 의견 교환 진행
 - 또한, ARF 4대 협력 분야*의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을 점검하고 ARF 미래 방향에 대해서 논의
 - * ARF 4대 협력분야 : 재난구호, 대테러·초국가범죄,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2. 윤 장관은 지난 7개월간 지속된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의 위협에 처해있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한 후, 역내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서 북핵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므로, 국제사회가 더욱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함
- 한편,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해나가고자 함을 표명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을 설명함
- 참가국들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함

3.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 관련, 중-ASEAN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한 이행 및 남중국해행동규칙(CoC) 협의의 조속한 진전을 희망하였다.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2014. 8. 10)

1. 윤병세 외교부장은 8.10(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4차 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EAS 국가간 협력 성과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아세안 9개국 외교장관 외, 「케리」 미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장관, 「기시다」 일본 외무상, 「비숍」 호주 외교장관, 「맥컬리」 뉴질랜드 외교장관,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 참석

※ EAS :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

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 ※ 러시아는 차관, 태국은 장관대행이 참석
- ※ EAS 정상회의는 2005년 설립되어 금년 11월 제9차 정상회의가 개최되나, 외교장관회의는 초기 6년간 비공식으로 개최되어 오다, 2011년 공식적으로 제1차 EAS 외교장관회의가 개최

2. 참석 장관들은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인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EAS가 6가지 우선분야를 선정해 협력을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야생동물 밀수퇴치, 신속 재난 대응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4-2015년 개발협력에 관한 행동계획이 마련되나, 이를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협력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 EAS 6대 우선협력 분야 : 에너지, 금융, 보건, 재난관리, 교육, 연계성

3. 한편, 윤장관은 EAS가 정치적, 경제적 공동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적 포럼으로 설립된 회의체임을 언급한 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요 동아시아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 특히, 북핵 불용의 확고한 입장 하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
-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며 한반도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드레스덴 구상을 소개

4. 참석장관들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경제외교조정관,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 미래지향적 아·태지역 동반자 관계 구축 방안 논의 - (2014. 8. 18)

1.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20(수)-21(목)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 ※ 금번 고위관리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인터넷경제 고위급 대화(8.18) 및 연계성(Connectivity) 관련 의장단회의(8.19) 등도 참가 예정
 - 금번 회의는 금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고위관리회의로서, 리 바오둥(Li Baodong)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주재하에 금년도 APEC 주제 및 3대 중점 추진 의제에 대해 심층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2014년 APEC 회의 일정
 - 정상회의 : 11.10-11, 베이징
 -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 11.7-8, 베이징
 -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 11.5-6, 베이징
2. 중국은 금년도 APEC 주제로서 ‘아·태지역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Shaping the Future through Asia Pacific Partnership)’을 선정하고, 3대 중점 추진 의제로서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포괄적 연계성(Connectivity) 및 인프라 개발 강화를 제시한 바, 금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이들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관련 사업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로드맵 수립, 역내 FTA 정보공유, FTA 역량강화 및 FTAAP 연구·분석 등을 통한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실현 강화, 글로벌가치사슬(GVC) 개발 및 협력 촉진,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기여방안 등 논의

-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아·태 지역이 세계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개혁, 인터넷경제, 해양, 여성, 도시화 등 이슈에 있어 APEC 역내 혁신 추진 방안 논의
 -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APEC 역내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작성중인 APEC 연계성 청사진(APEC Connectivity Blueprint)의 향후 작업방향 및 APEC 인프라 개발·투자 계획 이행 관련 논의
3. 우리나라는 상기 의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금년 11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달성에 있어 선진·개도 회원국간 역량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우리나라가 APEC 개도회원국을 대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APEC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FTA 역량강화 사업’의 1단계 사업(2012-2014)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역량강화사업 구체계획에 대하여 회원국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
 - ※ 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우리 주도로 APEC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FTA 분야별 회원국 역량강화 세미나 등 개최
 - 우리나라는 1단계 역량강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세미나 개최(‘14.7.22-23, 서울)

8월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 ‘세상 속 고통을 지우고 희망을 심는 날’ -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인도주의에 대한 대국민 참여의 장 열어 - (2014. 8. 18)

1. 오는 19일 UN이 제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

을 맞이하여, 외교부와 KOICA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내 소재 18개의 인도적 지원 비영리단체 및 국제기구들과 함께 세계 인도주의의 날 온·오프라인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2003년 8월 19일, 이라크 바그다드 UN본부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22명의 인도주의 활동가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이후, 2008년 UN총회 결의에 의해 제정됨.

※ UN은 올해로 6회를 맞은 동 기념일을 통해 재난과 분쟁 현장에서 이미 순직했거나, 지금도 현장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수많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전 세계에 알려오고 있음.

2. 국내 최초로 민관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2014년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은 8월 한 달 동안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그리고 19일 당일에는 광화문 광장 행사를 통해 지구촌 곳곳의 분쟁과 재난 현장에서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역할과 모습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3. 8월 19일 11시부터 16시까지 광화문 중앙광장에서는 ‘세상 속 고통을 지우고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21개 참여 기관 및 단체들이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담은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포토존 및 메시지 보드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날 11시에 열릴 개막식에는 외교부, KOICA, KCOC 및 18개 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또한,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네티즌들은 21개 참여 기관 및 단체들이 게재하는 인도주의에 관한 소식을 글, 영상, 사진 등을 통해 접하고, 퀴즈와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페이스북 검색창에 ‘세계인도주의의 날’을 치면 공식 페이지 (www.facebook.com/worldhumanitariandaykor

ea)에 접속이 가능하며, 11일 현재 7만 명 이상이 동 페이지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5. 한편, 외교부와 KOICA는 이번 달 12일부터 27일까지 ‘내가 생각하는 인도주의란?’이라는 주제로 “인도주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분야인 인도주의에 관한 경험을 쉽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인도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6. 정부는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급증하고 있는 분쟁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세계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 손안의 영사관! 해외안전여행의 모든 것~ (2014. 8. 19)

1. 외교부는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 영상 3편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KTX 공항철도 모니터(~10월 중순까지), 유튜브,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2. 애니메이션 기법을 동원하여 흥미를 유발하도록 제작된 이 캠페인 영상은 <여행정보는 해외여행 안전신호등입니다>, <해외여행, 안전검색이 먼저입니다>, <내 손안의 영사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등 3편(각 20초 분량)으로 우리 해외여행객에 대해 외교부가 지원하는 영사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캠페인 내용

- 1편: 여행정보 신호등 제도
 - 2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 3편: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3. 캠페인 영상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기타 SNS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 외교부 SNS 채널
- 유튜브(youtube.com/mofakorea), 페이스북(facebook.com/mofakr.kr) 등.
4. 또한, 외교부는 주요 포털 ‘다음(DAUM)’의 모바일 콘텐츠 사이트인 ‘스토리볼’을 통해 가상의 여행객이 해외에서 겪는 일들을 재미있게 구성, 외교부 영사서비스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8.24부터 주 2회(일요일 및 화요일)에 걸쳐 4주간 연재할 예정이다.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의 미국인 기자 참수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2014. 8. 21)

1. 우리 정부는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라는 테러단체가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가족들과 미국정부에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2. 우리 정부는 무고한 민간인 살해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힌다.

2014 한·일·중 청년 모의정상회의 개최 (2014. 8. 21)

1. 외교부는 3국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과 공동으로 8.25(월)-30(토)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한·일·중 청년 모의정상회의(Trilateral Youth Summit)」를 개최할 예

정이다.

2.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가 주관하고 국내외 거주 한·중·일 대학(원)생 총 50여명이 참가하여 5박6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을 위한 한·일·중 3국협력’을 주제로 경제, 환경, 문화 등 3개 분야의 위원회 토의와 모의정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민속촌 방문 및 문화공연 관람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3.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일·중 각국 대표단에 3국 학생들을 혼합 편성하여(한국 대표단은 한5명·일4명·중4명으로, 일본 대표단은 일5명·중4명·한4명으로, 중국 대표단은 중5명·한4명·일4명으로 구성) 참가 학생들이 자국의 입장은 물론, 상대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관련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 3국 협력에 필요한 소양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3국협력의 주역인 3국 청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고양함으로써 3국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3국의 차세대 외교 및 국제관계 전문가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앞으로도 외교부는 3국 청년들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여권발급 통합 전산망이 모두 업그레이드된다 (2014. 8. 26)

1. 외교부는 노후화된 여권발급 통합 전산망(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PICAS*)을 2015.3월까지 모두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 PICAS(Passport Information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 2008년 전자여권 발급을 계기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236개 여권사무 대행 지방자치단체, 171개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연중무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여권발급 통합관리 중추신경망

2. 외교부는 PICAS 전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여권 신청 접수 등 관련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약 44%가 유효한 여권(2,271만권, '14.7.31 현재)을 소지하고 있으며, 연 338만명('09-'13 평균)의 국민들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있음

3. 이와 관련, 외교부와 사업수행 업체 관계자들은 2014.8.27.(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 기념식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부국인 몽골을 공식 방문, 「한·몽 포괄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에 합의 (2014. 8. 26)

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미래의 자원대국인 몽골을 8.25(월)-27(수)간 공식 방문하여, 8.26(화) 오전 「롭산완단 볼드(Luvsanvandan Bold)」 몽골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너러브 알탕후약(Norov Altankhuyag)」 총리 및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대통령을 각각 예방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몽·한 경제포럼’ 주최 오찬에도 참석하여 한·몽골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에 대하여 오찬 연설을 행하고, 몽골 각계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 ‘몽·한 경제포럼’ 주최 오찬 참석 결과 상세는 별도 보도자료 배포

(한·몽 외교장관 회담 결과)

2. 양국 외교장관은 한·몽 관계가 1990년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이제는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명실상부한 ‘포괄적 동반자관계’(2011년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몽시 합의)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내년 수교 25주년 계기 고위급 인사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한차원 높이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장관은 금번 한·몽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양국 정부간 최초의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몽 공동위원회’를 신설키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연내 이를 출범시켜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관계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윤 장관과 볼드 장관은 주부산 몽골영사관 개설에 합의하였으며, 볼드 장관은 한국측의 신속한 개설 동의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동 영사관의 개설은 한·몽 양국 국민들의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5. 양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몽골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 확대가 양국관계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점과, △한·몽간 복수 항공사 취항 실현은 양국민 모두에게 호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

가기로 하였으며, 윤 장관은 몽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모범적인 체제전환 국가로서, 북한이 변화해 나가는데 있어 좋은 선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 볼드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몽골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7. 윤 장관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데 있어 몽골이 지정학·지경학적 으로 우리와의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 하였으며, 이에 대해 볼드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UN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환경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 총리 예방 결과)

9. 알탕호약 총리는 한·몽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국무총리의 몽골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윤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구체사항은 앞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윤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설명하고 유라시아의 요충지에 위치한 몽골의 지지 및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알탕호약 총리도 큰 공감을 표시하고 특히 철도연결사업 참여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몽골 대통령 예방 결과)

11. 윤 장관은 엘벡도르지 대통령 예방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를 증진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을 증진하려는 구상에 대한 몽골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약체’ 제안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몽골이 성공적 체제전환 국가로서의 경험을 북한에도 전수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90년 몽골 민주화혁명의 핵심인사로, ‘몽골 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며, 북한 등 구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 몽골의 민주화 경험 전파에 적극적

- 2013년 방북 계기, 김일성종합대학 연설에서 “어떠한 독재도 영원할 수 없다.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열망은 영원한 힘이다.”라고 역설

12. 이에 대해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몽골측으로서도 북한의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으며, 우리측이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약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13. 윤 장관은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구체 방한 시기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회 공동 언론발표문 (2014. 8. 26)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2014년 8월 26일 서울에서 제3차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최성주 국제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및 미래부, 국방부, 대검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미측에서는 크리스토퍼 페인터(Christopher Painter) 국무부 사이버정책

선임 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방부 및 국토안보부, 상무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다니엘 세풀베다(Daniel Sepulveda) 국무부 국제통신 및 정보정책 조정관도 동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2. 동 사이버정책 협의회는 △사이버위협 평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행위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 및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개도국 사이버 역량 강화협력 △인터넷 거버넌스와 다중이해 당사자모델 접근의 중요성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강화협력 △2015 네덜란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양측은 2014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 대한 공통 관심사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사이버정책 실무협의체’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제2차 한-미 ICT정책 포럼의 서울 개최를 기대하였다.
3. 양측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포함하여, 개방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이버공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최성주 국제안보대사와 크리스토퍼 페인터 선임조정관은 차기회의를 2015년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올해 5월 출범 인도 신정부와 최초의 고위급 협약체 개최 - 제4차 한·인도 차관급 외교정책안보대화 개최 - (2014. 8. 29)

1.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2014년 8월 29일(금) 오후 서울에서 ‘아닐 와드화(Anil Wadhwa)’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차관과 「제4차 한·인도 차관급 외교정책안보대화(Foreign Policy and Security Dialogue)」를 개최하였다.

※ 한·인도 차관급 외교정책안보대화는 2010년 한·인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양국 관계 미래 발전 논의, 지역·국제안보 환경 점검,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서, 현재까지 3차례 개최 - 제1차: 2010.4월(서울), 제2차: 2012.6월(델리), 제3차: 2013.9월(서울)

※ 이번 차관급 외교정책안보대화와는 별도로, 한·인도 양국은 올해 5월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장관간 전화 통화(6월), 정상간 전화 통화(7월), ARF 외교장관회의(미얀마 네피도) 계기 외교장관 회담(8월) 등 지속적으로 접촉 유지

※ 와드화 인도 차관은 지난 3.19. 인도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우호의 상징으로 선물한 보리수 묘목 증정식 참석차 방한한 적이 있으며, 이번 방한시에는 8.29. 오전 주한인도 대사관이 마련한 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움(Indian Business Symposium)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對인도 투자 유치 활동도 실시

2. 이번 제4차 외교정책안보대화는 지난 5월말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에 따른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인도간 최초로 개최되는 고위급 협의체로서, 양측은 이번 대화를 통해 △양국관계의 전반적 발전방향, △경제·통상, 국방·방산, 과학·기술 등 양자 현안, △지역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특히, 조 차관은 우리측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도 오디샤주 포스코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인도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와드화 차관은 포스코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 차관은 라자스탄주 한국기업전용공단 설치

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양국간 상호 윈윈(win-win)의 좋은 경제협력 사례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양 차관은 인도 정부의 소해함·자주포 교체 사업 및 대공방어체계 사업에 대한 우리 업체의 참여 등 방산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인도 원자력분야 정례협 의회의 올해 중 개최 등 원자력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양 차관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개선을 위하여 양국 통상당 국간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아울러 양국 대표 기업들로 구성되는 CEO 포럼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차관은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한·인도 양국간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강 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다자 회의의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양 차관은 양자·지역·다자차원의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양 차관은 올해 1월 정상회담시 합의한 대로 한·인도 국가안보실간 대화, 제 8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 등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및 전략적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구체 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이번 한·인도 차관급 외교정책안보대화는 올해 5월 신정부 출범 이후 역내 및 국제적 위상 과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인도 와 우리나라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작년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성과에 기초하여 향후 40년간의 미래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양측의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3주년 계기 외교부 대변인 논평 (2014. 8. 29)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
2.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직시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노 담화 검증과 그 후속조치 등의 이름하에 다시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번 호는 ‘해양법(Law of the Sea)’과 관련한 최신 주요 주해서, 도서 및 학술논문을 소개합니다!

주해서

- Dupuy, R.-J. and D.A. Vignes, *Handbook on the New Law of the Sea*, Dordrecht, Nijhoff, 1991.
- Kwiatkowska, B., *Decisions of the World Court relevant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Reference Guide*, Leiden, Nijhoff, 2010.
- Lowe, V. and S. Talmon, (eds.), *The Legal Order of the Oceans: Basic Documents on the Law of the Sea*, Oxford, Hart, 2009.
- Nordquist, M.H.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Dordrecht, Nijhoff, 1985-2011.
- Oda, S. *Fifty Years of the Law of the Sea: With a Special Section 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elected Writings of Shigeru Oda, Judg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ordrecht, Nijhoff, 1993.

도서

- Anderson, D., *Modern Law of the Sea : Selected Essays*, Leiden etc.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3.
- Churchill, R.R. and A.R. Lowe,, *The Law of the Sea*, Yonkers, NY : Juris Publishing, 1999.
- Dupuy, R.-J. and D. Vignes, *A Handbook on the New Law of the Sea*, Dordrecht etc.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 Freestone, D., R. Barnes and D.M. Ong, *The Law of the Sea : Progress and Prospects*, Oxford etc. :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Harrison, J., *Making the Law of the Sea :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etc.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Kolodkin, A.L., V.N. Gutsuliak and I.V. Bobrova, *The World Ocean : International Legal Regime*, The Hague :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2010.
- Lowe, V. and S. Talmon, *The Legal Order of the Oceans : Basic Documents on Law of the Sea*, Oxford etc. : Hart, 2009.
- McDorman, T.L. (et al.), *International Ocean Law : Materials and Commentaries*, Durham, NC : Carolina Academic Press, 2005.
- Morell, James B., *Law of the Sea :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1982 Treaty and its Rejection by the United States*, Jefferson, NC, McFarland, 2013.
- Nordquist, N.H.,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 a Commentary*, Dordrecht etc.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 Oda, S., *Fifty Years of the Law of the Sea : with a Special Section 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Hague etc. :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Rothwell, D.R. (ed.), *Law of the Sea* (Collection of Articles),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cations, 2013.
- Sohn, L.B. and J.E. Noyes, *Cases and Materials on the Law of the Sea*, Ardsley, NY : Transnational, 2004.
- Symmons, C.R., *Historic Waters in the Law of the Sea : a Modern Re-Appraisal*, Leiden etc.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 Vincent, P., *Droit de la mer*, Bruxelles : Larcier, 2008.
- Vitzthum, W. und G. Hafner, *Handbuch des Seerechts*, München : Beck, 2006.

Zacharias, M., *Marine Policy : an Introduction to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Law of the Oceans*, London, Routledge, 2014.

학술논문

- Henriksen, T. and G. Ulfstein,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ctic : the Barents Sea Treat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42 (2011), No. 1, pp. 1-21.
- Linkevicius, J.,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Limits of Compulsory Jurisdiction”, *Baltic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1 (2012), pp. 153-172.
- Lowe, V. and A. Tzanakopoulos,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the Sea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C. J. Tams and J. Sloan (ed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177-193.
- Magnússon, B.M., “Is there a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lineation and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8 (2013), No. 2, pp. 465-483.
- Oral, N., “Implementing Part XII of the 1982 UN Law of the Sea Convention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Courts”, in N. Boschiero [et al.] (eds.) *International Court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 Essays in Honour of Tullio Treves*, The Hague, Asser Press, 2013, pp. 403-423.
- Plakocefalos, I., “Shared Responsibility Aspect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4 (2013), No. 2, pp. 385-405.
- Ros, N., “El Derecho jurisprudencial de la delimitación marítima”, *Revista española de derecho internacional*, 65 (2013), No. 2, pp. 71-115.
- Song, Yann-huei, “Survey of Declarations or Statements made by the Parties to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30 Years after Ado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8 (2013), No. 1, pp. 5-59.
- Tanaka, Y., “Obligations and Liability of Sponsoring States Concerning Activities in the Area : Reflections on the ITLOS Advisory Opinion of 1 February 2011”,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60 (2013), No. 2, pp. 205-230.
- Vidas, D., “Consolidation or Deviation? : on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Settlement of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 N. Boschiero [et al.](eds.) *International Court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 Essays in Honour of Tullio Treves*, The Hague, Asser Press, 2013, pp. 325-334.

〈국제회의〉

Conference: Twenty-Third Investment Treaty Forum Public Conference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will host the Twenty-Third Investment Treaty Forum Public Conference on September 12, 2014. The theme is: “Ca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e Restated? Or is Jurisprudence Constante the El Dorado of Investment Treaty Lawyers?”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biicl.org/event/1058> 참조.

Conference: Legitimacy and International Courts

On September 18-19, 2014,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t the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and PluriCourts - Centre for the Study of the Legitimate Roles of the Judiciary in the Global Order at the University of Oslo Faculty of Law will hold a symposium on “Legitimacy and International Courts,” in Baltimore.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law.ubalt.edu/centers/cicl/ciclevents/Conference%20Schedule.pdf> 참조.

Conference: The Reform of International Economic Governance

A conference on “The Reform of International Economic Governance” will be held on October 9-10, 2014, at the University of Granada, Spain.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granadaconference2014.es/index.php/program> 참조.

Conference: Mega-Regionals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On October 23-24, 2014, the Research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University of Dresden and the affiliated research project Global TranSAXion will host a conference on “Mega-Regionals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tu-dresden.de/die_tu_dresden/fakultaeten/juristische_fakultaet/jfoeffl9/globaltransaxion/conference2014/programme 참조.

〈국제학술아카데미〉

Workshop: Procedural Fairness i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On **September 19-20**, 2014, the Surrey International Law Centre of the University of Surrey School of Law, with the support of the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the McCoubrey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of the University of Hull, and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will host a workshop on “Procedural Fairness i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surrey.ac.uk/law/events/Procedural%20Fairness%20in%20International%20Courts%20and%20Tribunals%20Workshop%20Programme%20-%20Final.pdf> 참조.

Workshop: Transnational Standards in the Domestic Legal Order: Authority and Legitimacy

On **October 24**, 2014, the University of Amsterdam and its research project Architecture of Postnational Rulemaking will host a workshop on “Transnational Standards in the Domestic Legal Order: Authority

and Legitimacy.”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arils.uva.nl/research/research-platforms/content/the-architecture-of-postnational-rulemaking/news-events/events/transnational-standards/transnational-standards/cpitem/transnational-standards> 참조.

Call for Applications: Institute for Global Law & Policy Workshop

The Institute for Global Law and Policy at Harvard Law School is accepting applications for its annual workshop, to take place January 2-11, 2015, in Doha, Qatar.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until September 12, 2014.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harvardiglp.org/iglp-the-workshop/> 참조.

〈국제법 관련 강의 및 기타 안내〉

*** ASIL Insight**

(1) China’s Declaration of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the East China Sea: Implications for Public International Law

On August 19, Jaemin Lee (Seoul National Univ. - Law) has posted an ASIL Insight on China’s Declaration of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the East China Sea: Implications for Public International Law.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asil.org/insights/volume/18/issue/17/chinas-declaration-air-defense-identification-zone-east-china-sea> 참조.

(2) Cyprus v. Turkey: Just Satisfaction and Acts of Aggression

On August 27, Anthony Lott (St. Olaf College - Political Science) has posted an ASIL Insight on Cyprus v. Turkey: Just Satisfaction and Acts of Aggression.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asil.org/insights/volume/18/issue/18/cyprus-v-turkey-just-satisfaction-and-acts-aggression> 참조.

(3) MH17 and the Missile Threat to Aviation

On September 8, Barry Kellman (DePaul Univ. - Law) has posted an ASIL Insight on MH17 and the Missile Threat to Aviation.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asil.org/insights/volume/18/issue/19/mh17-and-missile-threat-aviation> 참조.

*** Job Announcement: Helsinki (Postdoctoral Researcher)**

The research project Towards a Credible Ethics for Global Governance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Faculty of Law invites applications for the position of Postdoctoral Researcher.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helsinki.fi/recruitment/index.html?id=89810> 참조.

주 제	장 소	일 시
UNWTO, Executive Council, Ninety-ninth session	Samarkand, Uzbekistan	1 - 4 October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essional working group, Second session	Geneva	7 - 10 October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Executive Council, Seventy-seventh session	The Hague	7 - 10 October
Ad Hoc Committe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Elaboration of Complementary Standards in the Field of Racism, Sixth session	Geneva	7 - 17 October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dget and Finance Committee, 23rd session	The Hague	7 - 17 October
Human Rights Committee, 112th session	Geneva	7 - 31 October
General Assembly, Sixth Committee, Sixty-ninth session	New York	7 October - 14 November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Thirty-sixth session	New York	13 October - 28 November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ifty-ninth session	Geneva	20 October - 7 November
States Parties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ifth meeting	Geneva	23 October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wentieth session	Geneva	27 October - 7 November
ICAO, Council, 203rd session	Montreal	November
Investments Committee, 223rd meeting	Mexico City	November
Committee against Torture, Fifty-third session	Geneva	3 - 28 November
WFP, Executive Board, Second regular session	Rome	10 - 14 Novembe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ifty-third session	Geneva	10 - 28 November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20 - 21 November
United Nations Voluntary Trust Fund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Board of Trustees, Nineteenth session	Geneva	24 - 28 November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Forty-second session	Vienna	25 - 27 Novembe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e-sessional working group, Fifty-fourth session	Geneva	1 - 5 December
FAO, Council, 150th session	Rome	1 - 5 December
IMO, Council, 113th session	London	1 - 5 December

주 제	장 소	일 시
UNCTAD, Working Party on the Strategic Framework and the Programme Budget, Sixty-ninth session	Geneva	1 - 5 December
UNFCCC,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meetings of subsidiary bodies, Twentieth session	Lima	1 - 12 December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29th meeting	Nairobi	2 December
Human Rights Council,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ird session	Geneva	2 - 3 December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Reconvened fifty-seventh session	Vienna	5 December
Panel of External Auditors of the United Nations,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ifty-fifth meeting	New York	8 - 9 December
Ad Hoc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nnouncement of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Programm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ledging Conference	Geneva	9 December
UN-Habitat,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Fifty-fifth meeting	Nairobi	10 December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and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Seventh session	Geneva	12 December
IFAD, Executive Board, 113th session	Rome	15 - 19 December

● **국제법 동향과 실무** ● 2014, Vol. 13, No. 3 통권 제34호

발행일 2014년 9월 25일
발행처 외교부 국제법률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전화 : (02)2100-7532
전송 : (02)2100-7967
전자우편 : mckim79@mofa.go.kr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161-08

인쇄처 도서출판 씨아이알 (02)2275-8603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 본지와 관련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